A101
54-
V.51-3

토지관리/정책/프랑스

外國農地制度資料集 (第3輯) D-51-3

프랑스의 農業基本法과 農業講造政策

1988. 10

金 聖 昊(研 究 委 員)
金 正 鎬(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5381

일 러 두 기

農地에 관한 法律은 실제로 農地政策이나 農地行政을 수행하는데는 適切한 施策의 規範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領域에 있다. 더우기 外國의 農地制度에 관한 關係法律은 그 나라의 經濟나 農業政策의 狀況 및 그 變化를 反映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이들 法體系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農地制度는 그 나라의 農業構造를 직접적으로 規定하며 農業經營의 展開方向을 좌우하는 農業政策의 根幹이므로 이를 도외시하고서는 農業問題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특히 農地問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必要不可缺한 요소라고 하겠다. 다만, 우리는 法律을 專門的으로 硏究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초로 하여 農業經濟나 農業政策의 硏究를 더욱 깊이 있게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農地制度는 1804年에 제정된 나폴레옹法典(民法典) 및 이에 근거한 農地賃貸借法(1946年)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서 오늘날의 農地政策이 수행되고 있다. 프랑스 農業은 막대한 潛在生産力을 토대로 各種 生産政策이 1950年代初에 정비되었으며, 특히 第2次 世界大戰後에 나타난 農業의 構造變化 및 農産物 價格의 不安定化, 農工間·地域間·階層間 所得隔差의 擴大에 따라 農業의 近代化 施策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1960年에 제정된 農業基本法(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은 이러한 農業構造政策 展開의 起點이 되었으며, 農地政策의 새로운 轉換期로서 평가된다.

1960年의 農業基本法은 農業構造政策으로 육성하여야 할 農業經營에 관하여 농업정책으로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62年의 補完法을 통하여 經營規模의 擴大를 도모하고 農地流動化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구체화되었다. 그후 프랑스 農業은 農業勞動力 및 農業經營의 減少에 따라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要請은 農業의 國際競爭力 强化의 必要性과 함께 構造政策의 再定立으로 나타났다.

1980年에 제정된 新基本法은 과거 20년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農業의 方向을 새로 설정하고, 특히 失業問題의 深刻化 등의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農業構造의 再編을 의식한 것이었다. 프랑스 農業政策은 新基本法에 기초하여 새로운 展開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資料集은 프랑스의 農業構造政策의 展開過程을 정리하고, 이러한 構造政策의 根幹이 되는 農業基本法의 內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 자료집에 수록한 프랑스 農業構造政策의 變遷에 관한 자료는 Francois Houillier 著 Structures foncieres et exploitations agricoles (La Documentation Francaise, 1982) 第2部의 內容을 完譯한 것이다. 또한 農業基本法은 1960年의 法律과 1980年의 新法을 完譯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1980年의 新法은 農業政策의 目的 및 重點施策을 나타내는 憲章的 規定과 民法典 農業法典, 1960年의 基本法 등의 旣存法制를 一部 改正하는 것을 주된 內容으로 하고 있는 바 신중한 이해가 요구되며, 關聯法을 전부 수록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 자료집의 기초자료 번역을 담당한 오현석씨와 전운성씨에게 감사하며, 이 자료가 農政關係者 및 硏究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88. 10.

目　　次

Ⅰ. 프랑스 農業構造政策의 變遷 …… 3

1. 農業構造政策의 變遷過程 …… 3

가. 農業用水管理 …… 3

나. 未耕作地의 再利用과 土壤保存 …… 5

다. 農地所有權의 變更 …… 6

라. 農業經營者의 保護와 賃貸借法 …… 9

마. 기타사항 …… 11

바. 公益活動 …… 12

2. 構造政策의 새로운 手段 …… 14

가. 農場相續法 …… 14

나. 土地價格의 抑制와 SAFER …… 17

다. 農業土地集團(GFA) …… 20

라. 農業構造改善 社會對策基金(FASASA)와 全國農業經營構造改善센터(CNASEA) …… 23

마. 유럽經濟共同體 開發計劃의 施行 …… 30

바. 農場併合抑制 및 構造統制 …… 31

사. 農民定着을 위한 農業金融 …… 33

아. 國土整備問題와 農業土地構造 …… 35

자. 農村整備開發을 위한 合同資金(FIDAR) …… 37

3. 未來의 手段과 目標 …… 37

가. 新農業基本法 …… 38

나. 經濟社會委員會 …… 40

다. 土地政策의 새로운 方向 …… 41

Ⅱ. 프랑스 農業基本法 …… 43

1. 1960年 農業基本法 …… 45

2. 1980年 農業基本法 新法 …… 58

Ⅰ. 프랑스 農業構造政策의 變遷

프랑스정부는 개인책임의 家族經營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같은 생각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60년 8월 5일에 제정된 農業基本法(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은 第2條 7項에서 생산기술의 최적사용과 노동 및 경영자본의 完全雇傭을 실현할 수 있는 가족적 형태의 경영구조를 촉진·장려할 必要性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第1條 3項에서부터 이 家族經營이 관련되어 있다. 第7條는 農業部門의 경제활동이 非農業部門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영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20년 후인 1980년 7월 4일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하여(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새로운 法律) 오늘날 프랑스 농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인책임의 家族經營으로 하여금 附加價値를 증대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목적을 농업정책에 못박고 있다. 土地政策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한 많은 수의 장래성 있는 家族經營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構造政策으로 활용된 방법들은 시기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었는데 이를 분류하면,

① 전통적 방법과 그 변천

② 1960년 및 1962년 農業基本法에서 발전된 새로운 방법

③ 몇몇은 이미 1980년 7월 4일자 農業基本法에 명시된 미래의 방법들

1. 農業構造政策의 變遷過程

農業構造政策의 전통적 방법은 5가지 측면에서 본질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① 農業用水管理

② 황무지나 숲으로 방치된 토지의 재이용

③ 細分化된 작은 農地를 보다 큰 면적의 農地로 再分合(農地의 統合)

④ 小作法規定을 통한 農業經營者의 보호

⑤ 土地收用에 있어서 토지소유권과 農業經營者의 보호

가. 農業用水管理

대부분의 토양이 과잉건조나 혹은 과잉습도 또는 년중 강우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農業用水調節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는 습한 지역에서조차 灌漑施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農業用水의 淨化 및 灌漑施設計劃의 중요성을 띠게 하고 있는 것이다.

1) 用水의 淨化와 排水

農務省에 따르면 農業用水의 淨化와 排水가 해결된 면적은 1980년 1월 1일 현재 290

만*ha*에 달하고 있으며 거의 農地面積의 10%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이미 낡은 것으로 250만*ha* 이상은 1974년 이전에 작업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1974년과 1980년 사이에 47만*ha*가 淨化 및 排水施設이 완비되었는데 그중 2/5는 國家補助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地下排水技術의 개선, 비용의 상대적 저하, 수익성 등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된 주요동기이다. 穀物耕作地 또는 다른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지가 이러한 계획의 주요 受惠者였다.

지중해 연안지역 이외의 프랑스 전역에서 農業用水의 淨化 및 排水計劃에 대한 요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었으며 여기서 農業施設共同利用組合(CUMA)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통적으로 파리연안에 집중된 地下排水는 10여년이래 여러지역의 農業經營에 등장하였다. : Nord — Pas — de — Calais (Zone des Waferingues), Normandie (Pays d'Ouche), Champagne — Ardennes (Perthois), Lorraine, Bourgogne (Nivernais, Yonne, Bresse), Auvergne (Limagne, Bourbonnais), Limousin (drainage des mouillières), Aquitaine et Midi — Pyrénées (terres de < boulbenes >), Poifou — Charentes (marais de l'Ouest).

2) 灌 漑

灌漑施設을 갖춘 면적은 農業利用面積의 3%로서 1980년 1월 1일 현재 100만*ha*를 약간 넘고 있다. 최근엔 최소한 20만*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전에는 프랑스 남동부지역에만 국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물뿌리기를 통한 灌漑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다른지역에도 灌漑施設이 확산되었다.

특히 옥수수 생산지역인 남서부지역의 경우가 그렇다.

3) 農業水力土木工事

水利施設의 개선과 농업용수댐 건설은 용수관리에 기여한다. 國家 혹은 地方自治團體에 의해 수행되는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1980년 1월 1일에 농업용수댐의 용량은 492백만입방미터였으며 26,000 *km*에 달하는 수로가 정비되었다.

用水管理分野에서 프랑스남부의 地域開發協會(SAR : les sociêtés dâmênagement régional)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외 1980년에 CNARBR (Languedoc — Roussillon)은 전체예산 70.9백만프랑중 55.5백만프랑을 灌漑에 투입하였고, SCPARP (Provence — Côte d'Âzur)는 전체예산 45.4백만프랑중 22백만프랑을, CACG (Côteaux de Gascogne)는 전체예산 42.3백만프랑중 26.5백만프랑을, SOMIVAC (Corse)을 전체예산 60.3백만프랑중 28.5백만프랑을 CARA (Aguitaine) 전체예산 18.7백만프랑중 5백만프랑을 灌漑施設에, 8백만프랑을

用水淨化와 排水施設에 투여하였고, 유독 SOMIVAL (Auvergne)에서만 전체예산중 매우 미흡한 부분이 農業用水 灌漑事業에 投資되었을 뿐이다.

현재와 미래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서부 10년 개발계획이 세지역 (Aquitaine, Midi—Pyrénées, Languedoc—Roussillon)에 25만*ha*에 달하는 추가적인 灌漑事業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79년과 1982년간에 적어도 農業用水金融의 절반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나. 未耕作地의 再利用과 土壤保存

農業利用面積은 都市의 工場新築 혹은 도로망의 확장(열차, 도로, 항공, 운하등) 등으로 인해 매년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나마 황무지개간 및 산림개간 등으로 인해 농경지가 새로 조성되기도 한다.

1978년까지 未耕作地의 再使用을 규제하던 법(특히 農村法(Code rural) 第39條 이하)은 비록 경작의무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效力은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정들은 1978년 11월 8일자의 78—1071호의 적용규정을 통해 수정되었다. 수정된 법안은 未耕作地의 再使用을 可能케 하기 위해 2개의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하나는 특정개인의 발의에 의해 다른 하나는 행정부의 발의에 의한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 모든 개인은 道知事에게 農業 또는 畜産利用이 可能한 3년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 경작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道知事는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土地開發 道委員會(前土地造成과 統合을 위한 委員會)를 장악한다. 미경작지로 제소된 토지소유자의 재촉이 있고난 후에 토지소유자와 그러한 토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者間에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農村賃貸借 仲裁裁判所가 개입하게 된다.

두번째의 경우, 道知事는 미경작지 이용이 유용한 지역을 조사해 주도록 土地開發道委員會에 의뢰하고 5년마다 재조사되는 未耕作地 現況報告書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 보고된 토지는 경작될때까지 경작가능한 최상의 토지로 과세된다. 만일 小作人이나 土地所有者가 그같은 土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道知事가 이를 공개한 후 경작의사가 있는 후보자중 한 사람을 지명해서 경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또는 公共團體의 이익을 위해 收用하여 SAFER가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들이 얼마만큼 效力이 있는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같은 조치들이 시행된 후 나온 최초의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의 效果에 대해 의심을 품게된다. 사실상 農務省에 따르면 법령시행 2년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未耕作者에 대한 土地利用請求는 약 2,000 *ha*에 달하였으나 그중 약간만이 그들에게 할당되었을 뿐이고 미경작지에

대한 공식보고서는 단지 6개 道에서 총 2,400 *ha*에 대해서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그중 20,500 *ha*는 오직 Aveyron에 대한 것이고 재이용된 미경작지는 한 곳도 없다.

그와는 반대로 개인소유의 山林을 개간하는 일은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허용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추진되어 왔다. 그리하여 많은 수의 農場이 보다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었고 특히 Champagne 지방은 상당한 변모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自然保護와 관련된 1969년 12월 29일자 법과 1976년 7월 10일자 법이후 山林開墾에 대한 허용은 보다 엄격한 방식에 따라 취해졌으며, 住民厚生과 地域의 生態的 均衡이 산림개발을 抑制하는 주된 이유였다.

장관이 산림개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에는 最高行政裁判所 (Conseil d'Efat) 의 견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수십건의 서류만이 매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허가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법률적용이 지역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4 *ha*미만의 산림은 이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개간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農村法(Code rural)은 耕作地를 침해할 수 있는 造林에 대해 農耕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農村法 第52－1條에 기인하는데 많은 道에 적용되고 있으며 흔히 손바닥만한 크기의 造林을 면하게 해준다.

또한 침식방지 － 미경작지를 개간할때 물이나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으로부터 토지를 보존·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地圖는 이같은 목적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圖5)

다. 農地所有權의 變更 : 交換 및 分合

1) 農地統合

무엇보다도 農地統合節次에서 문제되는 것은 農業經營 보다는 土地所有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農地統合이 토지이용을 보다 效果的이게 하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지만 統合以前의 小規模 農地의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보장해주는 일은 어렵고도 긴 시일을 요하는 문제다. 또한 유능한 측량기사에 의한 토지면적의 測地가 비교적 수월한 것이긴 하더라도 토양의 질과 토지의 특성, 지역간의 土地評價에 대한 차이라는 문제가 있어 매년 最高行政裁判所에는 대규모의 토지소송건이 발생하고 풍부한 판예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農地統合에 따르는 값비싼 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農地統合에 필요한 서류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다른 기타비용에 대해),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18 - 1919년, 1941년 법령 그리고 1975년 7월 11일자 법령에도 불구하고 土木工事가 수행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상당부분의 토지가 아직도 農地統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農地統合節次

토지거래의 성패는 상당한 정도로 그 지역 주민의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은 市·道委員會의 仲裁를 통한 현재의 農地統合節次過程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토지정비의 유용성을 지적한 측이 土地所有者이건 農業經營者이건 관계공무원이건간에 모든 시에서 위원회 설립의 決定權者는 道知事이다.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은 그후 土地整備委員會로 이전된 舊 土地再組織 및 農地統合 市·道委員會의 구성을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1인의 법관이 의장이 되고 地方議員, 公務員, 農民代表, 地主들로 구성된다. 각지에 위원회가 農地統合에 따른 거래를 수행할 유용성에 대해 견해를 개진한다. 만일 도위원회가 시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농업토목기사의 반대가 없다면 道知事는 판결을 통해 토지거래 개시를 명령하게 된다.

시위원회는 農地通合計劃을 준비하는 일을 맡아 대상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할 측량기사를 지명한다.

小委員會는 사전계획을 준비하는데 농지통합구역을 정한 후 구역내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農學的 價値에 따라 구역내의 農地들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토지용도에 따른 분류 즉, 耕作地, 草地, 果樹園藝地 등에 따라 사용토지의 자연적 조건을 가장 좋은 상태의 것에서 부터 가장 열악한 조건의 것에 이르기까지 분류하는 것이다. 거래 종료시에 각 土地所有者는 동일면적의 土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토지와 같은 점수를 갖는 토지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것이 衡平의 原則이라 불리는 것이다. 農地統合의 또다른 기본원리는 가능한한 농업경영 중심지에 小農土들을 인접시킴으로써 최대한 團地化하는 것이다.

이같은 첫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15일동안 공개조사를 통해, 특히 農地의 분류에 대해 그들에게 부정확하게 보이는 예비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市委員會가 서류일체를 검토하며 측량기사는 각 소유주의 기탁물과 권한 등의 比較一覽表와 개발계획에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15일간의 새로운 조사에 이용된다. 異議申請을 고려하여 市委員會는 農地統合의 최종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이의가 없을 경우 그 계획은 道知事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데 도지사는 농지통합 거래의 마지막 단계로서 시장에게 계획을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과 새로운 農地의 소유권 취득이 행해지게 한다.

시위원회가 입안한 계획에 대해 도위원회 앞으로 行政訴訟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行政裁判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야 한다. 附帶作業(새로운 農地로 통하는 교통로, 담장 및 울타리 제거등)이 진행되기 위해서 土地組合이 지주들간에 구성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시위원회가 정한 토목공사를 수행시킨다.

3) 實績 (성과)

1981 년에 이르러 農地統合作業의 절반이 달성되었는데 1981 년 1 월 1 일 현재 農地統合對象面積중 통합이 실현된 면적은 50.3 %에 달했다. 프랑스 전체를 놓고 볼때 1945 년이래 農地統合이 이루어진 면적은 예산상 또는 기술적 어려움에 따라 農地統合이 추진되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11 백만*ha*에 이르고 있다. 農地統合이 시행된 첫 대상지역은 산림지대와 급격한 경사지와 같이 農地統合에 큰 장애를 안고 있는 지역이 아닌 펼쳐진 벌판지역이었다.

農地統合을 1960 年 335,000 *ha*이던 것이 1967 년과 1970 년 사이에 500,000 *ha*로 증가하다가 1978 년에 312,000 *ha*, 1979 년에 270,000 *ha*로 줄어들었으나 최근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980 , 81 년 30 만*ha*)

農地利用面積에 있어서는 農地統合이 실현된 면적은 1980 년 1 월 1 일 현재 평균 36 %에 이르나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Ile — de — France 84 %, Picardie 72 % Champagne와 Alsace 71 %, Franche — Comite 69 %, Lorraine 59 %, le Centre 50 %, Bretagne 48 %, Haute — Normandie 46 %, Bourgogne 41 %, Poitou — Charentes 32 %, Nord — Pas — de — Calais 28 %, Auvergne와 Pays de la Loire 27 %. Basse — Normandie 23 %, Limousin 17 %, Aguitaine 16 %, Rhône — Alpes 15 %, Provence 12 %, Midi — Pyrénées 9 %, Languedoc — Roussillon 7 %, Corse 5 %, 이는 주로 Loire 북쪽지방에서 시행되었던 土地整備이다.

다음은 農地統合이 실현된 면적을 보여주는데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100 만*ha*이상 : Centre , Champagne
- 75 만에서 100 만*ha* : Picardie , Bretagne
- 50 만에서 75 만*ha* : Bourgogne , Lorraine , les Pays de la Loire , Poitou — Charentes , Ile — de — France
- 25 만에서 50 만*ha* : Franche — Comitê , Auvergne , Haute — Normandie , Basse — Normandie , Rhone — Alpes , Aquitaine , Nord — Pas — de — Calais
- 10 만에서 25 만*ha* : Alsace , Midi — Pyrénées , Limousin
- 10 만이하 : Provence , Languedoc , Corse

점차 農地統合은 農村整備의 수단으로써 커다란 관심을 갖게되는데 이를 위해 農務省의 <프로그램예산>이라는 1981 년의 財政法令計劃을 담은 지시가 있다. 토지경영조건의 개선은 農地統合 이외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잊고 있으며 1975 년 7월 11 일자 법령 제 75 — 621 호는 農村整備에 관해서 農地統合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공사를 통한 농지통합작업은 공사주가 그에 필요한 재정을 맡는다.

그같은 취지에서 새로운 법적규정들은 특히 公共設備의 차후처분에 필요한 敷地를 시에 歸屬시킬 가능성, 附帶作業으로서 자연의 균형유지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고려하는 일, 시·도 각 지역의 공공기관 및 여러기관에서 들어오는 支援資金을 통해 農地統合作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다.

農地統合作業의 일부를 이루는 農地間 교통로작업 이외에도 農務省이 추진하고 있는 農村道路建設作業이 연간 1,000 *km*에 달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밖에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은 農地統合 — 土地整備節次를 설정하고 있다.

4) 好惠的 農地交換

農地의 자발적 統合이 바람직한데 매년 이같은 절차를 통해 실현된 農地統合面積은 15,000 *ha*에 달한다. 이는 農地統合에 좋은 징조일 수 있으며 농지통합 실현이 곤란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식을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농지통합작업을 완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라. 農業經營者의 保護와 賃貸借法

賃貸借法은 賃貸人에 대해 賃借人을 보호하려는 장치로서 입안되었다.(1945년 10월 17일 법령). 그리하여 많은 규정들이 共同契約者들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가령 賃貸契約의 문서화 賃貸地의 상태, 賃貸料 最小賃貸期間(9년), 賃借人의 契約更新 權限, 地主의 先取權, 토지매매에 있어서 賃借人의 先買權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후로 賃貸借法은 많은 개정을 보게 되는데 특히 1970년 12월 31일자 법의 長期賃貸借 設立과 1985년 7월 15일 법, 職業賃貸를 설정한 1980년 7월 4일자의 農業方向設定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은 토지가 資本牽引力을 잃고 또한 轉用을 통해 農業經營者數가 감소하게 되는 시기에 취해졌다.

1) 法令總括

① 賃借人과 賃貸人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賃貸地 상태가 記述된 문서가 필요하다. 만일 문서가 없다면 賃貸借 慣例가 적용되는데 이는 農村賃貸借 道諮問委員會가 설정한 賃貸借로서 여기에는 토지의 상태가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다.

② 小作料는 상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道知事가 결정하는데 그는 이는 이득이 되는 생산물목록과 이 생산물의 최대·최소량, 계약만료시 임대료 평가방식을 결정한다.

1975년이래 생산물 수량을 1939년 수준으로 제한했던 법적조항이 폐지되었다. 사실 농업생산성의 진보로 인해 토지생산성을 급격히 증대되었다. 예를들어 밀의 경우 토지생산성은 3배로 늘어났다. 農地賃貸借 收入은 거의 전지역에서 예전에 비해 훨씬 상회하고 있다. 共同契約者들은 생산물과 그 수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賃貸料 支拂方式을 현금 또는

현물 아니면 混合方式으로 결정할 수 있다. 法은 賃貸人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이나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재해로 인한 생산감축의 경우와 賃貸料의 재평가에 관해 균등하게 정해놓고 있다.

小作料 총액은 평균적으로 토지가격의 2%에 달하고 있다.

③ 賃貸期間은 원칙적으로 9년이며, 계약갱신권한은 賃借人이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은퇴연령(60세)에 이른 경우나 신체적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같은 기간에 대해 행사된다.

④ 土地所有者가 그 자신 스스로 혹은 그의 자손중 하나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賃貸地를 재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非契約更新權이 주어졌다. 法은 이같은 非契約更新權이 시행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의 연령 등 경영능력과 토지재취득자의 의무에 관해 매우 까다로운 조항을 두고 있다(예를들어 農耕地가 있는 곳에서 거주할 것과 9년간 경작할 것 등). 이렇게 토지소유자에 의한 임대지 채취득은 法으로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⑤ 營農을 그만두는 賃借人(小作人)은 그가 토지에 부여한 토지개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갖는다. 보상금액은 地主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仲裁裁判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賃貸할당시의 토지상태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며 토지부속 건축물, 시설물, 식목, 農耕地改良 등이 문제된다. 이때 補助金을 부담하는 사람은 해당토지의 새로운 賃借人이 아니라 地主인 賃貸人이 부담한다.

⑥ 賃借人(小作人)은 地主가 土地를 팔 경우에 그가 경작하는 土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先買權을 갖는 혜택을 갖는다. 이러한 先買權은 地主의 가까운 인척이 이로인해 손해를 보지만 몇몇 조건이 충족되면 小作人이 자기자신 혹은 자손을 위해 先買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先買權 행사절차는 法條文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가격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賃借人이 農村賃貸借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⑦ 기타 여러 규정들이 양도나 轉貸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다른 農業經營者의 農地交換은 허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경작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Pas-de-Porte≫(권리금) 즉, 賃貸借資格을 갖기위해 新賃借人이 舊賃借人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금지되긴 하였지만 이 ≪Pas-de-porte≫ 혹은 ≪Chapeaux≫는 프랑스 북부지역에서 오래전에 형성되어 舊賃借人이 다져놓은 農地改良部分에 대해 새로들어오는 賃借人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Lille지역에서 Bourges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aen에서 Troyes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에 통용되고 있다. NRA의 연구에 따르면 1979년에 이 ≪Pas-de-porte≫의 수입액은 북부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에서 1*ha*당 10,000프랑 혹은 그 이상에 달하며, 남부와 서부지역에서는 최소 3,000프랑에 이르고 있다.

≪le pas-de-porte≫(권리금)을 立法議員들의 오늘날까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작전≫

과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賃借人이 부담하는 이같은 權利金이 새로운 설비비용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⑧ 分益小作農 (metayer) 또한 그 계약이 法에 의해 규제되는데 1963년 이래 그가 賃貸한 土地를 소작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農村賃貸借仲裁所는 賃貸人 또는 賃借人中 어느 한쪽이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같은 전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2) 長期賃貸借

임차인이 보다 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하기 위해 1970년 12월 31일자 法은 長期賃貸借條項을 설정했다. 土地所有者에게 長期賃貸借를 권유하기 위해 세금혜택, 특히 相續稅의 부분면제 (혹은 讓渡稅의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農村法 870-25條에 따르면 長期賃貸借期間은 최소한 18년까지로 하고 9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최초의 賃貸期間이 최소한 25년이라면 법정외의 행동을 통해 한쪽으로부터의 異議表明이 없을 경우 이 賃貸契約은 기간의 제한 없이 暗默新 契約更新을 통해 갱신될 수 있다. (圖 - 8)

3) 終身賃貸借

이것은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이 農村法(870-26條)에 삽입시켜 놓은 새로운 범주의 임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長期賃貸借에 관한 것이다.

즉, 농장설치 최소면적을 상회하는 면적의 토지 또는 경제단위를 구성하는 農業經營에 해당되고, 25년 내지 그 이상 기간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賃借人이 은퇴연령에 달하면 종결된다는 것이다.

平生賃貸料는 9년임대의 경우와 같으나 매년 1% 인상이 양측간의 상호합의로 가능하다. 農村賃貸借 道諮問委員會가 제안하면 道知事는 그 안건에 대해 해당道에 있어서 자유로운 賃貸價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賃貸形態는 한편으로는 賃借人에게 그가 은퇴할 때까지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賃貸人에게 賃貸價格의 조정가능성을 부여해 준다.

마. 기타 사항

1) 年間 賃貸

이것은 1980년 7월 4일 농업기본법에 기인한 農村法 第811-1條에 채용된 것이다. 併合規制를 조건으로 최소한 농장설립 면적과 같은 크기의 다른 농장을 이미 경영하고 있는 農業經營者가 그의 자손중 1人을 農場經營에 취업시키고자 할 경우 賃貸人은 그에게 최대 6년 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한 年間賃貸를 동의할 수 있다.

2) 賃貸借法에 따르지 않는 토지

農村法 第809-1조(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 第57條)는 임대차법에 따르지

않는 처분계약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들어 所訟題起중인 相續上의 재산과 그 용도가 변할 일시적 농업경영형태의 재산등이다. 또한 賃貸家畜과 賃貸設備의 경우도 이 경우에 속한다.

3) 諮問 및 裁判管轄機構

1976년 5월 20일자 명령(decret)은 農村賃貸借諮問委員會(도, 지역, 국가)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였는데 이는 賃借人과 賃貸人들의 대표, 주요농업직업조직, 공증인회의소의 장, 農務省의 도감독관들을 규합한 것인데 그 의장은 법관이 맡고 있다.

각 所訟裁判所를 관할하는 農村賃貸借仲裁裁判所는 소송재판관이 장악하는데 재판소구성 賃貸人 및 賃借人 수는 각각 4명으로 同數이며 이들은 1958년 12월 22일자 칙령이 규정한 조건을 갖춘 선거인을 통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選擧人名簿는 市選擧에 관해 준비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다.

賃貸借規制는 복잡한 문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는가? 賃貸人과 賃借人 조직들의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것 같다. 오히려 政府가 표방한 정책은 農業經營者가 토지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작을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나 賃貸人에게 한편으론 法과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賃借料를 강요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土地投賣現象을 가져왔고 여기서 유출된 자본이 상당기간동안 보다 유리한 쪽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長期賃貸借라든지 平生賃貸같은 새로운 임대형태가 이같은 상황에서 처방안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賃貸借法은 분명히 賃借人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연령이 많은 農業經營者가 이 법의 규제를 염려하여 젊은 農民에게 그의 土地를 서둘러 賃貸하는 현상을 볼때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이익을 위해 취해진 행정조치들은 결국 유익함보다는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엄밀히 관찰할 때 활기를 불어 넣는것은 되지 못하였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조치들은 잠재자원을 방치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바. 公益活動

오랜동안 그 필요성이 분명한 公益活動은 土地所有者에게 정당한 보상을 사전에 지급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이는 임차인이 안게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서 土地收用者측은 단지 地主만을 상대로 해야 했었다.

이같은 상황은 公益槪念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데 1949년 이래 상당규모의 土地가 각종의 公益活動과 관련을 갖게되었다(년간 5만에서 10만*ha*, Seine-et-Marne 지역에서는 10년간 년평균 2,000 *ha*가 그러했음).

土地收用法은 결국 손질을 보게되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상금액이 土地收用으로 인한

물적 및 기타의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하나의 주요보상(시장가격)과 여러 부수적 보상(예를들어 再就業 등)이 포함된다.

최근 몇년이래 公安事業을 위한 土地收用으로 인해 農業經營者가 받게되는 農場經營의 포기 및 수입감소가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稅務局과 農業委員會 및 農業組合組織간에 道차원의 협정서가 종종 협상되었다.

1979년 11월 12일에 조세국장과 APCA, FNSEA간에 公益事業으로 인해 잘려나간 農場의 農民이 입게되는 피해액을 결정하는 방식과 그에 상응한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합의는 公益事業에 따른 합의로부터 農業經營者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 밖에 公益目的의 土木工事로 인해 받는 일시적 피해뿐만 아니라 公共施設物이 있음으로서 받는 영구적 피해에 대해 農業經營者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합의가 EDF－GDF 간에 이루어졌다.

1) 殘餘土地 收用請求

土地收用후의 殘餘土地가 더이상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경우 土地所有者 또는 農業經營者는 잔여토지를 마저 收用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80년 7월 4일자 法 第73條에 두고 있다.

2) 修正된 1962년 8월 8일자 法 제10조

중요한 이 規程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1980년 7월 4일자 法 第78條를 통해 개정되었다.

≪土地整備事業 또는 자연보호에 관한 1976년 7월 10일자 法 第2條에 언급된 공사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土地를 收用할 경우 해당지역내 농장시설이 파손될 때는 公益事業을 밝히는 문서속에 工事主가 공사중에 야기된 피해를 복구하고 農場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심대한 파손을 야기했을 경우 공사이전의 農場에 필적할 만한 農場을 설립해주거나 農場主가 원하면 직업전환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들 農民들이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農場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지역에서 地主로 되어 있는 土地를 土地整備協會와 工事主에 양도하기를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곤 이들은 土地整備協會를 통해 그지역 내의 土地를 부여받을 우선권을 갖게된다≫.

≪產業地區나 都市開發地區 혹은 保護地域의 경우에도 工事主가 똑같은 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다≫. 1980년 7월 4일자法은 국가위원회에서 나온 법령이 農地統合作業 수행과 관련해서 특수한 조건들을 설정할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1968년 4월 5일 및 1963년 4월 10일자의 두 법령은 土地協會가 동의할 경우 SAFER가 工事主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收用土地의 地主가 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1967년 12월 30

일자法 第22條에 연유하는 第10條 마지막 항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 8월 5일자법 제15조에서 마련된 농촌기구 및 土地整備協會와 1951년 5월 24일자法 第9條에서 마련된 地域土地整備協會가 農地統合作業으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農場經營을 유지할 수 없는 農民들에게 새로운 농장 설립을 책임질 경우 工事主가 이들 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할 것이다≫.

2. 構造政策의 새로운 手段

20년 이래 많은 조치들이 法 혹은 규정을 통해 취해졌으며 農業構造政策에 주어진 여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이 추진되었다. 前章에서는 이전의 제반 수단들이 어떻게 새로운 목표에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지난 이십년의 立法속에 혁신적인 요소가 실제 있는지를 검토할 일이 남아있다. 이같은 생각에서 아래 사항들을 접근할 것이다.

- 相續法檢討와 함께 農業家族法에 대한 변화
- 土地價格의 抑制: les SAFER
- 土地單位의 維持: les GFA
- CNASEA와 FASASA가 재정지원한 다양한 활동 : IVD, 農民 특히 젊은 農民의 機構: 相互組合과 教育活動: OGAF
- 프랑스에서 共同體 開發計劃의 적용
- 經營合併의 감독과 구조통제
- 農民機構(토지와 경영자본의) 활동에 있어서 相互農業金融의 역할
- 土地整備政策을 앞둔 農業土地構造

가. 農場相續法 : 특별한 相續의 경우

農業活動의 특수성으로 인해 1939년 이전부터 立法委員들은 家族共同權의 여러 규정들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 配優者의 權利

재산운영에 있어서 配優者의 권한을 열거하기 위해 결혼제도의 개정이 창안 되었는데 총괄적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개혁 하원에서 Tean Foyer 에 의해 몇차례 제안되었는데 그것은 두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하나는 共同農業經營 인 配優者의 民私的 지위를 위해 民法典에 여러 규정을 부가한 것이고(조항 225-1이하), 다른 하나는 그들의 직업적 지위를 위한 農村法典의 改正이다. 1980년 4월 농업기본법 토의 당시 下院은 이러한 제의들을 再受用하였으나 上院은 장기간의 논란 끝에 下院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농업기본법 제22조와 제23조

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農業經營主의 配優者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아마도 農業經營에 있어서의 女性의 역할을 한층 높게 재평가 함으로써 農業人口 의 性別比率을 불균형하게 하는 農村에서의 女性 流出現象을 억제하고 자 하는 입법의원들의 의도에 그 起源을 두고 있을 것이다.

法은 이같은 위임이 해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夫婦別居 및 財産分割, 配優者 중 한사람의 不在등) 또한 위임을 철회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配優者 서로가 같은 農耕地를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農場에 필수로 되어있는 것들에 관한 행정법령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法은 配優者 상호간 상호위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新條項 789-3에 따르면 配優者 쌍방은 協同組合, 共濟組合, 혹은 農業金融組合 總會에 참석할 수 있으며 理事會 및 平議員에 피선거 자격을 갖고 있다. 新條項 846-1은 임대차명의의 配優者는 그의 配優者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계약해제를 하거나 賃貸地를 양도할 수 없고 賃貸借 更新을 요구하지 않을 의무를 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각 配優者에게 별도의 농업경영 토지가 있을 경우 法이 農業經營者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유리한 조건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個別經營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고 있다.

경제, 사회, 세무법규는 配優者들이 각각의 農場을 합한 규모의 土地를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에 가장 좋은 조건속에서 農業經營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農場構成員法(家事補助員)

1973년 7월 13일의 法은 家事補助員(家政婦) 임명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의 지위를 개선하며 경영주 직책에 스스로 대비케 하기 위해 이 法을 제정하였다. 이 法은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와 또는 그 配優者의 부모에 적용되며 이들은 주요활동에 대해 경영에 참여한다. 각道에는 직업단체를 통해 경영주와 家事補助員에 협정이 제안되어 있다. 이들이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이다.

이 협정은 교육휴가와 경영실적에 대한, 상속 참여시에만 받는 지연임금과는 명백히 다른 상여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예기하고 있다. 이 法의 시행적용은 많지는 않았다.

3) 農場相續法

프랑스 相續法은 수년에 걸쳐 토지소유의 세분화를 유도하였는 바 일찌기 나폴레옹 民法(832條 이하)은 共同相續者간에 각 재산을 형평있게 분할하려 하였고 폐기원(프랑스 최고 재판소)의 判例는 이같은 조치를 더욱 강화시켰었다. 그 결과 적어도 프랑스의 몇몇 지역에서는 울타리 담이나 비탈지나 산울타리를 통해 토지가 구획되는 小土地分割이 이루어졌다. 그 같은 상황은 小土地規模의 협소함과 동일소유 자에 속한 小土地들이 분산됨으로써 생산비용을 상승시켰다. 그로부터 1919년 이래 土地所有統合件에 관한 입법추진과 표결은 수차례 걸쳐 보

共同相續人 모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5) 1980년 7월 4일 농업기본법에 의해 제시된 修正案

1980년 7월 4일의 농업기본법이 이같은 사항을 수정하는 일련의 條項들(30條에서 38조)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6) GFA의 構成

제30조는 相續財産을 共同所有로 유지하지 않거나 소유상 특권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혹은 모든 相續人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共同相續人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일인 혹은 그 이상의 제3자와 함께 農業土地集團(GFA)을 구성할 목적으로 農業用 相續不動産과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만일 配優者나 한 共同相續者이 GFA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長期賃貸借로 자기에게 부여되도록 요구한다면 이같은 권한은 당연히 행사된다. 法은 賃貸要求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農業土地集團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共同相續人은 다른 相續財産을 받게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相續財産分配에 뒤이은 년도 이후에 다른 共同相續人들이 佛入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그 밖에도 GFA에 참여한 共同相續人이 非參與 相續人에게 GFA의 몫 일부를 제의할 수 있다.

7) 配當上의 特權(Attribution préférentielle enpuissance)

회사형태도 아니고 공유형태도 아니며 소유상 우선권이나 GFA설립이 없는 경우에 그 農場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配優者나 모든 相續人은 경매를 통한 판매요구가 있건 없건간에 共同相續人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農地를 그에게 長期賃貸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分割相續이 이루어 지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를 제기한 측은 우선적으로 그의 몫에 농장건물과 주거건물을 배당받게 된다.

몇개의 사전조치가 취해졌는데 農村法 807條와 808條가 이같은 賃貸形態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을 정하고자 수정되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상속 배당 몫에 포함된 土地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같은 賃貸가 있게됨으로써 생기는 價値下落問題를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측이 많을 경우 法院이 요구자들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같은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8) 共有形態로의 2년간 維持

이같은 조치는 相續財産을 즉각 처분할 경우 共有財産의 가치가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거나 共同相續人중 한사람이 共有形態로의 유지기간이 다돼서야 相續財産에 의존한 農場을 설립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가) 遲延賃金(Salaire différé)에 관한 규정

1939년 7월 29일자 法規定에 의해 遲延賃金(Salaire différé)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農場主와 함께 일하면서도 현금보수를 받지 않는 農場主들을 위한 것이다. 農務省에서는 農場主가 자기자손들의 농장일에 대한 보수로서 년간 저축액을 정하였는데 자손들이 相續받을때 이 금액을 받게된다.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은 3가지 점에서 시행중인 條文을 수정하였다.

— 遲延賃金取得分은 共同相續人들의 보조금으로 불입될 수 없다.

— 계산방법의 변경 : 遲延賃金의 기본액은 SMIC의 2/3로 한다.

— 만일 자손이 결혼했을 경우 그리고 그의 配偶者가 農場에서 함께 일할 경우 그의 配偶者 또한 遲延賃金을 받는다.

9) 相續後 讓渡된 土地面積

René Gronssard가 감수한 《新土地政策에의 寄與》라는 책에서 Bruno Rajand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相續移轉은 복잡하며 사용권만큼이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같은 移轉形態는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추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는 1975 ~ 1980년에 대해 년평균 추정을 하고 있다.

나. 土地價格의 抑制 : SAFER

1) SAFER의 法規

農村建設土地整備協會 (SAFER : Les Sociétés dáménagement foncier et défablissement rural)는 그 활동범위를 정한 1960년 8월 5일자 농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창설되었다. 그의 활동범위는 土地所有者가 판매하려고 내놓은 土地와 農場을 취득하거나 토지정비 후 다시 매각할 목적의 불모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특히 農業構造를 개선하고 농장규모를 증대시켜 農民이 農業活動에 취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회사는 株式會社形態이나 영리목적을 갖지 않은데 토지영역을 지정하는 農務省과 財務省의 동의를 받게되어 있다. SAFER법규는 記名株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理事會의 다수 의석은 공공단체 및 기관의 대표에 할당되어 있으며 그외에 農村 및 農業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혹은 국가계획상 설립된 협회에 할당된다. 정부에서 나온 위원이 각 SAFER의 長이 되는데 국가의 면세혜택과 재정보조혜택을 받고 있다.

1962년 8월 8일자 補完法 第7條는 SAFER를 위해 農業用土地의 有償讓渡의 경우 免稅權을 설정하였는데 이같은 면세권이 승인되기에는 활발한 논쟁을 거쳐야만 했다. SAFER는 免稅權을 요구해야 하고 道知事가 요구하는 훈령이 있고난 후 免稅權이 SAFER에 부여되는 것은 法令을 통해 한기간, 한지역에서이며 경우에 따라 更新되기도 한다.

SAFER의 이같은 권한이 국가나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권한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

완되었고 최근에까지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수정되어 왔다. 農業機械化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한 소유자에 의한 토지면적이 증대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자연히 民法上의 權利와 Le Play에 따르면 《토지를 세분시키는 기계》라 불리던 民法에 대립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民法은 유언(遺言)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제 913 條는 相續子女가 1人인 경우엔 상속재산의 1/2 을, 相續子女가 2人인 경우엔 1/3을, 3人인 경우에는 1/4을 遺言者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이렇게 相續財産을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은 이러한 비율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民法은 미래상속에 대한 協約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할증여와 유언배분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農業構造에 대한 이러한 法的規制에 따른 결과들을 완화하기 위해 1938 년 이래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民法 제 832조가 수정된 것이다. 평등한 분할이 삭제되었는 바 土地의 細分化를 피하고 각 세대간의 經營分化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농장경영을 상속받는 자가 共同相續人들에게 보조금지급(Soulte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연임금(un salaire differe)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農場經營에 참여한 노동연한에 상응하게 되어있다.

農業銀行의 도움을 받아 共同相續者중 한 사람이 判事에게 農業生産이 전체적으로 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재산은 共有狀態로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방편인 한 가능하다.

農業經營單位의 維持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1961 년 12월 19일 法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손질을 보게되었다.

4) 1980 년 6월 30일 法의 내용

① 遺族配優者 이거나 未成年者를 가진 모든 相續人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공유상태로 5년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어린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法院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불 조건하에 農場經營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遺族配優者 혹은 모든 相續人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특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3가지 형태를 띨 수 있는데

— 農場經營規模가 규정에 정해진 일정규모 혹은 額面價格의 제한을 넘지 않으면 그 권한은 당연한 것으로 행해진다.

—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그 권한은 法院의 판단에 따른다.

— 共同相續人의 몫에 속한 土地를 팔 경우 先買權과 함께 인접토지 및 건축물의 특권은 5년간 제한된다.

③ 1970 년 12월 31일에 제정된 法은 共同相續人들이 그들의 권리를 민간단체인 農業土地團(GFA : gronpement foncien agricole)에 기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나 우선권을 갖는 共同相續人들의 권한에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몇몇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이같은 免稅權에 따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 土地의 互惠的 交換이나 건설공사나 산업정비를 목적으로 土地를 취득할 경우이다.

免稅權을 행사하기 위해 SAFER는 공증인을 통해 토지거래계획과 토지판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통고받는데 SAFER가 그것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所訟仲裁所에 再審을 요구할 수 있다.

1977년 12월 29일자 法案標決을 통해 SAFER의 免稅權限의 궁극적 목적과 적용조건, 예외조치들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번째의 입법단계를 거치는데 1978년 11월 8일자의 두개 法令이 추가됨으로써 완결을 보게된다. 여기서 法條文은 SAFER의 활동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토지구매시 뿐만아니라 토지의 還付시에 SAFER 결정사항의 公益性과 動機를 규정하고 있다.

1977년 法은 젊은 농민들의 취업문제에 상당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SAFER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농장규모의 확대였다.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 제 27조는, 1962년 8월 8일자 법 제 7조의 3개항을 수정하고 특히 SAFER의 免稅權을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SAFER의 土地還付가 적당치 않을 경우 SAFER에 판매한 토지를 토지판매자가 再取得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후 SAFER가 가격과 요구조건이 과대하다고 판단하면 토지판매자에게 적절한 조건하에 구매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토지판매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土地를 판매철회 시키거나 SAFER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所訟仲裁所를 통한 再審을 요구할 수 있다.

2) SAFER의 活動

1962년이래 20개의 협회가 만들어졌으나 그 중 8개만 승인되 있었다. 오늘날에는 34개의 승인된 SAFER가 있는데 그중 31개는 프랑스 본국에 있고 3개는 해외 식민지에 있다.

이들의 管轄區域은 地域行政區域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최후에 설립된 것은 Corse의 SAFER이고 현재 Alpes-Maritimes에만 SAFER가 없다. 파리지역과 Picardie지역은 SAFER를 설립하기전에 다른지역에서의 SAFER활동결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SAFER가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토지국과 관련된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염려는 SAFER 활동이 投機를 보다 어렵게 하고 土地市場을 조절하며 收用土地의 再償還期間이 보통 2년미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1981년부터의 SAFER의 土地收用面積은 1,289,600 *ha*이고 再償還된 면적은 87%에 해당하는 1,113,400 *ha*이다. 이는 몇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3) SAFER를 통해 실현된 土地購買

년간 8만*ha* 수준의 土地購買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에 성장시기로 이어졌다. 1979년에 SAFER는 88,000*ha*이상의 土地를 收用하였는데 이는 SAFER가 免稅權을 행사할 수 있는 土地에 대한 토지시장거래의 30%에 달하는 것이다. 농업토지거래의 총량에 비해보면 SAFER의 購買實績은 1979년 16.6%에 달하고 1980년엔 18.2%로서 약 91,000*ha*의 土地가 SAFER에 의해 收用되었다.

SAFER는 다른 土地收用者측 보다도 보다 싸게 土地를 구매하였는데 1978년에 16%가량 싸게 구매하여 *ha*당 19,400프랑보다 싼 16,600프랑에 土地를 구매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收用土地의 질이나 보다 불리한 條件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SAFER가 구매한 토지의 20%미만에서만 免稅權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보통 판매자측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4) 土地償還

1978년에 SAFER의 償還面積은 *ha*當 평균 17,145프랑으로 80,600*ha*에 달하며 1979년에 80,250*ha*, 1980년엔 81,330*ha*에 달했다.

償還된 토지는 小農土의 改造, 擴大 또는 농장의 새로운 설립을 통해 농장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小農土의 改造는 1979년 토지면적의 6.9%에 달하는데 小農土의 면적을 확대하고 전체농장의 규모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小農土의 수를 줄여 농장을 개조하도록 하기 위한 농토의 연쇄교환정책과 관련된다.

1977년 法이 지켜짐으로써 農場擴大와 농장설립간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변화를 보였다. 1979년에 農場擴大에 割當된 償還土地의 40.5%는 SAFER역사상 작은 비율의 것이며(1972년에서 1977년까지 이 비율은 53%에서 60%에 이르렀다). 반면 農場設立(최초의 농장설립 혹은 재설립)에 償還된 토지면적은 36.4%로서 예년에 비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1977년까지는 25%에서 30% 사이였음)

1979년에 SAFER를 통해 확대된 농장은 평균 그 규모가 34.4*ha*에 이른다. SAFER는 이들 농장에 5.1*ha*를 償還해 주었는데 이는 15%정도의 확대비율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젊은 營農人에 대해 SAFER는 그들이 농장을 최초로 운영할 경우 평균 19*ha*의 토지를 償還해 주었고 父子임대차≪Pere- *fils*≫방식으로 토지를 추가적으로 상환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1979년에 SAFER가 土地償還해준 젊은 農民(農民後繼者)은 1,108명에 이르고 있다.

다. 農業土地集團(GFA : Groupements Fonciers Agricoles) : 土地集團의 維持

1) 農業土地集團法

1960년 8월 9일자法 第14條는 土地所有者와 農業經營者가 소유나 사용권한을 농업

경영민간협회나 지주 및 농업경영자단체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2년 8월8자法 第5條는 農業土地集團(GFA)에 相續的 土地分散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부여하였다.

GFA는 다음의 특징들을 보인다. 지주로 구성된 최소 9년기간의 민간협회이며 農場의 細分化를 피하고 여러 地主들에 속한 小農土를 통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農場을 직접경영하거나 賃貸하고 特別稅制惠澤을 누린다는 것 등이다.

1970년에 몇몇 계획법안을 한편으론 GAE법을 개정하고 다른 한편으론 土地投資株式會社(SAIF : Sociétés anonymes dinuestissement foncier)를 설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土地資本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했었다. 1970년 12월31일자 法은 SAIF구상을 폐기하고 GAF법을 개정하려고 하였는데 이 GAF가 GFA로 되었다.

GFA구성에는 중요한 두개의 동기가 있었는데, 즉 가족상황의 규정(公有組織形態, 相續準備, 後繼者의 就業)과 農民이건 아니건간에 GFA가 누리는 稅制惠澤을 누릴 목적으로 農地에 대한 투자의 규정이다.

GFA는 四村이내의 同一家族構成員들만으로 구성되었을때는 GFA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土地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데 이들 구성원의 상속분중 30%이상의 現金出資額이 포함되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GFA는 그의 土地를 賃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자본이 30%이상의 現金出資額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SAFER가 GFA의 회원일때는 하나의 의무로 된다.

GFA는 3가지형태로 구분된다.

① 가족GFA : 이는 옛부터 가장 많은 형태인데 同一家族내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

共同所有權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이나 현금형태로 同一家族내의 사람들이 出資할 경우

— 자녀중 1인을 就業시킬 목적으로 家長이 생존할 때 구성된 GFA : 여기에는 贈與나 相續이 따르지 않고 家長이 그의 配偶者와 子女들과 함께 GFA를 구성한다. 家長이 사망하면 共同相續人들은 GFA를 分割 相續한다.

— 贈與와 相續이 따르는 GFA : 부모생존시 부모가 GFA를 구성하고 GFA에 출자대상이 되는 재산을 公有상태로 贈與하는데, 贈與者는

—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贈與하거나

— 贈與받는 者에게 地代를 제공하게 하거나

— 相續分의 使用收益權을 보존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의 虛有權을 줄 수 있다.

② 투자자 GFA : GFA investissem

이는 여러출처의 자본을 農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것인데 예금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방식이다.

— 農業經營者(신인 혹은 소유권을 잃은 小作人)일 경우 : 長期賃貸借를 통해 제공되는 安定性과 恒久性

— 投資者일 경우 : 이윤율이 낮을지라도 투자의 안정성과 稅制惠澤(신고된 수입에 대해 20%감면, 상속시 移轉稅의 면제, 토지가 *ha*當 50,000프랑 이하일때 잉여금 면제)

③ 相互GFA : GFA mutuel

相互GFA는 원래 자기농장토지에 대해 재정적 출자를 할 수 없는 農業經營者를 도우려 생겨난 것으로서 農民과 非農民을 참여시키고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며 토지를 長期賃貸하고 있다.

GFA에 부여된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만일 GFA관리, 會社持分의 讓渡方式과 가치평가 방식, GFA해체조건등에 관한 법규를 기안하는데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같은 방식은 여러 위험요소를 가질 수 있다.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 제39조 및 그 이하에서는 이전의 法條文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는데 특히 不動產出資民間協會와 保險協會가 엄격한 조건하에 GFA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GFA의 持分이 擔保로 부여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2) GFA의 決算

1970년이래 GFA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특히 家族GFA(GFA familial 가 그러했다.

① 投資者 GFA(GFA investissem : 1980년 6월)

— 農業銀行(Credit agricole : SEGESPAR)을 통해 구성된 GFA

- 설립이래 GFA수 : 100개
- 출자된 總資本金과 투자중인 資本總額 : 170백만프랑
- 出資者數 : 약 5,000
- 關聯土地面積 : 약 9,000 *ha*

— 公證人을 통해 구성된 GFA

- 설립이래 GFA수 : 약 54개
- 總出資 資本額 : 40백만프랑
- 出資者數 : 569
- 關聯土地面積 : 약 2,500 *ha*

— 銀行業部門에서 구성한 投資者 GFA는 75개정도로서 그 出資資本額이 135백만

프랑에 달한다.

② 相互GFA(GFA mutuel : 1980년 7월)

相互GFA는 Marne 지역에서 생겨났으며 그 분야에서 Marne은 선도주자격으로 남아있다(24개의 GFA와 관련토지면적이 1,550 *ha*이며 GFA지분소유자가 2,000여명으로 대개가 農民이다)

Marne의 전문적 지도자가 이끈 활기찬 홍보정책에 따라 相互GFA운동이 다른 여러 道지역에도 번져나갔는데 현재 각지역의 相互GFA 수는 Marne을 포함해서 103개이며 Ardennes 4, Cher 4, loir-et-cher 7, Mayenne 5, Seine-et-Marne 9, Somme 3, Yonne 6이며 총 3,500 *ha*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를 관할하고 있다.

③ 家族GFA(GFA familial)

家族GFA는 相續을 체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1979～1980 農業調査(Recensement général de lágriculture 1979～1980)에 따르면 6,337개에 달하고 家族GFA와 관련된 토지면적은 總農地利用面積의 1% 조금 못미치고 있다.

라. 農業構造改善社會對策基金(FASASA : Fonds dáction sociale pour láménagement des Structures agricoles)과 全國農業經營構造改善센터(CNASEA : Centre national dámênagement des Structures des experitations agricoles)

1) 農地構造改善社會對策基金 : FASASA

FASASA를 창설한 1962년 8월8일자 農業基本法 補完法은 4章에서 12년의 기간을 두고 公共基金을 부여하여 農業經營構造改善을 촉진시켜 왔다.

FASASA의 본래 임무는 第27條에 명시되어 있는데

① 營農을 중단하고 자신의 農場을 讓渡함으로써 토지개선을 용이하게 하는 정년에 달한 農民에게 隱退年金을 지급하고

② 土地被收用者, 本國送還者, 寡婦의 경우에 隱退年金성격이 아닌 종신퇴직보상금을 부여하고

③ 補償金과 貸與金을 통해 農村移住를 장려하고

④ 有望하지 못한 農場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포기하는 農民에게 再就業補償金과 貸與金을 割當하고

⑤ 재적응기금을 통해 직업이동을 도모하고

⑥ 農民養成을 支援하고

⑦ 황폐화된 지역에 農民維持를 위해 支援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광범위한 임무들은 農業銀行이나 協約機構인 農村定着 및 移住協會(ANMER : Association national de migration et l'établissement ruranx)이나 全國農村職業轉換協會, (AMPRA : Association national pour les mufations professionnelles en agriculture) 의 지원하에 農林省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1966년말부터는 1965년 11월 29일자 財政法 第59條에 의해 만들어진 公共調整機構 즉 CNASEA가 이를 맡게 되었다.

2) 全國農業經營構造改善센터(CNASEA)

CNASEA는 農林省산하의 公共機構로서 1인의 監督官과 行政府代表와 農業組織體代表로 구성되는 理事會에 의해 운영된다. 수십명의 地域代表者가 CNASEA의 지방대표로서의 업무를 맡고 있으나 대부분의 道에 있어서는 營農構造改善을 위한 조직(ODASEA:Organisme Pour l'aménagement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이 구성되어 있으며 全國農村定着 및 移住協會가 만든 農村移住組合의 변형형태인 農業協會의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다.

協約에 따라 CNASEA는 이들 조직에 CNASEA의 임무중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公共機關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대신 ODASEA는 인적 및 기능적 비용 외에 기술적 조력을 얻게되며 공공서비스의 양도가 필요할 때 ODASEA는 CNASEA의 監督하에 놓인다.

CNASEA에 맡겨진 임무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

가) 終身年金制度(IVD : Indemnité viagère de départ)

CNASEA의 가장 눈부신 활동으로서 IVD가 시작된 이래 10백만*ha*상당의 農地가 이 제도에 적용되었다.

(1) 1980년 改定이전의 IVD

IVD는 1962년 8월8일자 농업기본법보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활동을 중단하거나 農場을 讓渡함으로써 土地改良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農民에게 退職充當金을 주는 것으로서 규정되었다.

IVD규정은 1972년 共同體指針(directives conmunautaires)적용으로 1974년 1월20일 法令을 통해 바뀌어졌다. 이러한 規定에 따라 ≪해방된≫農場은 토지면적조건에 부응해야 하며 다음 用途중 하나를 갖도록 해야한다.

① 직업적 능력이 충분히 증명되는 農民의 최초 入住用

② 小農土를 통합할 목적으로 인근 몇개 농장의 확대용

③ 都市化, 農業 및 觀光地域, 綜合施設物 敷地用

④ SAFER에 대한 販賣用

두가지 형태의 IVD가 있는데 첫째, 非隱退年金IVD(IVD non complémentaire de retr-

aits)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세에 부여되나 配偶者가 사망하였거나 老廢率이 50%이상인 經營主에게는 55세에 부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老後保障(Vn avantage-vieillesse)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조건하에 土地를 내놓는 農民도 이같은 IVD를 누릴 수 있다. 년간총액을 1980년초에 獨身者의 경우 최대 3,960프랑에서 1,500프랑이고 한가구당 6,840프랑이었다. 이같은 IVD는 은퇴시까지 받게되며 그 후 隱退年金IVD(IVD complément-aire de retraite)를 받게된다.

둘째, 隱退年金IVD(IVD complémentaire de retraite)는 보통 65세에 지급되는데 은퇴가 예상되는 경우엔 60세에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農業共濟組合이 주는 年金에 부가된다. 년간총액은 1,500프랑 정도이다.

(2) 1980년 7월4일자 농업기본법에서의 IVD

1980년 7월4일자 농업기본법은 IVD를 크게 개정하였는데 정부는 非隱退年金IVD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下院에서 보고자 M. Cornette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政府는 새로운 農民後繼者를 위해 年老한 農民들로 부터 農地가 移轉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기를 바라며 많은 農民들이 갖고 있는 경향 즉 老後保障의 혜택(avantage-vieillesse)을 받기를 바라면서도 農業經營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억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있어서 政府는 IVD가 부여하는 土地改良條件을 한층 완화하고 있다. 이는 노령화한 農民을 은퇴시켜 보다 효율적인 農業經營者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서 土地政策의 논리는 주로 노후한 農業經營者를 隱退시키고자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年間退職補償金(IAD : L'indemnité annelle de départ)은 隱退年金IVD를 대체한 것이며 60세에서 65세에 이르는 農民가운데(홀아비나 불구의 경우는 55세) 필요로 되는 연령에 이르러 農業老後保障의 혜택(avantage-vieillesse agricole)을 누릴 수 있으며 農業經營主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土地面積條件에 부응하는 토지를 처분하는 農民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한 토지는 土地構造管理와 관련한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취업한 상태거나 취업하려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農民에게 양도되어야만 하며 그밖에 일반인을 위한 재식림(再植林)이나 非農業用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형태의 補償金 總額은 1981년도의 경우 獨身者에게는 년평균 10,000프랑정도이며 한가구의 경우엔 15,000프랑에 달하고 있다.

退職終身年金(L'indemnité viagene de dêpart complémentaire de retraite)은 年間補償(indemnité annuelle)직함을 가진자가 隱退를 한 경우나 65세에 農業經營을 그만두고 農業老後保障惠澤을 누리는 자, 65세 이후에 農業經營을 그만두고 老後保障惠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IVD연간총액은 1981년의 경

우 農業經營活動을 63세 이전에 그만둘 경우엔 2,900프랑이고 63세 이후엔 1,500 프랑으로 정해져 있다.

(3) IVD改定의 決算

施行初期年度에는 IVD受惠者數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1969～1970년도에 최고도에 달하였다. 그후 IVD受惠者數는 人口學的 原因(1914～1918년 전쟁기간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해에 태어난 인구층의 은퇴연령에 다다랐다는 사실)과 經濟的 原因등(인플레이션으로 인해 補償額이 과소평가 되었으며 게다가 經濟恐慌으로 인해 農業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억제되었다)에 의해 꾸준히 감소하였다.

1980년에 IVD受惠者數는 18,346명이며 IVD시행 初期年度부터 1981년 1월 1일까지는 594,429명에 이르고 그중 385,000명이 1981년 현재 IVD를 지급받고 있는데 대개 프랑스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IVD는 10.1백만 *ha*의 農地를 자유화시켰으며 그중 9백만*ha*는 1963년에서 197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IVD가 자유화한 농지는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70년 1,215,000 *ha*, 1976년 373,000 *ha*, 1977년 325,000 *ha*, 1978년 351,000 *ha*, 1979년엔 287,000 *ha*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1980년 7월 4일자 農業方向設定法에 의해 보다 매력적인 새로운 규정에 힘입어 역전되었으며 그 결과 1980년엔 38만*ha*가 1981년엔 45만*ha*의 農地가 자유화되었다.

나) IVD의 補助支援

노쇠한 農民이 營農活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3가지 支援方式이 있는데,

첫째로 期待補償(L'indemnité dáttente)이 있는데 이는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農村再開發地域이나 산악지방에서 늦어도 60세까지는 農場을 폐쇄하고 IVD를 요청하기로한 農民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총 受惠者數는 5,000명이다.

둘째로 構造改善奬勵金(PAS : Prime d'apport structuel)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營農活動을 중단하고 農地전체를 開發計劃을 갖고있는 인근농장이나 SAFER에 양도한 農場主에게 지급된다. 자본형태의 지급이나 終身年金形態의 지급방식이 있다. 受惠者數는 1975년1,400명, 1976년 1,900명, 1977년 1,800명, 1978년 6,550명, 1979년 5,800명, 1980년 8,000명, 1981년 · 10,000명(예상치임)이다.

세째로 農業勞動者 家事補助員 혹은 賃金勞動者에 대한 年間補償이 IVD나 構造改善奬勵金(DAS)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農場主의 활동중단에 따른 失職에 대한 補償制度이다. 1975년에 그 受惠者는 200여명에 불과했다.

다) 職業轉換과 教育

CNASEA의 임무중 職業轉換支援과 職業訓練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새로운 職業訓練을 통해 農業構造改革에 따른 不作用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職業轉換支援活動은 農民들이 職業轉換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農民들중 職業轉換者는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기간동안 얼마간의 보수와 農業退職 및 就業奬勵金을 받고 때로는 이사 및 수송비용을 상환받기도 한다.

1963년부터 1982년까지의 受惠者數는 90,000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80%가 30세 미만이다. 그중에는 家事補助員(les aides familianx)이 약 75%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년간 受惠者數는 약 2,500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農場主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CNASEA는 職業養成教育에 배당된 국가사무국예산을 관리하는데 農民들의 職業養成教育支援活動은 農民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 직업전환과정을 손쉽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支援活動에는 職業養成教育機關동안 드는 교통비 외에 社會保障制度의 惠澤 및 실습기간동안 얼마간의 보수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수는 각 당사자의 상황과 실습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CNASEA의 이같은 활동은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 일년에 약 15만명이 職業養成教育을 받았으며 이중 50～60%정도가 보수를 받았다.

끝으로 CNASEA는 小規模農地를 경작하고 부양자녀가 최소한 3인인 農民들의 자녀를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라) 35세미만 農民의 定着

이같은 활동의 목적은 農民·家事補助員 또는 賃金勞動者가 새로운 農場에 就業할 수 있도록 혹은 보다 큰 규모의 農場에 재취업하거나 農業生産體系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carte -11, 12)

다음과 같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① 人口密度가 보다 덜한 지역으로의 農業移住支援

② 같은 지역에서의 農場移轉支援

③ 生産體系轉換을 통한 農場用途轉換支援

④ 보다 좋은 農業技術教育을 받은 農民의 就業을 돕기위한 支援

⑤ 해외로부터 送還된 農民들의 再分類支援

CNASEA는 위와같은 형태의 개입을 통해 農民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전에 農民들이 경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農民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 CNASEA는 農業銀行의 特別貸與를 받을 수 있는 補助金(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을 급여할 수 있다.

(1) 農業後繼者 定着政策의 土臺

人口統計資料나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農村 젊은이들을 農村에 잔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1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農民子女가 農村을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시기에 태어나 30년이상 營農活動을 해온 農民子女의 비율은 단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INSEE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에 95%이상의 농촌젊은이들이 營農活動을 하고 있거나 한적이 있는 아버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農村이외 출신의 젊은이들이 營農活動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農村에서의 자녀출산수가 최근 30년동안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1947년 農家에서 태어난 男兒의 수는 73,000명 이던것이 1977년에는 17,000명 선으로 떨어졌다. 감소비율 1950년경 2%에서 20년이 지나면서 9%로 증가했다. 1977년에도 여전히 6%에 달하고 있다. 현재의 出産人口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지 얼마 안되는 수의 농촌젊은이들만이 營農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1919년 이후 태어난 많은 農民世代들이 農業으로부터 은퇴할 시기를 맞게되거나 營農活動의 代를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 그럭저럭 현상유지를 해나갈것으로 예측된다.

8차계획예비작업에서는 農村젊은이들의 農外移住比率에 대한 여러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農村젊은이(16～34세)의 農外移住比率이 매년 4%라는 낙관적 가정하에 1975년과 1985년에 있어서 營農活動人口는 16～34세가 53만2천, 35～54세가 138만4천, 54세 이상이 91만7천에서 94만2천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35～54세가 77만, 16～34세가 35만으로 줄어들어 營農活動人口의 연령구조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까지 연장해서 보게된다면 農業人口는 보다 노령화되고 農業人口의 반가량(49%, 52만8천)이 55세이상이며 35～54세의 農業人口는 1/3(36만7천)수준에도 못미치게 되는 젊은층(16～34세)의 비율은 17%(19만1천)로 될 것이다.

(2) 農民後繼者에 대한 金融支援 및 農民後繼者 就業補助金(DJA: Dotation dinstallation des jeunes agriculteurs)

① 農民後繼者 就業補助金(DJA)

이는 1973년이래 지급되었으며 農村 젊은이들이 農場設立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補助金은 최소수준의 인가증가율에 못미치고 그지역의 자연환경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營農活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한해 지급되는데 그 액수는 25,000 프랑이었다.

그러나 1976년 2월6일자 法令을 통해 이 補助金은 3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산악지역의 경우 45,000프랑, 황무지의 경우 30,000프랑, 평지의 경우 25,000프랑이다.

1981년 1월1일 이후 補助金額이 인상되었는데 산악지역은 50%(67.500프랑), 황무지지

역은 40 %(42,000 프랑), 평지지역은 30 %(32,500 프랑)로 상향조정되었다.

1981 년 10 월에 農民後繼者 就業補助金은 다시 증가하여 각각 81,000 프랑, 50,400 프랑, 32,500 프랑(지역에 따라서는 39,000 프랑인 곳도 있음)으로 조정되었다. 補助金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35 세미만

— 農場敷地가 일정크기에 달하고 최초의 農場設立인 경우, 그리고 설립후 최소 5 년간 農場에 거주할 것.

— 충분한 營農能力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3 년이내에 투자계획을 실현할 것을 약속할 것

DJA는 3 단계로 나뉘어 지불되는데 2/5 는 DJA지급결정후 1/4 분기가 지나서, 2/5 는 18 개월후, 나머지 1/5 은 3 년후에 지불된다.(carte - 13)

1973 년과 1980 년 사이에 45,000 건의 補助金이 지급되었는데 그중 8,190 건을 1980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1979 년에는 受惠者의 절반이상(54 %)이 25 세이하, 25 ~ 29 세가 30 %, 30 세이상이 15 %였으며 77 %가 家事補助員(aides familliaux)出身이었으며 9 %가 農業勞動者 出身이었다.

DJA 관련면적은 1979 년 22 만 4 천 5 백 *ha*, 1980 년 24 만 5 천 *ha*에 이르고 있다.
(figure - 18),

② 農民後繼者 金融支援

就業特別賃付는 흔히 DJA대부와 함께 이루어지며, 매우 좋은 조건의 이자율로 農民後繼者가 農場設立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게다가 <別居支援金>이 만들어져 젊은 農民後繼者가 그들의 부모와 떨어져 활동할 수 있도록 補助해주고 있다.

마) 土地整備集團化作業(OGAF : Les opêrations groupées dâmênagement foncier)

土地整備集團化作業을 가능케 한것은 1970 년 6 월 8 일자 法令이며 이같은 형태의 거래는 일반조치가 갖는 틈을 메울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農林省은 小地域내에서 제한된 기간과 일정규모의 예산을 갖고 地方公共機構와 협의된 계획범주하에 대상지역에 적절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4 년부터 이같은 활동은 1972 년의 共同體社會構造指針에 의해 수그러 들었다.

OGAF의 두가지 형태의 주요활동이 있는데 첫째, 都給賞與金도 農地讓渡農民에게 지급되는 農地流動化와 農地復舊를 위한 補助 및 支援, 둘째, 農場改良支援 : 水路改良, 저수댐건설, 가시덤불제거, 草地改良등 산악지대나 포도재배지역 같은 곳에서 農村改良計劃과 관련된 사업들은 OGAF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1980 년 1 월 1 일을 기점으로 해서 141 개 사업이 착수되어 66 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중이며 1980 년과 81 년도에 36 개의 새로운 사업이 인가되

었다.

OGAF내에 개별적 일건서류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977년에 2,000건이던 것이 1979년에 거의 5,500건에 이르고 있다.

마. 共同體開發計劃의 施行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CEE)가 시행한 構造政策은 3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農業經營이 일정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계획 둘째, 특히 산악지대와 같이 農業活動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조치, 세째, 社會經濟情報와 職業的素養에 관한 것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유럽의회(Parlement européen)의 支援을 받아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가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開發計劃은 전유럽에 걸쳐서 構造改善活動을 촉진시켰는데 1972년 4월17일자 法令 第72~159號 共同體指針에 부응하는 1974년 2월20일자 法令을 통해 창안된 개발계획은 農村의 現代化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합리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農場이 보통 6년기간이 지난후에는 같은 지역내 非農業部門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엇비슷한 單位勞動所得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所得衡平의 목적은 이미 1960년 8월5일자 農業方向設定法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것이나 이러한 계획의 출발이 다른 유럽공동체 국가들 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開發計劃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農場主는 최소한의 職業的 素養을 구비하여야만 하고 계획기간동안 營農實積을 기재해야 하고 최소한 한단위 노동력과 많으면 3단위 노동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들의 노동에 대해 일정수준에 달하는 單位勞動當 所得을 확보해 줘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많은 혜택이 農場主에게 부여될 수 있다.(補助金, 金融支援……등)

제출된 서류는 農民代表와 公務員으로 구성된 道合同委員會에서 검토하는데 1979년도엔 5,786건이 제출되어 그중 5,444건이 승인되었다. 프랑스에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7년도이며 유럽공동체(CEE)는 1972년 共同體指針이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해왔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開發計劃의 受惠者는 특히 젊은 農場主(평균 37세)이며 平均投資總額은 47만프랑인데 農場의 技術的 經濟的 狀態에 따라 다르다. 즉 염소나 양사육농장의 경우 조금 낮으며 돼지나 온실원예를 제외한 생산분야에서는 보다 높은편이다.

평균적으로 현재로 할인된 農業所得은 계획시작단계와 종료단계간에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순생산물의 증가가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큰데 기인하는 것이다. 開發計劃은 주로 낙농업과 축산분야에 중점을 두고있다.

바. 農場併合抑制 및 構造統制

農場併合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1962년 8월8일자 농업기본법 보완법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이는 農村法典(Code raral) 제1권 7章에 소개되고 있다.

1) 1980년까지의 規制法規

농장면적이 各道가 정한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農場併合은 農地構造道委員會의 견해가 제기된 후 道知事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農場面積上限은 農場設立最少面積(SMI : la Surface minimum dinstallation)의 2～6배이며 이는 15～30 *ha*에 달하는 것이다. 農場併合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도 道知事의 사전승인이 똑같이 요구되는데 첫째 農場併合으로 인해 어떤 한 농장이 농장설립 최소면적 이하로 되는 경우, 둘째 農業經營者의 동의없이 30%이상의 農地가 줄어드는 경우, 셋째 농장기능에 필수적인 건축물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이다.

1980년 7월4일자 농업기본법의 上院보고자인 Sordel씨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규제는 그 원리에 있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면적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적용될때 엄격한 절차가 뒤따르는등 종종 왜곡되며 道農地構造改善委員會가 취한 결정의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1980년 7월4일자 농업기본법의 기원을 둔 새로운 규제법

이는 ≪農業經營構造制限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農村法典 제1권 7장의 규정을 수정한 1980년 7월4일자법 第46條와 그 이하에 기원을 두고 있다.(Carte－16) 農業構造 整備計劃의 설립으로 農業構造問題에 관한 革新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절차가 규정되고 農村法典 188－2條에 따라 몇단계의 승인이 있게 된다.

가) 統制가 强制的인 경우

農場面積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의무적이다.

— 직업경험이나 경력을 갖지 못한 자

— 農場主의 排偶者

— 協會나 公有部分

農場設立 最少面積의 2～4배까지 制限을 초과하는 면적으로 농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평균 농장면적이 農場設立最少面積에 미치지 못할때도 사전승인 대상면적은 이 농장설립 최소면적까지 낮추어질 수있다.

나) 統制가 의무화될 수 있는 경우

農業構造整備計劃은 農場設立, 擴張 혹은 併合이 賃借人의 동의없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적어도 農場設立最少面積과 같은 규모의 農場을 廢止하게 하는 경우

— 어느 한 農場을 農場設立 最少面積이하로 만드는 경우

— 어느 한 農場面積의 30 %이상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農場運營에 필수적인 건물을 제거할 경우

農場所在地로부터 멀리 떨어진(5 ㎞이상) 小農地들을 병합해서 확장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임의적이나 예전에는 法規를 통해 보다 통제가 심하였다. 이제 약간의 융통성이 허용됨으로서 농업이 보다 다양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 開發承認이 당연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전부 6가지인데 상속 혹은 증여, 일시적 겸업활동, 모든 회원이 農業經營者인 협회, 農場이 夫婦간에 區分된 경우, 結婚을 앞두고 각 排偶者가 農場을 합하는 경우, 3년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相續者들이 就業하는 경우

라) 절차의 전개

道 또는 全國農業構造委員會는 절차를 밟아 道農業構造 整備計劃을 설립하고 農場設立 最少面積을 정하는데 개입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요청들을 검토하는 일에도 개입하게 된다.

當事者(需要者, 地主, 賃貸人)는 서류교신후에 각자의 관찰사항을 제출하도록 소환되는데 위원회가 견해를 표명하는 기간은 두달로 고정되어 있으며 15일후 허가당국은 이의가 없는 경우 각 當事者에게 결정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요청자의 서류접수 후 75일이 지나도록 허가당국의 결정이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行政裁判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法에 따라 긴급판결을 내려야 한다.

마) 督促 및 處罰

農村法典 第188 - 7條는 道知事로 하여금 불법적 상황에 있는 農業經營者의 승인요청을 제출하든지 승인요청의 심사결과를 거부할 경우 營農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處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허가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 하지 않는 農業經營者는 農村法 188 - 8條에 따라 農業과 관련된 경제적 성격의 公共支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1,000 ~ 10,000 프랑의 벌금을, 승인이 나지 않는 후에도 農場을 계속 운영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때는 2,000 ~ 100,000 프랑의 벌금을 물게 되었으며 輕犯罪裁判所는 일당 50 ~ 500 프랑의 연체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兼業活動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構造의 統制는 재산경영과 전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첫째, 충분한 營農經驗과 職業訓練으로 農場設立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둘째, 개인책임하의 가족농장을 보호하고 過小規模의 農場을 확대하도록 도움을 줄 수있어야 하며

세째, 경우에 따라 다른 職業出身者가 營農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뿐만 아니라 兼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非營農時間의 일부를 할애하여 農業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980 년 7 월 4 일자 兼業活動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사. 農民定着을 위한 農業金融

政府는 貸付利子를 낮추기 위해 政府豫算중 일부를 국립기관인 全國農業信用金庫(Ia caisse nationale du credit agricole)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1965 년 500 백만프랑에서 1979 년과 1980 년엔 5,300 백만프랑에 달하고 있으며, 15 년 사이에 약 10 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 地域農業相互信用金庫, 自治機構 및 共濟組合등도 처분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대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政府의 몇몇 補助金(DJA)등도 農業銀行(Credit agricole)의 추가적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貸付의 여러범주

短期貸付는 農地購買나 農民의 就業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다.

가) 長期貸付(1978 년 2 월 2 일 및 1965 년 7 월 15 일 法規)

農場主로서 營農活動을 수행하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貸付對象土地를 직접 경영하는 프랑스 국민이나 유럽경제공동체 소속인이라면 누구나 이 長期貸付를 받을 수 있다.

貸付目的은 農地나 農地團 또는 山林團의 대표적 持分을 구매하는 것이어야 하며 토지면적에 관한 두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첫째, 토지취득후 農場의 면적이 農場設立 最少面積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둘째, 貸付總額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土地購入費用이 農場設立最少面積의 두배에 해당하는 취득부분에 제한될 것.

農民後繼者의 就業을 도울 목적의 1978 년 2 월 2 일자 法令에 의해 설정된 범주로서 長期賃貸借에는 3 가지 범주가 있다.

첫번째 범주의 長期貸與는 최대 25 년기간으로 최대 35 만프랑 이내에서 농지구매액의 80 %를 貸與하는 것으로서, 1981 년도에 추가대여기간은 10 년에 9 %의 利子率로서 그 受惠者는 農民後繼者 社會福祉受惠를 받는 農民, 移住者 및 農場을 이전하는 農民들이다. 農民後繼者들의 農場設立이 5 년간에 걸쳐 점차 확산되어 왔으며 이들은 農場設立最少面積의 반에 해

당하는 農場을 설립할 경우 長期貸與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범주의 長期貸與는 최대 20년기간에 최대 30만프랑내에서 農地購買資金의 65%를 貸付하는 것으로서 1981년에 追加貸與期間은 7년에 9%의 이자율로 되어 있으며 그 受惠者는 賃借農, SAFER의 讓受人, 土地被收用者, 先買權을 행사하는 小作人,相續配當權 또는 優先權 受惠者등이다.

세번째범주의 長期貸與는 최대 20년기간에 최대 20만프랑내에서 農地購買資金의 50%를대부하는 것으로서 추가기간 및 이자율은 두번째 범주의 것과 같다. 受惠者는 두번째 범주의 수혜자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농장확대를 위한 농지 거래면적이 최소 1.5 *ha*에 달해야 하며 農場이 이미 農場設立 最少面積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면적의 10%이어야 한다.

나) 特別 中間期間 貸付(1978년 2월 2일 및 1976년 8월 5일자 法規)

이는 農民이 農場을 설립할때 최대 12년기간에 최대 30만프랑의 금액을 대부하는 것인데 追加貸與期間은 1981년도에 평지의 경우 9년, 산악지대의 경우 12년이며 이자율은 6%수준이다. 受惠者는 GAEC과 農民後繼者, 社會福祉受惠農民, 移住者, 農場移轉 및 用途變更 農民 황무지지역에 농장을 설립하려는자, 農場優先配當權 受惠者(民法 第832에서 832-2條)

다) 普通 中間期間 貸付(1965년 7월 15일 및 1976년 8월 5일자 法規)

이는 農場設立의 일부분에 대해 대부하는 것으로서 농장설비품의 80%에 대해 대부하며 최대대여기간은 12년이다. 이자율은 9년간 11%수준이며 최대 대여금액은 50만프랑이다. 受惠者는 農業經營者가 아닌 地主외에 개인 및 단체자격의 農業經營者다.

라) 畜産特別貸付(1973년 1월 4일, 1977년 4월 14일, 1979년 10월 17일자 법규)

이는 축사, 혈통이 좋은 家畜賃貸購買, 병으로 인한 가축의 대체등과 관련되는 貸與로 貸與期間은 축사설립시 18년, 가축에 대해선 15～18년이다. 이자율은 1981년도에 8년간에(양돈의 경우 7년) 8%(양돈 7%) 수준이며 최대대여금액은 25만프랑이고 이를 대여받은자는 普通中間期間貸付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마) 農場近代化 特別貸付(1974년 2월 20일 및 1976년 2월 20일자 法規)

이는 개발계획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農地去來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와 소, 양, 염소등의 家畜賃貸의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대대여금액은 최대 15년기간동안 31만 1천프랑이며 이자율은 평지의 경우 9년간 6% 수준이고 산악지대에서는 12년동안에 6% 수준이다. 受惠者는 農業銀行과 道統合委員會가 동시에 승인한 개발계획을 갖는 자이다.

2) 貸付總額과 比率

農業銀行이 農民들에게 貸付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農民負債의 약 70%) 농업구조

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土地購買 貸與比率은 1973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되었으며 이와반대로 設備投資 貸與는 197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 國土整備問題와 農業土地構造

1) 國土整備

자연을 보호하고 산악지대나 연안지역에서의 환경을 소중히 보호할 목적으로 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다. 1978년에 Joseph Klatzmann은 그의 저서 「프랑스 농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國土整備 및 都市化計劃(SDAU : Schémas directems d'aménagement et l'urbanisme)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 관한 것이다. 농촌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土地占有計劃(POS : Plans d'occupation des sols)은 5,000명이상 거주읍에서는 강제적이며 그결과 農村의 많은 마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서 POS는 임의선택적이긴 하나 소규모 농촌마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ZEP(ZEP : Zone d'environnement protégé)라는 새로운 略語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環境保護地區를 가리킨다.

POS는 어떤 土地를 非農業用으로 즉 장래 도시화지역으로 남겨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POS 공표후 적어도 10년간 農民이 안전하게 營農活動을 할 수 있는 토지구역을 정해야 한다. 土地 割當原則은 매우 훌륭하나 중요한 것은 현실속에서 진행되는 일을 아는 것이다.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다소 효과적일 수 있다. 市議會가 비밀리에 POS를 마련하는 일이 있다. 한편 만일 POS나 ZEP가 더 높은 차원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共同體(읍 또는 면)차원에서 마련된다면 국토의 합리적 배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 POS는 土地投機行爲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그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화가 가능한 토지라는 결정 자체가 땅값을 몇배로 뛰게한다. 이같은 결정은 여러 토지소유자들에게 農業經營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相續稅가 훨씬 오르는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 전망과 노력없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형태의 제한이 農村地域에 부차적 거주자 수를 증가시켜 農業構造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營農活動이 제한받게됨은 분명하다. 營農活動을 제약하는 또다른 규제는 自然保護와 風致保全에 관한 규제들이다. 이는 주로 내륙지방과 연안지방에 위치한 곳으로서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들이다. 현재 국토의 약 14%가 保存地域으로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국립공원이나 自然保存地區로 지정된 약 40만*ha*지역은 어떠한 훼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農村地域의 보다 많은 부분을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 국립공원 주변지역이나 지방공원이 전 국토의 6% 이상에 해당하는 3백만 3천*ha*로 확장되고 있다.

2) 황폐화된 農業地域을 위한 정책

도시화나 國土整備事業이 도시주변이나 觀光地域내에서 營農活動을 제약하고 農業構造를 훼손시킨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겸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분야를 제공함으로써 황폐화된 農村地域에서의 移住를 막고 있다.

황폐화된 農業地域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農村改革政策

1967년에 시작된 것으로서 農村地域을 위해 부처간 상호 지원형식을 띤 것이다. (carte -18)

나) 自然的 限界地 補償金

이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산악지대와 고산지대에 대한 特別補償(ISM : L'indemnité Spéciale de montagne et hante montagne)은 각각 1974년과 1978년에 만들어져 고산지대는 525프랑(1981년 1월 1일 현재), 산악지대는 350프랑이며 1979년 산악지대는 5,547개 부락에 171,248명의 농업경영자를 재편성하였다. ISM은 최소 3단위의 가축에서 최대 40단위 가축을 소유한 산악지대 농업경영자에게 부여된다.

둘째, 산기슭지대에 대한 보상(ISP : L'indemnite' spe'ciale Piédmont)은 1977년 6월 3일 및 1979년 8월 2일자 法規에 설정된 것으로서 1978～79년 겨울철이래 최소 3단위 가축을 소유하고 산기슭에서 營農活動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정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補償金을 支給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酪農優勢地域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으며 최고 10단위 가축을 소유한 경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사육에 대한 보상을 끝으로 완성을 보게 되는데 1980년 5월 30일 국무회의가 채택한 다년간 축산계획은 고산지역과 산기슭지역에서 어린양(생후 10～18개월)에 대한 補償을 확대하였으며 황폐화된 지역에서 어미양과 어린양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投資補充支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첫째, 시설설비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산악지대에서 기계화를 위한 지원,

둘째, 황폐화된 農業地域이나 산악지대에서 축사시설에 대한 보조

라) 農地再利用을 목적으로 하는 그밖의 정책들

草地協會(1972년 1월 3일자法 및 1978년 10월 23일자 法令)와 자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地主가 政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1980년에 67,000 *ha*에 걸쳐 52개협회가 그같은 지원을 받았다. 1972년에 만들어진 草地團 및 山林團 조한 마찬가지로 이같은 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3) 農村整備計劃 (PAR : Leş Plans damênagement rural)

農村整備는 당연히 農業構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1970년 6월 8일자 법령의 PAR는 그 범위를 제시하고 農村地域開發에 적합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稅金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있어서 農村이 갖는 역할에 대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carte - 19.20)

4) 地域間 契約

이것은 地方公共團體나 政府간에 이루어진 지역간 계약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지역기구와 그 財政 및 經濟活動을 분산하는 수단이다. 5년간 7,500부락에 5백만 주민과 관계된 28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중 189건에 관한 검토로부터 이같은 활동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자. 農村整備開發을 위한 合同資金 (FIDAR : Le Fonds interministériel de dêveloppement et damênagement rural)

이같은 財政機構는 오래전부터 그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어온 것으로서 1979년 7월 3일자 法令을 통해 설립되었다. 首相을 의장으로 6개부서와 계획사무국 (le Commissariat au plan), DATAR를 합한 FIDAR는 農村改革基金과 지역간 계약과 農村公共事業에 관련된 國土整備 部處相互間基金중 일부를 모은것으로서 관계장관,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모든 私的 또는 公的 法人을 한데 모아 개발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활동은 주로 農村脆弱地區 (황폐화된 지역,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구의 역할은 1980년 7월 4일자 農業方向設定法에 따라 참사원에서 (conseil d'Etat) 法令을 통해 취해진 農村整備國家指針속에 자세히 규정될 것이다.

3. 未來의 手段과 目標

農業構造에 관한 개입정책을 더욱 깊이 다루면 다룰수록 보다 적절한 시기에 일정한 목적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결과 현 매카니즘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표된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구의 개념을 연구하는 일이 뒤따르게 되었다.

전통적방법의 현대화이외에도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은 법규를 통해 많은 새로운 수단을 설정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經濟社會委員會 (conseil economigne et social)는Michel Fan의 보고서에 대해 1980년 7월 2일 農業近代化와 土地政策에 대한 견해를 발아들였다. 그후 1981년 5월과 6월의 선거로부터 탄생한 정부는 農業土地政策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 新農業基本法

1980년 7월 4일자 農業方向設定法 第2條에 따르면 法이 정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Ⅲ장 土地政策은 토지이용조건을 개선하고,

— 개인책임의 장래성있는 가족경영을 최대한 유지하고 相續負擔을 경감하며, 토지가격 변화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 營農活動에 특별한 배려를 주면서도 공공단체의 필요에 의한 토지배당을 조정하고

— 農地의 농학적 잠재력을 증대시킨다≫

≪Ⅳ장, 산악지대나 황폐화된 지역에 農民을 유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농업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

≪Ⅴ장, 다음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農村整備 및 地域活動政策

— 農村地域整備와 조정된 總括計劃을 통해 農村地域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 이들 지역에서 雇傭을 촉진하고 適正人口를 유지하며

— 유산보존과 생태계 균형유지 및 동식물의 토산종을 보존하는 일에 農民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法은 정해진 목표를 엄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 토지를 과대하게 비싼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허용된 貸與金을 받을 수 없으며(第29條)

— 기한전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貸與金을 償還해야 한다(第67條)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은 토지시장을 보다 잘 드러나게 하고 國土整備問題를 고려해서 토지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목적을 갖고 있다.

1) 農業土地市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

농업기본법 제25조는 1985년 1월 1일 이전에 農地價格一覽表(市場價格, 賃貸價格 收益價格)가 출간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같은 과정에서 農務省은 農地平均市場價格을 가리키는 계산표를 자연지역별 및 各道內 경작종류별로 공표하였다.

이 계산표는 判事가 農地價를 정해야 할때 평가요소로 된다. 土地整備道委員會는 農地價格目錄을 작성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자연지역별 각 농지범주에 대해 委員會가 平均市場價格과 平均賃貸價格을 유지할 것을 확증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행정부와 SAFER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난 5년간 있었던 소유권이전시 가격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다.

收益價格을 결정하기 위해 委員會는 토지정비읍위원회가 각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고 토지의 농학적 특성과 經營純收益 및 생산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下院에서 가결한 계획속에는 上院이 반대하였지만 農地價格一覽表가 각각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면적, 경계, 소유출처, 소유주명, 地役權 및 도시계획문서에서의 용도등을 결정하는 토지대장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본법은 제 5장 ≪農村整備≫(제 73조)에서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각읍에서 출간되는 農地地圖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문제에 관해 프랑스가 늦장을 부리는 관계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오직 Aisne 道만이 15년의 노력끝에 農地地圖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법적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된다면 農地市場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토지의 실제 농학적 가치가 市場價格에 접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 經營構造整備政策의 優先

이같은 목적에서 농업기본법 제 46조는 각도에 農業構造 整備計劃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각도내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농업구조도위원회와 도농업회의소의견해에 따라 道知事에 의해 준비될 것이다. 최종결정은 농업구조국가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長官이 하게 된다.

다음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經營構造整備政策의 우선적 과제를 소개하는 일이 필요한데

첫째, 보다 능력있는 農民의 就業을 돕고

둘째, 개별책임하의 가족경영을 설립하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과 農場面積이 충분하지 못한 농장의 확대를 돕고

세째, 農業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營農活動으로 전업하거나 겸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

農業構造整備計劃은 또한 정기적으로 農場設立最少面積을 정해야만 한다.

많은 道들은 이미 農村法典 第188-5條에 기초한 農務省의 지시가 있은 후의 法案投票 이전에 農業構造整備計劃을 설정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해 왔었다.

전술한 農村法典條項은 農場併合의 경우 農業地域에 적용되는 土地整備政策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農場併合에 관한 도농지구조위원회 결정의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해당지역내 土地整備의 목표를 정한 참고자료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土地整備計劃은 그것이 비록 신속히 나온 것이다 하더라도 農村整備政策의 가능한 여러목적들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

3) 國土整備를 우선으로 하는 農村地域 經濟開發 및 整備

이는 1980년 7월 4일자 농업기본법 제 72조가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 목적은 農地保全에 관한 입법규제가 도시계획법, 건설 및 주거법, 자연보호법 및 광산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농업기본법의 많은 규정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農地地圖 설정과 農地統合一整備와 관련되어 있다.

(1) 農地地圖

관계지역의 農業經濟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農地面積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土地去來 또는 都市計劃이 있을 경우 각道차원에서 작성되고 각읍에서 출간되는 서류가 필요한데 農地面積을 대폭 축소시키는 경우 도시계획문서는 도농업구조위원회와 농업회의소의 견해에 따라서만 공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農村地域에 적응하거나 도시계획작성시에는 토지를 사회경제적 여러 활동에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2) 農地統合 — 整備

도시계획문서가 작성되고 農村農地統合規程이 정해질때 읍토지정비위원회의 견해에 시위원회가 동의하면 農地統合整備節次가 포고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지역에서 도시계획이나 토지유보지역에 충당되거나 공공시설용으로 할당된 농지부분은 각토지소유자가 그들의 권리에 비례하여 도시화지역 및 農地地域을 부여받는 토지면적비율을 결정한다. 法은 農地面積에 영향을 주는 土地收用에 있어서 農業構造 뿐만아니라 土地의 농학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등품의 農產物을 생산하는 土地와 중요농업시설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나. 經濟社會委員會

여기서는 1980년 7월2일에 제안된 經濟社會委員會의 여러 제안중 두가지를 다룰 것이며 그 하나는 賃貸契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정비문제에 관한 것이다.

1) 해약가능한 土地賃貸 및 영구경작

소멸중에 있기는 하나 Finisfére 남부지역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農村法典 第 904 條 이하에서 규제되고 있는 特別賃貸가 문제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임대는 역사적 유물로서 경영자본으로부터 토지를 분리시킴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그같은 賃貸의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農業方向設定法 第63條에서 第907條에 목표를 둔 건축물이나 토지에 포도나무나 과수목과 같은 영구식목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법적인 결정이 있고난 후 經濟社會委員會는 農務省長官이 칙령을 통해 가장 알맞은 기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규정과 조항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

— 賃貸契約이 있을 때 임대표준형에 관한 조항을 둘 것

— 식목이전의 기초가 되는 포도나무入出의 査定조항을 둘 것

— 포도재배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황폐한 땅에 식목권을 결합시키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

— 양도시에 동산으로서 경영자의 식목등기를 마련할 것

2) 農用地로서 인정된 토지의 가격을 회복시키는 農村整備

經濟社會委員會의 보고서는 國土整備에 장기간의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현재의 여러기구와 환경보호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農地面積이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案이 나왔는데 農地의 황폐화를 보상할 지역기금이 필요하며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農地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土地收用者와 공사주를 財源으로 하는 地域補償基金이 만들어져야 한다. 土地保存地域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기금은 土地整備事業으로 인해 상실된 농지를 회복시키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土地政策의 새로운 方向

1981년 가을 예산심의시 Edith Cresson 農務長官은 가족경영농민을 분명한 태도로 지지한 후 土地政策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또한 André Cellard씨와 함께 대담한 土地政策을 실시합시다. 그것은 농민후계자의 취업율에 다시금 새로운 활기를 줄 것이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토지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것이다≫

≪우선 이것은 構造政策을 개혁하는 일이며, 토지사무소(l'office foncier)를 개설하는 일일 것이다. 마을토지사무소는 농민들이 토지법률위반의 경우(병합이나 소작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것이다) 법정에 나가 집단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변화는 法의 통제하에 관할될 것이다≫

≪道의 土地事務所는 오늘날 각도에서 生産構造管理에 참여하고 있는 5～6개의 조직의 결합을 허용할 것이다 : ADASEA, 농지구조도위원회 SAFER의 기술협의회……≫

≪이들 土地事務所는 農民, 政府代表와 地方委員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土地事務所는 SAFER를 통해 농장설립후보자이면서 충분한 자본을 갖지 못한 農民後繼者에게 土地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SAFER가 자기소유의 土地를 빌려주고 또한 公共機關이나 GFA에 속해있는 토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될 것이다≫

≪農地의 국유화도, 農民後繼者가 사용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土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젊은 農民이 農場에 투자를 해야할때와 마찬가지로, 土地에 대한 투자시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할 방침이다. 매순간 그農民은 자기능력에 따라 土地를 구매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용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土地整備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용, 주거용, 교통 및 관광등등……. 이같은 법은 반드시 각부처상호간에 관한 것일 것이다≫.

Ⅱ. 프랑스農業基本法

1. 1960年 農 業 基 本 法
2. 1980年 農業基本法 新法

빈 면

1. 1960年 農業基本法

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

1960年8月5日
法律 第60-808號

第1章 方向設定에 관한 通則

第1條(經濟發展에 있어서의 農業의 使命) 프랑스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은 經濟社會政策의 範圍안에서 다음 各號의 事項을 통하여 農業과 기타의 經濟生活間의 均衡確立을 目的으로 한다.

1. 프랑스經濟와 國民의 社會生活發展에 寄與하고 需要의 動向, 地域의 自然的 適性, 유럽經濟共同體에 있어서 프랑스本土의 地位와 아울러 低開發國에 대하여 부여할 援助를 고려하면서 프랑스本土農業의 總體的 貿易收支를 均衡시키는 것.
2. 특히 農業經營者와 農業賃金勞動者의 社會的 地位를 다른 職業部門의 地位와 同一水準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農業從事者와의 사이에 存在하는 所得不均衡의 原因을 除去함으로써 이의 發展에 의한 利益에 農業을 適正히 參與시키는 것.
3. 農業, 특히 家族經營에 있어서 기타의 經濟部門에 비하여 不利한 自然的 經濟的 諸條件을 補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第2條(農業政策의 目標) ①農業政策은 前條에 規定한 目的達成에 必要한 手段을 農業從事者에게 確保시켜야 한다. 農業政策은 다음 事項을 目標로 한다.

1. 技術進步의 發展 普及을 도모하며 需要에 適合한 生產要素, 특히 勞動力의 最適利用을 위한 合理的인 發展을 도모하고 아울러 公正한 農業物의 價格을 決定함으로써 農業의 生產性을 增大시키는 것.
2. 非正常的인 競爭에 대하여 保護를 하는 동시에 農業物利用加工業을 優先的으로 利用하게 함으로써 工業用 原料 農產物의 販路를 擴大하고 또한 農產物의 流通 및 加工의 條件에 有效適切한 對策을 마련하여 農產物의 國內外 販路의 擴張과 農產物의 生產價格을 改善하는 것.
3. 建物이 있는 土地資產과 建物이 없는 土地, 資源의 保全, 土地改良 및 農業近代化를 도모하는 것.
4. 農業經營者와 農業賃金勞動者의 勞動, 經營管理의 責任, 經營資本 및 土地資本에 대하여 기타의 經濟部門에서 받는 報酬와 同一한 水準으로 유지하는 것.
5. 農業經營者와 農業賃金勞動者에 대하여 效率的인 社會的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6. 各地域에 가장 適合한 農業物의 生產力向을 決定하고 또한 이를 奬勵하는 것.

7. 近代的인 生產技術의 方法을 가장 效果的으로 利用하여 勞動力과 經營資本의 完全雇傭이 가능한 家族的 形態의 農業經營構造를 補完하고 援助하는 것.

②上記의 政策은 農業職能組織과의 協力에 의하여 實施한다.

한편 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에 정할 農業職能에의 모든 諮問에 있어서는 政府는 특히 農業會議所 및 農業會議所會頭常設會議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

第 3 條(農業政策의 統計的 基礎) 農業勞動과 農業資本의 報酬水準의 測定은 土地의 利用形態 및 地域別로 代表的 經營의 平均的 簿記計算方法에 의하여 행한다.

第 4 條(生產目標) ①耕作의 方向設定·生產目標·目標達成을 위한 手段 및 技術의 決定과 投資의 緊要度設定은 國會의 承認을 얻을 近代化設備計劃에서 定期的으로 明白히 밝힌다.

②近代化設備計劃은 이 法律에 정하는 諸原則을 고려하여 그 運用에 필요한 手段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4年間의 近代化設備計劃期間중에 計劃을 修正할 필요가 發生한 경우에는 農業年度에 앞선 9月 15日 이전에 國會의 專門委員會와 協議한 후 政令으로 修正한다.

經濟的 社會的 發展과 地域의 開發整備를 위하여 地域計劃에 포함되는 地域農業計劃은 近代化設備計劃에 정한 生產目標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 5 條(生產價格과 消費者價格의 不均衡) 同法律의 公布日로부터 1年이내에 政府는 특히 農產物 流通過程의 改善과 農產物에 관한 運賃率 및 租稅負擔의 公平化와 그 緩和措置에 의하여 農產物 生產者價格과 農產物 小賣價格間에 存在하는 不均衡을 縮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措置를 講究 및 斷行하여야 한다.

第 6 條(政府의 年次報告) ①政府는 每年 7月 1日 이전에 第 2 條의 規定을 고려하여 決定한 農業의 生產 및 販賣計劃의 實施事項에 관한 報告를 國會에 提出한다.

②同報告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대하여 행한다.

1. 共同農業政策의 進捗狀況計劃에 정하여 있는 "프로그램"의 實施事項과 農業生產에 대하여 國家가 遂行한 協力의 質과 量을 明白히 표시할 것.
2. 前農業年度에 있어서의 交易條件, 즉 農業從事者가 자신의 生產物販賣에 의하여 受取한 價格과 生產手段, 用役 및 生活用品의 購入을 위하여 支拂한 價格과의 관계의 趨勢를 1947年－1948年의 農業年度를 基準時點으로 하여 표시하고 아울러 農產物의 生產者價格과 당해 農業物의 消費者價格과의 隔差를, 또한 당해 農產物에 부과된 租稅額을 밝히면서 표시할 것.
3. 國民所得에 있어서는 農業所得과 다른 產業部門所得과의 推移를 比較할 것.
4. 經營簿記가 規則的으로 實施되어짐에 따라 平均的인 生產條件을 具備하고 正常的인 管理에 의하여 滿足할만 한 收益을 얻을 수 있는 自作經營의 貸借對照表를 參照할 것.
5. 특히 이러한 經營簿記의 結果에 의거한다.

가. 家族勞動力이 다른 部門에 雇傭되어 經濟生動을 함으로써 얻는 報酬에 어느 程度까지 適

應하는 勞動報酬를 받고 있는가,

나. 管理層에 從事하는 勞動力이 어느 程度의 報酬를 받고 있는가,

다. 土地資本과 經營資本에 대하여는 어느 程度까지 適正한 利子가 保障되어 있는가.

③同報告는 前項의 規定하는 외에 前農業年度의 生產者價格이 收穫量을 고려하여 前農業年度의 生產費를 어느 程度까지 "카바"하였으며 計劃에 策定된 農家自立資金調達을 어느 程度까지 가능하게 하였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끝으로 同報告는 필요한 경우에 農業生產方向의 修正 및 確認된 所得不均衡의 匡求와 均衡回復을 위하여 政府가 가장 가까운 狀來의 豫算法·補正豫算法 또는 個別法에 의하여 規定할 手段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7條(經營構造의 硏究) ①農林部長官은 資本 및 技術의 合理的인 利用과 第6條에 規定한 目標에 適應하는 勞動, 經營管理, 土地資本 및 經營資本에 대하여 報酬의 獲得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人의 勞動力單位(農業生產法人 또는 經營者集團의 경우는 그 이상)에 의한 自作經營이 正常的으로 保有할 面積의 測定에 필요한 硏究를 自然的인 地域, 耕作의 性格 또는 經營形態別로 행하게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2年 이내에 縣委員會의 意見을 聽取한 후 面積을 省令으로 정한다.

③同縣委員會는 적어도 縣農業會議所, 農業職能組織의 代表 및 縣議會의 代表를 포함하여야 한다.

第8條(非自立經營) ①融資, 특히 長期特別融資, 補助 및 租稅公課減免의 形式에 의한 國家의 財政的 援助는 第7條에 規定한 硏究에 의하여 明白히 決定된 最適條件에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目標로 하여 農業經營者·農業生產法人 및 經營者集團에게 優先的으로 부여한다. 同援助는 특히 다음에 대하여 부여한다.

1. 젊은 農業從事者의 農業經營에의 定着.
2. 經營을 自立的인 것으로 하기 위한 經營規模의 擴大
3. 農業經營의 集團化 또는 經營의 一部 또는 全部의 交換.
4. 農業人口의 他地域에의 入植.

②前項의 財政援助에 관한 會計報告는 第6條에 정한 報告와 동시에 每年 國會에 提出한다.

③同會計報告는 地域別, 經營規模別 및 필요한 경우에는 生產形態別로 가능한 限 詳細하게 融資金額과 補助金額을 明白히 표시하여야 한다.

第2章 經營負擔의 輕減

第1節 相 續

第9條(讓渡稅의 支拂延期) 租稅一般稅法典 第1718條에 다음 項을 添加한다.

「1人의 相續人·受遺者 또는 受贈者가 자신이 最小限 15年間 經營할 것을 約束한 農業經

營에 있어서는 모든 相續人·受遺者 또는 受贈者가 당해 農業經營에 관하여 支拂할 讓渡稅의 支拂延期는 利子支拂의 事由가 되지 아니한다」.

第2節 賃金延期契約

第10條(賃金延期勞動契約) 프랑스의 出生率 및 家族에 관한 1939年 7月 29日의 命令 第63條, 第66條, 第67條, 第68條, 第72條 및 第73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1954年12月8日字 政令에 의하여 改正된 第63條의 後文을 다음의 規定으로 改正한다.

「各各의 경우에 適用될 賃金은 經營者가 死亡한 경우 常用年度에 公布된 省令에 의한 賃金, 經營主의 生前에 債權의 支拂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 支拂에 앞서 公布된 省令에 의하여 認定된 賃金으로 한다」.

2. 第66條 規定의 後文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最年少者가 18歲에 達하든가 또는 農業教育機關에서 계속하고 있는 勉學이 終了할 때까지는…」

3. 第67條, 第68條, 第72條 및 第73條를 다음의 規定으로 改正한다.

(i)「第67條 賃金延期契約의 受益者는 經營者가 死亡한 후 相續財産의 支拂過程에서 債權的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經營者는 生前에 있어서 특히 贈與에 의한 分割節次를 取할 경우에는 債權的 權利의 受益者에 대하여 당해 債權에 대한 債務支拂을 履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節規定의 受益者로서 贈與에 의한 分割이 財産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경우 經營者로부터 辨濟를 받지 아니하고, 萬一 分配되지 아니한 殘餘財産이 당해 受益者의 債權을 支辨하는데 不足할 경우에는 당해 受益者는 分割에 있어서의 贈與者에 債權支拂을 請求할 수 있다. 이 節規定에 의하여 發生한 債權的 權利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經營者에 대한 協力期間 如何에 不拘하고 各權利者에 대하여 第63條 第2項에 規定한 基準에 의하여 計算된 10年間의 報酬에 상당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다. 債權的 權利에 充當하기 위하여 債權者에 대하여 행하여진 延期賃金의 支拂 또는 財産의 歸屬은 어떠한 登錄稅徵收에 있어서도 그 事由가 되지 아니한다. 支拂의 期間 및 節次는 필요한 경우에 民法典 第866條의 規定에 따라 決定된다」.

(ii)「第68條 尊屬에 의한 農業活動의 拋棄는 經營에 參加하였던 卑屬의 債權的 權利를 消滅시키지 아니한다. 決定의 軍務, 疾病, 不具에 의하여 農業勞動에의 參加가 不可能한 경우를 제외하고 債權의 支拂時, 贈與에 의한 分割時 또는 經營者의 死亡時에 通常的으로 農地에서 특히 賃金勞動者, 小作農·借地農 또는 自作農에 상당하는 農地에서 勞動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든 權利者는 前數條에 의하여 부여된 權利를 喪失한다. 第16條에 規定한 子孫에 있어서도 元來 農地에서 勞動한 事實이 없는 경우에는 前記의 權利를 喪失한다. 그러나, 債權의 支拂時, 贈與에 의한 分割時 또는 經營者의 死亡時에 權利있는 者가 義務教育 또는 農業教育機關에서 勉學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iii)「第 72 條 勞動契約은 規制하는 特別規定 및 모든 勞動立法의 規定은 이 節에 規定한 경우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iv)「第 73 條 賃金延期契約에 의한 債權的 權利는 動産에 관하여서는 民法典 第 2101 條 第 4 號에 規定한 先取特權과 同一順位의 先取特權에 의하여 또한 不動産에 관하여서는 決定抵當權에 의하여 保證된다」.

第 3 節 賃貸借規定

第 11 條(先買權의 讓渡制限) ①農業法典 第 811 條 第 2 項에 다음의 規定을 添加한다.

「이 權能은 그것이 適用되는 財産의 賃貸人에 의한 有償의 讓渡時에는 讓渡할 수 없다. 賃貸借契約에 있어서 이것과 相應하는 約款은 無效로 본다」.

②農業法典 第 161 條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鑑賞用 및 家族用의 庭園의 賃貸借, 狩獵과 漁業을 위한 賃貸借는 例外로 한다. 國家·縣·市邑面과 公共機關이 所有하는 土地의 賃貸借는 그것이 1 個의 完全한 農業經營體를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에 不拘하고 農業用資産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이 編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그러나, 당해 資産이 公共事業을 위하여 利用될 때 또는 이를 法人이 追求하는 全體的 利益의 目的에 充當될 때에는 賃借人은 先買權과 賃貸借契約의 更新權으로 이에 對抗할 수 없다」.

第 12 條(賃借人이 貸付地에 加한 改良) 農業法典 第 848 條 第 3 號와 第 850 條 및 第 851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 848 條…耕作上의 改良, 土地의 耕作 또는 耕作의 變更을 위한 土地改良事業으로서 土地의 生産能力을 25 %이상 增加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당해 土地改良事業에 관한 事前의 請負契約 如何에 不拘하고 支給될 補償金額은 賃借가 終了한 후에도 그 效果를 持續할 수 있는 賃借人의 支出額과 同一한 金額으로 한다. 그러나, 賃借人이 당해 土地改良事業에서 얻은 利益은 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 고려된다. 정당한 補償金의 支拂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農業金融面에서도 賃借人의 要求가 있을 경우에는 長期特別融資를 供與할 수 있다」.
2. 「第 850 條…改良이 建物·植物 또는 施設에 행하여졌을 때 또는 第 448 條 第 3 號에 規定된 土地改良事業의 경우에는 이들이 賃貸借契約의 約款에 의하여 이루어졌던가 또는 配達證明郵便에 의하여 賃借人이 所有者에게 通告하여 同意를 얻은 경우에 限하여 당해 改良 또는 土地改良事業은 補償請求權이 發生한다. 그러나, 所有者가 同意를 拒絶하였을 경우 또는 通告후 2 月이 經過한 후에도 回答이 없을 때에는 賃借人은 農地賃貸借調整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農地賃貸借調整裁判所는 賃借人에 의하여 提出된 事業을 許可할 權限이 있으며 이 許可에 의하여 賃借人은 前記의 補償請求權을 가지게 된다」.
3. 「第 851 條의 2…賃借를 終了한 賃借人에게 前數條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權利를 除去 또는 制限하기 위한 모든 契約은 無效이다. 그러나, 不耕作地 또는 不良한 耕作狀態에 있는 土地의 耕作에 대한 補償은 이들 土地가 賃貸借契約에서 明示되어 있는 것을 條件으로 하

여 第848條 第3號의 規定을 侵害함이 없이 請負契約에 의하여 權利의 除去 또는 制限을 정할 수 있다.」.

第3章 土地整備

第13條(土地整備의 定義) ①農業法典 第1部 第1編 第1章과 同章 第1條를 各各 第1章의 2와 第1條의 2로 한다.

②第1編 第1章에 「土地整備의 定義」를 添加하고 第1條에 다음과 같이 附加한다.

「第1條…農業 및 農村의 土地整備는 土壤의 性質과 그 保全, 土地의 耕作上의 適性, 農業技術과 그 發展, 人間的 環境과 農村人口, 國家의 一般經濟 및 당해 地域 固有의 經濟事情을 고려하여 土地와 建物의 合理的인 利用에 適合하도록 農林業의 土地保有 및 經營의 適正規模를 確保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③土地整備는 특히 다음의 方法에 의하여 實施한다.

1. 土地의 交換分合, 土地所有權과 耕作權의 讓渡 및 交換方法에 의한 土地와 建物의 再分配.
2. 交換分合에 附隨한 事業, 기타 生產性을 合理的으로 改善하기 위한 모든 事業등 土地整備에 필요한 基礎工事事業의 實施.
3. 回復할 수 있는 不耕作地의 利用과 植林.
4. 土地所有權, 耕作權 등의 各種形式의 自發的인 集團化와 아울러 非收益的인 經營規模의 擴大에 대한 援助.

第14條(所有者 또는 經營者의 集團) ①土地의 所有者 또는 經營者는 自由롭게 그의 完全한 所有權이나 利用權만을 農業經營民事會社 또는 所有者, 經營者의 集團에 出資할 수 있다.

②政府는 이들 法人 또는 集團의 法制를 정하고 특히 利用權 또는 所有權의 出資에 따른 登錄稅 및 印紙稅의 輕減에 의하여 그의 設立을 奬勵하고 아울러 農業從事者 相互間의 「씨비스」 交換에 대한 法的 財政的인 根據를 부여하기 위한 法案을 1961年 7月 1日전에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農業法典 第832條 第2項을 削除하고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2條…賃借人은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또한 賃貸人의 取戾權을 農業經營民事會社 또는 所有者, 經營者의 集團에 出資할 수 있다. 同規定은 强行法規로 한다.」

第15條(土地整備會社의 設立) ①土地所有者에 의하여 自由로 賣却된 農地 또는 農業經營地 및 不耕作地를 取得하여 이들을 土地整備終了후 再讓渡하기 위하여 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同會社는 특히 農業構造를 改善하고 特定의 農業經營規模를 擴大하며 아울러 土地利用 및 農業從事者의 土地에서의 定着을 容易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는 農林部長官과 財政經濟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同會社의 事業

範圍는 당해 承認을 決定할 때에 정한다.

③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第16條(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에 관한 規定의 1) ①前條規定의 適用에 의한 不動產에 관한 權利移動은 한편에 있어서는 小作 및 公益小作의 法規에 관한 農業法典 第6部 第1編의 規定과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土地整備에 관한 農業法典 第1部 第1編의 規定을 侵害함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土地와 經營의 再讓渡에 관하여는 農業經營의 合併 및 兼併에 관한 農業法典 第1部 第7編의 提定을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②前項의 不動產에 관한 權利移動에 있어서는 印紙稅·登錄稅 및 賣上稅를 免除한다. 이 權利移動의 業務는 土地整備事業에 特定한 補助 및 融資의 形式에 의거하여 이 目的을 위하여 農林部長官에게 認定된 豫算에 의하여 國家의 財政援助를 받을 수 있다.

第17條(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에 관한 規定의 2) 取得한 財產을 再讓渡하는데 필요한 期間인 5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過渡期間에 있어서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同會社는 당해 財產을 利用 또는 生產할 수 있는 狀態로 利用하기 위한 모든 保存行爲를 행한다. 특히 同會社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賃貸에 同意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取得전의 賃貸를 제외하고 賃貸期間의 更新 및 先買權에 관하여 農業賃貸借의 法令이 規定한 諸規則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

第18條(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에 관한 規定의 3) 土地整備上級諮問委員會의 意見을 聽取한 후 정하는 參事院政令에 의하여 第15條, 第16條 및 第17條 規定의 條件, 특히 經營歸屬의 規則을 정한다.

第4章 土地의 開發利用

第19條(不耕農地 또는 放棄된 土地) 農業法典 第1部 第1編 第5章 「不耕作地 및 放棄된 土地에 관한 特別規定」을 削除하고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5章 回復가능한 不耕作農地의 開發利用」
2. 「第39條 農業經營의 合併 및 兼併에 관한 農業法典 第1部 第3編의 規定의 適用을 妨害함이 없이 모든 農業經營者·農業生產法人 또는 經營者集團은 5年 이상에 걸친 不耕作地로서 자기의 經營地의 近處에 所在하고 또한 그 面積이 參事院政令에 정한 條件에 따라 決定된 面積을 下廻하는 것은 이를 開發利用하는 權限을 당해 土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裁判所에 대하여 請求할 수 있다. 區裁判所는 필요한 鑑定을 행한 후 諸般事情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請求된 經營權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區裁判所는 合意가 成立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利用條件 및 小作料의 金額을 정할 수 있다. 이 條의 規定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모든 節次行爲 및 決定, 仲裁, 調整, 調書, 專門家의 報告抄本, 謄本, 交付된 謄本 또는 寫本과 이들의 送達에 있어서는 印紙를 貼付할 필요가 없으며 登錄은 無料로 한다.」

3. 「第 40 條…參事院政令의 規定條件에 따라 作成되는 不耕作地 臺帳에 登錄된 土地의 모든 利用權者에 대하여 知事는 당해 土地를 利用할 것을 催告할 수 있다. 한편 經營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所有者의 경우 또는 利用權者가 知事의 催告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有者가 그 土地를 利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所有者는 補償金을 支拂함이 없이 당해 利用과 그 經營에 필요한 建物을 再利用한다. 또한 所有權者의 어느 편에서나 知事의 催告에 不應할 때에는 知事는 賣渡의 目的으로 土地收用을 행하며 또한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農業賃貸借를 管轄하는 裁判所가 정한 使用料를 使用者에게 支拂할 것을 條件으로 하여 당해 土地를 第三者에게 一時的으로 引渡할 수 있다.」

4. 「第 40 條의 2…第 40 條에 정하는 手段의 適用에 不拘하고 不耕作의 狀態에 있는 土地는 土地의 再組織交換分合縣委員會의 意見 및 土地整備上級諮問委員會의 提案에 의거하여 親規 區分割調査의 對象이 될 수 있다. 이 調査는 土地의 適性과 아울러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耕作上의 利用에 適合한 合理的인 經營을 할 수 있는 地番을 創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 地番은 적어도 價格에 있어서 이것과 同等한 提供地를 가지고 있는 所有者로서 당해 地番의 經營을 確保하고 이에 관한 附隨的인 整備事業의 經費에서 國家의 補助金과 경우에 따라서는 財政資金이 부여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負擔할 것을 約束한 者에게 歸屬시킨다. 또한 適法하게 設立된 所有者集團에 있어서도 같은 條件과 約束이 필요하다. 前項의 約束을 하지 아니하는 所有者 또는 提供地의 價格이 不充分하여 再歸屬을 받는데 不足한 所有者는 당해 地番을 拋棄한 것으로 본다. 所有者에게 支拂되는 補償金은 開發利用事業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당해 土地資產의 市場價格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補助金은 再使用에 대한 補償이나 기타 如何한 超過額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個人에게 歸屬되지 아니하는 地番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 및 公共機關이 取得할 수 있다. 國家, 公共團體 및 公共機關은 第 42 條에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으로부터 農業從事者의 土地定着을 助長하는 任務를 委任받은 機關에게 이들 地番을 委任할 수 있다.」

5. 「第 41 條…國家와 公共團體 및 公共機關, 承認된 土地整備農村建設會社는 農業法典 第 175 條 내지 第 177 條의 諸規定에 정한 條件의 범위안에서 不耕作地의 開發利用事業으로 말미암아 利益을 받은 者를 당해 事業의 經費負擔에 參加시킬 수 있다.」

6. 「第 42 條…國家, 公共團體 및 公共機關이 그의 所有하고 있는 不動產 또는 土地整備事業의 實施로 인하여 取得한 不動產을 農林部長官으로부터 委任을 받아 그의 監督下에 農業從事者의 土地定着을 助長하는 第14 條 및 第 15 條에 規定한 機關에 委任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條件은 參事院政令에 의하여 決定된다.

第 43 條…第 40 條에 規定한 不耕作地의 認定, 不耕作地臺帳 또는 讓渡의 適法性 如否에 관한 異議申請은 行政裁判所에 대하여 행한다. 讓渡의 入札案內書의 執行에 관한 異議申請은 당해 土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裁判所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第 39 條 第 3 項의 適用을 받는다.」

7. 「第 44 條…이 章의 規定의 適用을 監督하는 任務를 맡은 公務員은 讓渡된 地番의 利益享受者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書面에 의한 모든 說明을 요구할 수 있으며 經管者는 이에 答辯할 義務가 있다.」

8. 「第 45 條…本章의 適用에 관한 條件과 節次 특히 不耕作地의 定義는 土地整備上級諮問委員會의 意見을 聽取할 후 參事院政令에 의하여 정한다.」

第 20 條(農村特別對策地區) 經濟的 發展의 充分한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農村地域에 대하여는 農林部長官, 財政經濟部長官, 內務部長官, 建設部長官, 公共事業運輸部長官, 通商產業部長官 및 勞動部長官의 報告에 立脚한 政令에 따라 다음의 第 21 條 및 第 22 條의 適用을 받는 農村特別對策地區로 정한다.

第 21 條(農村特別對策地區에 대한 援助) ①土地整備의 低位, 農村人口의 過剩 또는 不足한 農村人口의 流出을 特徵으로 하는 農村特別對策地區는 그의 困難한 事情을 匡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公共投資에 있어 優先權을 享受하며 또한 小規模의 工業施設 導入을 助長하는 對策의 恩典을 받는다. 工業施設의 導入은 1950 年 4 月 15 日의 命令 第 60-370 號에 정한 利益의 許與에 의하여 奬勵한다. 그러나 國家의 援助는 당해 企業의 規模를 고려하여 政令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20 人의 雇傭創出을 投資計劃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여한다. 또한 農村特別對策地區가 農業用品의 供給地 또는 消費 및 販賣의 中心地에서 遠距離에 있으므로 인하여 不利한 狀態에 있을 때에는 당해 地區의 生產에 競爭力을 부여하기 위하여 運賃率의 公平化 措置가 取하여져야 한다.

第 22 條(人口過剩地域에 있는 農村特別對策地區) 農村特別對策地區가 農村人口와 農村青年등의 明白한 過剩現象을 示顯하고 있는 地域 또는 農村人口의 大量流出이 認定되는 地域에 있는 경우에는 教育 및 職業訓練「센타」에 대한 公共投資와 아울러 당해 地區의 人口가 새로운 職業으로 轉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社會的 昇進에 관한 公共投資의 配分에 있어 당해 地區는 優先權을 가진다.

第 5 章 生產과 市場의 組織化

第 23 條(契約制度) 政府는 1961 年 7 月 1 日 이전에 農產物의 生產者·加工業者 및 購買者를 結合하는 契約制度의 諸原則을 規定하는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4 條(全國穀物關係局의 改革) 政府는 1961 年 7 月 1 日 이전에 全國 穀物關係局의 改革을 내용으로 하는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5 條(農產物市場調整基金) ①1960 年 7 月 21 日의 法律 第 60-706 條의 補正豫算法에 의하여 特別會計의 形式으로 措置된 農產物市場調整基金은 主要農產物市場의 滿足할만 한 組織化를 企圖할 것을 目標로 한다.

②前項의 基金은 在庫貯藏의 例外的인 危險만을 保證하나 政府는 國民에 대한 安定된 食糧供

給 및 圓滑한 市場組織의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한 在庫貯藏의 物質的 財政的 手段을 規定하여야 한다.

第 26 條(管理委員會) ①農產物市場調整管理委員會는 市場의 組織化와 農業生產의 方向設定 등 一般的인 任務에 있어서 農林部長官을 補佐할 任務가 있다.

②同委員會는 企圖하는 모든 活動에 관하여 職能代表와 密接한 提携를 保持하여야 한다.

③同委員會는 外國貿易에 관한 모든 問題와 農產物의 價廳 및 市場의 規制에 관한 모든 問題에 대하여 반드시 協議를 받는다.

第 27 條(纖維生產의 奬勵) 纖維品稅를 徵收하여 國內의 纖維生產의 奬勵에 充當하는 것에 관하여 1943 年 9 月 15 日에 發效한 法律의 適用은 財政經濟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產業部長官의 合議에 의하여 命令으로 정하는 프로그램의 범위안에서 計劃의 各適用期間마다 實施한다.

第 28 條(輸出) ①農林部長官은 每年 輸出目標를 정하여야 한다. 이 目標의 實現은 工業·商業·農業의 諸企業에 의하여 正常的으로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農林部長官은 同目標의 實現을 위하여 1959 年 2 月 4 日의 命令 第 59-348 號에 정하는 協定會社의 設立, 混合經濟會社의 設立 또는 輸出業者, 生產者, 生產者團體, 金融機關 또는 公共團體를 포함하는 기타 모든 集團의 設立을 奬勵할 수 있다.

②이 條의 規定의 適用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定會社 또는 混合經濟會社는 規格統一이 되어 있거나 또는 할 수 있는 領域안에서 規格이 統一된 本國農產物의 輸出을 會社의 唯一한 目的으로 한다.

③規格證明書 및 輸出렛델의 交付條件과 그 對象農產物의 범위는 1961 年 1 月 1 日 이전에 政令으로 制定되어야 한다.

④農業렛델은 農產物에 適用되는 共通標識이며 이 標識를 가지고 있는 農產物은 優秀한 品質과 特性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⑤이들 農產物에 適用되는 農業렛델이라는 表現 또는 렛델이라는 用語는 이 法律의 適用으로 정하는 政令에 의한 認可條件을 充足하는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⑥農產物 또는 農產物을 原料로 하는 生產物에 適用되는 農業렛델 또는 렛델이라는 用語의 不正使用은 1950 年 8 月 1 日의 法律 第 1 條에 規定한 形罰에 處한다.

第 29 條(農產物의 規格統一) ①적어도 3 年間 規格을 公定하고 있는 모든 農產物은 大消費中心地에 供給하고 있는 國家的으로 利益이 되는 市場의 모든 商去來에 있어서 1966 年 1 月 1 日 이전에 規格統一이 義務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國家的인 利益이 되는 市場에 관한 1953 年 9 月 30 日의 命令 第 53-959 號 및 1958 年 6 月 27 日의 命令 第 58-550 號는 이 規定의 適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962 年 1 月 1 日 이전에 修正補塡된다.

第 30 條(輸入) ①農產物과 食糧의 輸入은 農林部長官의 同意 및 당해 農產物이 農產物市場調

整基金에 關聯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을 통하여 同基金管理委員會와의 協議후가 아니면 決定 또는 實行할 수 없다.

②市場이 組織化되어 있는 農產物에 있어서 佛蘭西產 당해 農產物이 最高價格에 未達한 경우에는 輸入農產物은 最低支持價格을 下廻하는 價格으로 流通할 수 없다.

③輸入農產物의 流通時에 徵收될 補償稅는 1961年1月1日 이후 農產物市場調整基金의 收入이 된다.

④國產品에 賦課되는 品質義務를 遵守하지 아니하는 食糧과 原料의 國境안에서의 販賣는 詐欺로 보며 이를 금지한다.

⑤內閣에 의하여 正式으로 認定된 例外的인 경우를 제외하고 國會가 批准한 國際的 協約을 實行하는 외에는 農產物 및 食糧의 關稅停止 또는 引下를 행하는 權限은 議會만이 가진다.

⑥同法律이 公布된 후 政府는 關稅協力會議의 범위안에서 輸入品의 產地證明書類의 監督을 强化하기 위한 交涉을 開始한다.

⑦1960年12月31日 이전에 關稅法典 第34條 第4項에 의거한 省令에 의하여 產地證明의 作成에 필요한 條件을 새로 規定하여야 한다.

第31條(農產物價格의 決定) ①政府는 1961年10月15日 이전에 政令으로 目標價格對象農產物에 대하여 4年間에 걸친 새로운 目標價格을 共同農業政策의 實施에 의하여 農業生產에 適用될 價格에 段階的으로 漸次 接近되도록 決定하여야 된다.

②1961年7月1日에 共同農業政策의 實施가 充分하지 못할 때에는 政府는 將來의 目標價格이 政令으로 制定될 경우에 의거할 條件을 規定하는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從前의 모든 反對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條에 規定하는 農業經營의 收益性을 保障하는 政策이 實施될 때까지는 1960年7月1日 이후에 있어 政府가 決定하는 農產物價格은 農業에 있어서의 費用과 勞動 및 資本에 대한 報酬를 全面的으로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價格은 對象農產物全體를 고려하여 農業經營者에게 最小限 1958年에 保有하고 있었던 것과 同一한 購買力을 確保할 수 있도록 決定하여야 한다.

第32條(耕作契約) ①農林部長官은 農業生產, 工業, 商業등의 關係業體의 同意를 얻어 各農產物에 따른 契約樣式을 정한다. 關係業者는 契約에 의하여 販賣者 및 購買者로서의 관계를 맺고자 할 때마다 이 契約樣式에 準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契約目的은 한편에 있어서 生產者, 즉 販賣者에게 그 商品의 買收와 年度實行價格의 支拂을 保證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購買者에게 당해 企業에 필요한 原材料의 調達을 保證하는데 있다.

③企業의 利益에 대한 生產者의 參加를 정하는 約款과 供給物資의 品質 및 規格을 정하는 約款을 契約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調印者의 自由스러운 討議에 의한다.

第 33 條(食肉市場의 改善) ① 1951 年 4 月 16 日의 法律 第 51-426 號의 修正된 第 7 條에 의하여 設定된 屠殺稅 및 屠殺附加稅는 이를 廢止한다. 市·邑·面 또는 市·邑·面의 聯合體는 供與될 써비스에 대한 使用料의 性格을 가지는 屠殺場 使用料를 公營屠殺場의 施設償却費와 經營費에 補塡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 設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使用料賦課의 節次·料率 및 徵收方法은 政令에 의하여 規定한다. 屠殺稅 및 屠殺附加稅는 이 政令의 公布日까지 徵收를 계속한다.

第 34 條(公營屠殺場의 利用條件) 國家의 財政的 援助에 의하여 建設된 屠殺場을 所有하는 公共團體는 農林部長官과 內務部長官의 命令에 의하여 정하여진 條件의 범위안에서 당해 施設을 家畜飼育者의 團體에게 委任하여야 한다.

第 35 條(屠殺場施設計劃) ①農業法典 第 257 條 第 1 項과 第 2 項의 사이에 다음의 4 項을새로 挿入한다.

②「工業的 性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發送을 행하는 私營屠殺場을 당해 屠殺場이 農林部長官 및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屠殺場施設計劃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限하여 例外的으로 開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建設중 또는 改築중에 있는 것은 例外로 한다.

③輸出承認을 받은 公營屠殺場에 市·邑·面은 家畜 및 食肉, 屑肉 및 屠殺屑를 原料로 하는 製品의 衛生과 品質의 檢査를 맡을 獸醫와 擔當官을 任命한다. 이의 任命은 檢査, 食品衛生·品質稱號 및 品質標識에 관하여 모든 規定을 정하고 있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요한다.

④前數項의 條件은 參事院政令으로 制定한다.

⑤工業的 性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發送을 행하는 私營屠殺場의 設立, 管理, 運營 및 事業의 條件은 參事院政令에 의하여 정한다.

第 36 條 冷藏施設에 관한 1944 年 6 月 22 日의 法律 第 376 號는 이를 廢止한다.

第 37 條(品質表示렛델의 創設) ① 1961 年 7 月 1 日이후 모든 公營屠殺場과 承認된 工業的 屠殺場은 屠殺家畜所有者의 請求가 있을 경우에 당해 家畜이 施行令에 의하여 規定한 規格은 適合할 때에는 特等 또는 一等의 品質을 標識하기 위한 렛델刻印의 準備를 하여야 한다. 刻印에는 屠殺된 家畜의 品種名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食肉獸疫檢査官 또는 그 立會를 한 擔當官은 이 刻印을 할 權限을 가진다.

③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縣獸疫官 또는 指名을 받은 그의 代理人이 再檢査를 행한다.

④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承認을 받지 아니하는 屠殺場에서 屠殺된 家畜에 대하여는 刻印을 하여서는 안된다.

第 6 章 農業協同組合 및 農業協同會社

第 38 條 ①政府는 1961 年 7 月 1 日 이전에 農業協同組合最高會議의 意見을 聽取한 후 農業協同組合制度 및 農業協同會社制度를 現代農業의 經濟的 社會的 要請에 適應하게 한 것을 目的

으로 하고 農業協同組合에 관한 1959年2月4日의 命令 第59-278號를 改正하여 이것을 農業協同會社에 관한 規定으로 補完하기 위한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前項에 規定한 期日전에 政府는 農業協同組合最高會議의 意見을 聽取한 후 前項에 規定한 것과 同一한 適用을 實現할 것을 目的으로하여 1959年2月4日의 命令 第59-286號를 改正하여야 한다.

第39條 農業法典 第60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農業協同會社는 民法典 第1832條 이하에 規定한 民事特定會社에 의하거나 1867年7月24日의 法律이 有限會社에 관하여 規定한 形態에 의하여서도 設立할 수 있다.」

第7章 雜 則

第40條 任意의 設立이 없으며 또한 農業代表機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國家는 農林生産物의 加工 및 流通을 目的으로 하는 混合經濟會社, 특히 關係生産者團體가 參加하는 混合經濟會計의 設立을 奬勵할 수 있다.

第41條(農業災害補償制度) 政府는 1962年1月1日 이전에 農業災害補償制度의 組織을 정하는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2條 이 法律의 諸規定은 그의 適用에 있어 海外諸縣會의 意見을 聽取한 후 法令에 의하여 海外諸縣에 擴大適用된다. 이 法律의 諸規定은 政令에 의하여 알제리아, 오아지스, 사우라의 諸國에도 擴大適用 된다.

2. 1980年 農業基本法 新法

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새로운 法律

1980年 7月 4日
法律 第80-502號

第1章 農業政策의 方向

第1條(農業政策의 目的) 이 法律規定의 適用에 의해 實施되는 農業政策은, EC 共通農業政策의 諸原則과의 一致下에 다음 것을 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1. 나라의 經濟的 및 人口動態上의 均衡을 維持하는데 必要不可缺한 部門으로서 農業의 發展을 助長하는 것.
2. 農業의 方向設定에 關한 1960年 8月 5日의 法律 第60-808號가 내건 均衡의 確保라고 하는 目的에 따라, 프랑스農業의 基盤을 構成하는 個人責任에 바탕을 둔 家族經營에 對해서, 附加價値의 增大에 不可缺한 技術的·經濟的 能力의 水準을 保證하는 것에 의해서, 農業者의 所得 및 生活條件을 改善하는 것.
3. 農業의 競爭力을 높여, 그 輸出能力의 增强에 의해 나라의 經濟發展에 一層의 寄與를 할 것.
4. 農村人口를 安定시키고, 同時에 雇傭의 均衡과 調和를 이룬 國土整備의 實現에 도움을 주기위해, 靑年農業者의 就農을 促進할 것.
5. 食糧援助의 增大를 꾀하여, 世界의 飢餓解消을 위한 努力에 參加할 것.

第2條(主要한 農業政策) 前條에서 規定하는 基本的 方向에 따라서, 다음의 諸政策을 推進한다.

1. 다음의 事項을 重點目標로서 推進되는 敎育, 職業訓練, 試驗硏究 및 開發에 관한 政策
   가. 農業, 食品農産加工産業 및 農業에너지産業에 있어서 生産性 및 競爭力의 增强.
   나. 中間生産資材나 輸入原材料에 관계되는 費用節減에 의한 國內農業의 自立度 增大.
   다. 技術的·經濟的 및 構造的 發展에 관한 展望 및 分析에 새로운 與件에 대한 適應條件의 明確化.
2. 다음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農業食糧經濟에 關한 政策
   가. 消費者나 食品農産加工産業으로부터의 需要에 生産을 質的 또는 量的으로 適應시키기 위한 生産方向 設定.
   나. 農業者의 協同事業 및 協同組合形態 또는 私企業形態에 의한 加工産業의 發展을 助長하는 것等을 통하는 生産者의 經濟的 組織化의 强化.
   다. 原産地表示制度의 惠澤을 받는 特定地區에서 生産되는 高品質農産物의 國內·國外市

場의 開拓

라. 積極的인 輸出政策

마. 土地生産物에 관한 加工過程을 통한 附加價値生産의 改善

바. 農産部門에 있어서 에너지나 原材料의 節約, 農業을 起源으로 하는 에너지의 生産 및 農業經營의 副産物의 回收·有效利用에 관한 政策

사. 生産·加工 및 流通의 諸分野에 이르는 競爭政策

3. 農業者와 다른 社會階層과의 사이의 均衡을 確保하기 위한 社會保障政策

4. 土地의 經營條件을 改善함에 있어 유용하며, 同時에 다음 事項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政策

가. 地價의 動向을 制御하고, 相續에 따르는 諸負擔을 輕減하고, 더욱 많은 個人責任에 바탕을 둔 自立的 家族經營을 維持하는 것

나. 農業活動에 優先權을 주며, 地域社會 全體의 必要性에 응해서 土地利用의 方向을 設定하는 것

다. 農地의 農學的 生産能力을 增大시키는 것

이 土地政策은, 土地問題의 地域的 諸與件에 適合하여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그 實施에 있어서는, 地方의 自主性, 특히 區劃整理와 Zoning의 절차와 연결시키도록 하는 地方의 自主性을 考慮에 넣기 위해, 分權化를 도모하도록 한다.

5. 山岳地帶나 生産條件의 不利 또는 劣惡한 地帶에 있어서, 自立可能한 農業을 維持 또는 發展시키고, 동시에 當該地帶의 農業에 대해 要請되고 있는 努力을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 必要한 경우에는, 法令上의 諸規定은 이들 地域의 特殊한 事情에 適合하도록 책정되도록 한다. 이 政策은, 良質農産物의 生産의 奬勵, 不利한 自然條件의 補償 및 특히 兼業(多就業)의 형태로 나타나는 農業과 非農業活動과의 補完關係의 追求等을 目的으로서 행하여진다. 이들 地域의 潛在的 生産能力의 活用은 施設整備, 試驗硏究 및 開發의 諸分野에 있어서 각별의 努力에 의해 達成되도록 한다.

6. 다음 事項을 目的으로서 행해지는 農村整備 및 地域振興에 관한 政策.

가. 綜合的이며 調和가 이루어진 農村地帶의 整備計劃의 實施에 의해 農村의 經濟發展을 促進하는 것

나. 農村地帶에 있어서 雇傭을 發展시키며, 동시에 人口을 維持하는 것

다. 先祖傳來의 國土資産의 保全, 自然的 均衡의 維持 및 動植物의 種의 保存에의 農業者의 參加를 奬勵하는 것

第 3 條(유럽經濟共同體와의 關聯) 政府는, 유럽經濟共同體(EEC)와의 關聯에 있어서, 農業政策 및 地域政策에 關한 諸決定에 즈음해서, 특히 農産物價格의 決定과 多國間 通商關係 및 새로운 나라의 加盟 또는 聯合의 條件에 관한 交涉에 있어서, 이 法律의 諸目的이 考慮

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第2章 經 濟 條 項

第4條(農業食糧經濟上級會議) ①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관한 上級會議는, 公權力, 農業生産者, 農業賃勞動者, 加工業者, 流通業者 및 消費者의 각각을 代表하는 者로 構成되며, 生産의 方向設定에 關한 나라의 政策의 決定에 參加한다. 이 會議는, 그 所掌에 속하는 다음 事項에 關한 諮問에 대해서, 意見의 表明 또는 勸告를 행한다.

1. 職業訓練, 試驗研究, 開發, 投資, 輸出에 관한 農業政策의 基本的 方向設定
2. 이 政策의 實施를 위한 必要한 諸手段
3. 農業에 있어서 經濟的 組織에 關한 規制措置의 立案
4. 當該分野에 經濟的 組織 또는 職能間 組織이 存在하지 않을 때, 혹은 現存하는 組織이 出荷 및 流通에 關한 規則을 정할 수 없을 경우, 擔當行政當局이 定하는 出荷 및 流通에 관한 規則. 同 會議는, 決定된 方向設定의 內容과 그 適用을 擔當하는 公的機關에 의한 實施間에 適合性이 維持되도록 注意을 기우린다. 同 會議가 행하는 勸告는 特定多數에 의해서 採擇된다. 同 會議의 意見과 勸告는 公表된다.

②農業의 方向設定에 關한 法律을 補完하는 1962年8月8日의 法律 第62-933號 第14條의 最終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當該承認은,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關한 上級會議의 意見을 듣고, 農業省令에 의해서, 부여되며, 停止되고, 取消될 수 있다.

第5條(方向設定에 關한 地域計劃) 生産方向設定에 關한 地域計劃은,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關한 上級會議와 當該地域의 關係公的 機關의 意見을 듣고 作成된다. 이 計劃은, 특히, 不利한 自然條件 또는 生産性의 낮음이 農業所得 및 農業發展에 影響을 미치게 하고있는 地域에 있어서, 生産의 方向設定에 관한 政策을, 必要에 응해서, 地域의 特殊事情에 適應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6條(生産의 方向設定을 위한 國家의 造成) 生産의 方向設定으로 얻어지는 國家의 助成의 受益者는,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關한 上級會議의 意見을 듣고 擔當行政當局이 定하는 標準型契約에 따라서 締結되는 生産, 集荷 또는 出荷의 集團契約으로 參加하고 있는 農業者에 漸次 限定되는 것으로 한다. 生産方向設定을 위한 나라의 助成은, 一定의 上限範圍內에서 受益者에 주어진다. 이 助成은 地域에 의한 差를 베풀어 줄 수 있다.

第7條(農業經濟委員會의 規定 改正) 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 第62-933號 第16條의 冒頭部分(最初의 5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그 행해지는 規制에 관하여 滿足해야 하는 成果를 올린 農業經濟委員會는, 그 構成員에 의해 採擇된 規則가운데, 生産의 組織化, 販賣促進 및 出荷(賣渡證書에 關한 것을 제외한다)에 關한 것을, 當該地域의 모든 生産者에 義務을 부여 하는 것을 擔當行政局에 請求할 수 있다. 이들 規則의 全部 또는 一

部의 適用範圍의 擴張은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關한 上級會議의 意見을 들은 後, 이것을 決定을 시달할 수 있다. 단지, 當該地域의 出荷生產量의 1/3以上을 代表하는 1/3 以上의 生產者가, 國務院政令에 定해지는 條件에 따라서 行하여지는 事前의 意見表明時에, 反對意見을 表明한 경우에는, 그 擴張을 행할 수 없다. 擔當行政當局은, 前項에 記述한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관한 上級會議의 意見表明日부터 3個月 以內에, 適用範圍의 擴張請求에 대해서 決定을 행한다. 이 期間 滿了時에, 決定이 선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當該請求는 받아 들여진 것으로 看做한다.

第8條(統合契約制度에 관한 改正) ①農業에 있어서 契約制度의 原則 및 實施方法을 定한 1964年7月6日의 法律 第64-678號 第5章 第17條中, 〔一〕 다음에 다음과 같이 〔1의 2〕을 첨가한다. 「〔1의 2〕 家畜飼養部門에 있어서는, 生產者가 1 또는 複數企業과의 사이에, 家畜飼養, 肥育 또는 動物性食糧의 生產 및 飼養方法과 生產守段의 買入 또는 最終生產物의 出荷에 관한 規則을 준수한다는 뜻을 約束하는 契約은 統合契約이라고 간주된다.

②前揭의 1964年7月6日의 法律 第64-678號 第18條第1項中, 「關係職能組織의 意見을 듣고 農業長官이 制定하는 標準型契約」을 「第18條의 2에 規定하는 標準型契約」 이라고 改正한다.

③前揭의 1964年7月6日의 法律 第64-678號 第5章中, 第18條 다음에 18條의 2로서 다음의 1條을 추가한다. 「第18條의 2 生產部門마다, 1 또는 複數의 標準型契約에 의해, 當事者間의 相互義務, 특히 農業經營者에 주어지는 最低保證에 관한 事項을 정한다. 標準型契約에서는 특히 다음 事項을 定한다.

1. 契約當事者間의 價格 決定方法
2. 催告을 행함없이 生產者에 對한 法定利子의 支拂義務가 發生하는 時期
3. 契約의 存續期間, 契約에 의거한 生產量 및 回數 또는 契約條項에 違反한 경우에 있어서 當事者가 支拂해야 하는 違約金.

이 法律規定에 反하는 契約條項, 특히 第17條에 規定하는 契約에 포함되는 罰則 또는 契約解除에 關한 條項은 無效로 한다. 그 경우에는, 認可된 標準型契約中에 該當하는 條項이 法律上 當然히 이들의 無效로 된 條項으로 바뀌어진다.

標準型契約은,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관한 上級會議의 意見을 듣고, 農業省令에 의해서 認可된다. 擔當行政當局은, 認可請求에 대해서, 同 會議의 意見表明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決定을 한다. 同 會議가 肯定的인 意見을 表明한 後, 擔當行政當局이 그 期間內에 決定을 선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當該請求는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標準型契約은, 그 認可後 1年을 經過해서, 當該部門의 모든 農業, 工業 및 商業關係의 企業에 適用된다.

農業協同組合과 그 組合員과의 關係는 이 章의 規定適用을 받지 않는다. 단지 農業協同組合

合이 그 組合員이 아닌 農業者와 統合契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當該組合은 이 章에 規定하는 모든 義務을 진다.

投資에 關聯하는 公的助成을 받을 수 있는 企業은, 契約에 關한 그 營業政策이 이 條의 規定에 合致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것에 限한다.

④民法典 第2101條中 「認加된 長期의 職能間決定」의 다음에 「및 認可된 標準型契約 適用에 의해서 農業經營者에 對해 모든 契約當事者가 지고있는 負債金額」을 첨가한다.

第9條(農產食料品販賣促進基金) 外國市場에 關한 知識改善 및 外國市場의 需要에 對한 供給의 適應等에 의해, 農產物과 食料品의 輸出을 促進하는 目的으로,農產食料品販賣促進基金을 設立한다.

이 基金의 資料는 특히 關係業界로부터의 據出金에 의해서 조달되어 진다. 이 據出金의 徵收方法 및 用途는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必要한 경우에는 國務院政令에 의해서 當該據出金의 支拂을 義務化할 수 있다.

據出金의 支拂義務가 부여된 경우, 支拂期日이 왔을 때부터 3個月이 經過하여도 支拂치 않을 때에는 同基金 管理를 擔當하는 機關은 當該支拂義務者에 대해서 支拂催告을 한 후, 農業法典 第1143-2條에 規定하는 支拂停止의 節次을 취할 수 있다.

第10條(職能間組織) ①農業關係職能間 組織에 관한 1975年7月10日의 法律 第75-600號 第1條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農業生產 및 경우에 따라 加工, 流通의 諸段階의 가장 代表的인 諸職能組織에 의해서 構成되는 集團은 擔當行政當局에 의해서 職能間組織으로서의 認定을 받을 수 있다. 이 認定은 農業食糧經濟의 方向設定에 관한 上級會議의 意見을 듣고, 全國段階인 것과 生產地帶의 段階임을 不問하고, 產品 또는 產品群별로 행하여진다.

產品 또는 產品群마다, 唯一의 職能間 組織만이 認定될 수 있다. 全國段階의 職能間組織이 認定되 었을 때는, 地域的 職能間組織은, 當該 全國的職能間 組織의 下部 委員會을 構成하며, 全國組織에 의해 代表된다.

全國段階 또는 地域段階의 職能間 組織의 認定條件은, 政令으로 定한다. 認定을 받을 수 있는 職能間 組織은 그 定款에 있어서 職能間 決定(約束)의 適用에 즈음해서 생길 수 있는 係爭에 있어서의 調停機關 및 調停方法이 定해져 있고, 同時에 調停이 어려울 경우에는 當該係爭이 仲裁에도 移行되는 취지의 規定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 當該定款에는 그 外에 仲裁을 하는 機關이 指定되며, 同時에 仲裁條件이 定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裁定의 執行 및 이 裁定에 대한 上訴는, 司法 裁判所의 權能에 맡겨진다.」

第11條 前揭의 1975年7月10日의 法律 第75-600號 第2條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認定을 받은 職能間 組織의 範圍內에서 締結된 決定은, 一般的 利益에 따르며, 同時에 EEC 規則과 兩立하는 條件下에, 標準型契約, 年次協約 및 共同行爲에 의해서, 다음

事項의 達成에 有益할 경우에는 擔當行政當局에 의해 그 期間을 定해서,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適用範圍의 擴張을 행할 수 있다.

1. 需給事情에 있어서의 情報改善
2. 供給調整 및 安定化
3. 出荷, 價格 및 支拂條件에 關한 規則이 나라의 監督下에서 實施
4. 生產物의 品質向上
5. 技術的 基準의 制定, 應用的 試驗硏究 및 開發에 關한 計劃策定等에 의한 關聯分野에 있어서 職能間의 關係改善
6. 國內·國外의 市場에 있어서 生產物의 販賣促進

이와같은 決定의 適用範圍의 擴張은 職能間 組織에 參加하고 있는 諸職能組織이 全會 一致의 決定에 의해 또는 이 法律 第1條에 規定하는 節次에 따라서, 當該決定의 規定을 採擇한 경우에 限해서 행할 수 있다. 適用範圍의 擴張이 決定된 경우, 決定에 定해진 措置는 當該生產地帶에 있어서 이 職能間 組織을 構成하는 職能에 屬하는 모든 構成員에 대해서 强制力을 갖는다. 擔當行政當局은 職能間 組織에서 適用範圍의 擴張에 대한 請求가 있을 때는, 請求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當該擴張에 대한 決定을 行한다. 이 期間內에 決定이 시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請求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適用範圍의 擴張 請求을 拒否하는 決定을 할 경우는 그 理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公正競爭의 順守에 관한 1967年 9月 28日의 올드난스 第67-835號 第3條의 規定은 認定을 받은 農業關係職能間 組織의 範圍內에서 締結되며, 同時에 그 適用範圍의 擴張된 決定에 있어서 適用된다.

第12條 前揭의 1975年7月10日의 法律 第75-600號 第3條中 第1項의 다음에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그위에, 輸入產品에 대해서, 政令으로 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負擔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負擔金은 이것에 의해 利益을 받는 職能間 組織의 請求를 근거로 하여, 當該組織의 費用負擔은 稅關에서 徵收한다.」

第13條 ①前揭의 1975年7月10日의 法律 第75-600號 第4條中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職能間 決定의 適用範圍 擴張에 의해 實施되는 規則에 대한 違反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職能間 組織의 請求를 근거로 當該組織의 利益을 위해, 小審裁判所는 補償金을 부과하도록 한다. 그 補償金額은 500프랑과 實際의 損害總額과의 사이에서 정한다.」

②前揭의 1975年7月10日의 法律 第75-600號中 第4條 다음에 第4條의 2로서 다음의 1條을 추가한다.

「第4條의 2 第3條에 정한 負擔金 또는 第4條 適用에 의해 부과되는 補償金이 그 支拂期日이 달한 후 3個月을 經過하여도 支拂되지 않았을 때는, 當該職能間 組織은 그 支拂義

務者에 對해 支拂催告을 한후, 農事法典 第1143-2條에 規定하는 支拂停止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第14條 ①特定地域에서 生産되는 高品質의 産品生産, 加工 및 流通을 代表하는 職能間 組織의 性格을 가진 團體에 있어서 이 法律의 施行前에 法令의 規定 또는 司法上의 決定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權利를 계속해서 保持하며, 그 同意없이 보다 넓은 範圍의 職能間 組織에 加入시키는 일은 없다.

②前項에 規定하는 團體가 加入하고 있지 않은 보다 廣範圍한 職能間 組織의 範圍內에서 締結된 決定은 當該團體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③前揭의 1960年8月5日의 法律 第60-808號中 第28條의2 다음에 第28條의3으로서 다음의 1條을 추가한다.

「第28條의3 農業라벨(label)은 原産地表示制度의 恩典을 받은 産品, 特定上質포도酒(Vins délimités de qualité supérieure) 및 地方特産포도酒(Vins de pays)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④化學合成物質을 使用하지 않는 農業生産條件을 定하는 基準書는 農業省令으로 定할 수 있다.

第3章 社 會 條 項

第15條(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의 改正) 農事法典 第7編 第2章에 第1003條7의1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1003條7의1 ①이 章의 特例規定을 근거로 特別條件의 適用을 방해함이 없이,第1060條(2,4,5)에 規定하는 農業經營主 또는 農企業主이며 그 經營 또는 企業規模가 第188條의4 適用에 의해서 県 또는 県內의 地帶마다 定하여진 最低就農面積(必要한 경우,特殊作目의 生産에 適用되는 換算係數를 考慮하는 것으로 한다)의 2분의1 以上인 者는 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屬한다.

經營 또는 企業規模을 前項의 基準에 의해서 評價할 수 없을 때는 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屬하기 위해서 經營主 또는 企業主가 滿足해야 하는 就業上의 要件은 그 經營 또는 企業을 포함하는 것에 必要한 勞動時間을 考慮해서 政令으로 定한다.

②上記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①項에서 規定하는 最低規模의 條件을 만족시키지 않는 農業經營 또는 農企業을 經營하는 者는 就業의 性格 및 期間에 관해서 國務院政令으로 定한 條件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者의 請求를 근거로 農業社會共濟基金理事會의 決定에 의해 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加入한다. 當該國務院政令은 이 ②項의 規定 適用에 관한 그외의 事項도 定하는 것으로 한다.

前項의 規定을 기초로 한 決定의 報告는 每年 県農業社會保障給付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1980年 7月 4日의 法律 第80-502號의 發效日에 이미 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屬해 있는 者는 上記 ①項에 規定하는 最低規模의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는 農業經營 또는 農企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農業活動을 그後의 政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초과해서 縮小시키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서 當該制度에 계속하여 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制度에 계속해서 속하는 듯의 決定은 農業社會共濟基金理事會가 행한다. 前項의 規定을 근거한 決定報告는 每年 県農業社會保障給付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第1060條(2, 4, 5)에 規定하는 農業經營主 또는 農企業主가 支拂해야 하는 家族手當,老齡者保障 및 疾病保險의 負擔金額은 政令으로 定하는 最低額보다 높아야 한다.

⑤老齡農業者引退年金의 受給資格者 또는 이 法典 第1122條의 1을 근거로 給付되는 定額引退年金의 受給資格者에 있어서 社會保障法典 第9編에 規定하는 追加手當을 受給하고 있는 者는 모든 就業活動을 그만 두었을 때, 또는 이 法典 第188條의 4에 規定하는 換算係數를 考慮해서 3 ha未滿의 經營을 하고 있을 때는 農業經營者 疾病保險(AMEXA)의 負擔金을 全額 免除의 特典을 받는다.

⑥自營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農業經營主 또는 農企業主에 있어서, 그 規模가 上記의 ①項에 規定하는 基準을 下回하고, 同時에 따로 政令으로 定하는 最低限度를 上回하고 있는 者는 連帶負擔金을 부과할 수 있다. 이 負擔金의 計算基礎는 經營 또는 企業의 規模에 응해서 政令으로 定한다.」

第16條 ①法律上의 여하한 反對規定에도 불구하고, 農業法典 第1編第1章 第5節에 規定하는 再利用 可能한 不耕作地는 同法典 第1003條 7의 1의 規定에 의해 農業者 社會保障制度에 屬하는 者가 支拂해야 하는 社會保障負擔金의 算定基準 決定을 考慮에 넣는다. 그 負擔金은 經營者 또는 經營者가 없는 경우에는 土地所有者가 支拂할 義務를 진다. 그 負擔金은 當該土地가 位置하는 地區의 第1카테고리 土地에 관계하는 土地台帳上의 評價收入을 基礎로 算定한다. 단지, 土地所有者가 負擔金支拂義務을 지는 것은 農事法典 第40條 ①項의 適用에 의해서 知事가 同條의 規定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經營의 承認 請求을 當該土地所有者에 通知한 日 以後로 한다.

②이 條의 適用方法은 政令으로 定한다.

第17條 ①農業法典 第1106條의 1 ①項 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1060條(2, 4, 5)에 規定하는 農業經營主 또는 農企業主로, 그 經營 또는 企業이 프랑스 本國內에 있고, 동시에 그 規模가 第1003條 7의 1 ②項 ③項에 規定하는 경우를 留保해서, 同條 ①項에 定하는 規模를 下回하지 않는 자.」

②農事法典 第1106條의 7 ①項 1號의 規定을 廢止한다.

③農事法典 第1106條의 7 ②項 1號중,「農業者家族手當의 全額受給의 權利를 授與하는 標準型經營의 1/2을 下回하는 面積」을「第1003條의 7의 1 ①項 定하는 面積을 下回하는

面積」으로 고친다.

④農事法典 第1110條 第5項中, 最後의 一文을 削除한다.

第18條(農業經營者의 引退年金) ①農業經營者의 引退年金은 負擔金支拂期間 및 水準을 同程度로한 경우는 一般社會保障制度 또는 職人 혹은 商工業從事者을 위한 基本制度에 의해 주어지는 것과 同水準의 給付을 保證하도록 漸次 引上하며 調整된다.

前項의 年金引上은 當該制度의 加入者에 要求되는 負擔金支拂 努力에 應해서 實現되는 것으로 한다. 農業者社會保障制度에 있어서 家族과 老齡者를 위한 社會給付의 分野에 있어서도 非農業者를 위한 制度와의 均衡原則이 同樣으로 適用된다.

②農業法典 第1121條 및 第1142條의 5中 最初의 10項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專業 또는 主業으로서 自營農業活動한 적이 있는 農業經營主 또는 農企業主는 다음 各號에 언급하는 引退年金을 受給하는 權利를 갖는다.

1. 定額引退金 그 最高額은 25年以上 就業한 者에 주어지며, 이 法典 第1116條에 規定하는 老齡手當額과 같은 것으로 한다. 就業年數가 25年未滿의 경우 그 引退年金額은 當該就業年數에 比例하여 算出한다.
2. 比例引退年金 그 額은 第①123條 ①(b)의 適用에 의해 支拂되는 負擔金 및 保險期間에 따라 算定되며, 社會保障法典 第L 344條의 適用에 의해 定해지는 係數에 따라서 每年 引上된다.
3. 任意의 補足引退年金 이것은 商工業部門 自營業者任意의 補足引退年金에 類似한 것으로 그 制度는 1980年7月4日의 法律 第80-502號 第18條①項에 規定하는 調整期間 終了時에 政令으로 정하여진다.

定額引退年金 및 比例引退年金의 合計額은 受給者의 負擔金支拂年數에 따르며, 同時에 一般社會保障制度에 의해 給付되는 引退金額을 參考로 해서 定하여진 上限額을 넘을 수 없다. 上記規定의 適用條件은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③(1) 農事法典 第1110條中 最初의 4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農業社會基金自主組織은 最終의 職業活動으로서 經營主 또는 企業主의 資格으로 第1060條에 規定하는 活動의 하나로 從事하고 있던 農業經營者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것을 支給하도록 한다.

1. 15年以上 當該活動에 從事하며, 同時에 引退年金을 受給할 수 없는 者에 대해 第1111條부터 第1120條까지 規定하는 條件에 의한 老齡手當
2. 第1121條 및 第1122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의한 引退年金

(2) 農事法典 第1142-3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이 節의 規定適用을 받는 者 가운데 15年以上 農業活動에 從事한 것을 證明하며, 同時에 引退年金을 受給할 수 없는 者는 老齡手當을, 그외의 者는 賃金勞動者의 引退年

金을 受給할 權利를 갖는다.

(3) 農事法典 第1122條 第1項中 「5年以上 負擔金을 支拂했던 것을 證明하는 者」을 削除한다.

(4) 가. 農事法典 第1122條의1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이 法典 第1122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適用을 방해함이 없이, 이 法典 第7編 第2章 第4節의 모든 要件을 채우는 經營主家族의 構成員은 65才 또는 勞動不能의 경우에는 60才로, 第1121條 ①項에 定하는 定額引退年金을 同一條件에 따라서 受給하는 權利를 갖는다.

나. 同條 第2項中, 「第1116條에서 定하는 額과 같은 額의 遺族年金」을 「被保險者가 受給하고 있던, 또는 受給받을 수 있던 定額引退年金額과 같은 額의 遺族年金」으로 改正한다.

(5) ③의 規定適用方法 및 특히 이 法律의 發效日 以前에 있어서 就業年數가 定額引退年金의 算定을 위해 考慮되는 條件은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④農事法典 第1121條의1에 다음 1條를 추가한다.

「第1121條의1 賃勞動을 행함과 同時에 附隨的인 性格밖에 갖지 않은 自營農業活動에 從事하는 者는 比例引退年金만을 受給할 수 있다.

前項에 規定하는 者가 死亡한 경우의 生存配偶者는 그사람 自身이 社會保障制度에 의한 惠澤을 받지 않고, 또한 年齡, 個人的經濟事情 및 婚姻期間에 관해서 政令으로 定하는 條件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遺族年金을 受給할 權利를 갖는다. 그 年金額은 前項에 規定한 者가 受給하고 있던, 또는 受給할 수 있던 比例引退年金中 規則으로 定하는 比率과 같은 額으로 한다.」

⑤農事法典 第1123條 ①項中, 가항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가. 當該制度에 屬하는 18才以上의 自營農業從事者(第1121條의1에 規定하는 經營主, 65才以上 또는 勞動不能의 경우에는 60才以上의 老齡手當 또는 引退年金의 受給資格者 및 그들의 配偶者를 제외한다)의 支拂負擔金.」

⑥農事法典 第1124條中, 第1文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23條 ①가항에 規定하는 負擔金은 農業經營 또는 農企業의 規模 및 性格에 의해서, 相異한 것으로 하여 政令으로 修正한다.」

⑦農事法典 第1121條의1에 規定하는 者로서, 이 法律의 發效前에 引退年金의 受給을 위한 負擔金을 支拂하고 있던 者에 대해서는, ③에 規定하는 定額引退年金의 比例的 算出方法이 適用된다.

⑧農業法典 第7編 第2章 第4節 및 第4～1節中, 「基礎的引退年金」은 「定額引退年金」으로, 「補足的引退年金」을 「比例引退年金」으로 修正한다.

⑨農業法典 第1106條의 1 ② 第1項의 末尾에, 다음 一文을 추가한다.

「단, 1961年3月31日의 政令 第61-294號 第6條 第2項에 規定하는 者는 이 節에 의해서 創設되는 制度에 對해서, 1977年7月12日의 法律 第77-77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을, 同法에 規定하는 條件以外의 條件을 適用되지 않고, 請求할 수 있다.

第19條(農業賃勞動者의 諸條件의 改善) 農業賃勞動者의 雇傭, 職業訓練, 勞動條件, 賃金條件에 관한 規定은 商工業의 賃勞動者에 適用되는 規定과의 調和를 꾀하고, 特히 勞動時間에 관한 規定에 관해서는 農業部門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農業賃勞動者에 대해 同等의 保護를 確保하는 것으로 한다.

第20條 社會保障法典 第L332條 第11項中, 「또는 作業現場의 劣惡한 環境에 對해 있다」로 改正한다. 前項의 改正에 의해 當該規定이 適用되는 農業賃勞動者의 種類는, 必要한 경우 政令으로 정한다.

第21條 勞動法典 第2編에 第L231-2-1條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L231-2-1條 使用者 및 賃勞動者의 代表로 構成되는 衛生安全委員會는 衛生安全小委員會가 設置되어 있고, 또한 衛生 및 安全條件을 改善하는 것에 寄與하는 任務를 가진다.

이 法典 第1編 第3章의 適用에 근거하여 當該委員會가 設立되지 않을 때는 그 委員會의 任務는 이 法典 第L231-2條(4)의 規定을 근거로 하여 設立되는 機關이 遂行한다. 이 點에 있어서 集團的 決定에 의한 規約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第L231-2條에 規定하는 規則이 上記의 委員會 또는 機關構成員인 賃勞動者에 대해서 그 活動을 하는 데 必要한 費用을 補償하기 위한 規定을 정한다.

第22條(農業經營者와 그 配偶者와의 關係) ①農事法典中 第5編의 다음에 第5編의 2로서 다음 1編을 추가한다.

「第5編의 2 夫婦關係와 農業經營 第789條의 1 協同해서, 또한 自身의 利益을 위하여 同一의 農業資產을 經營하고 있는 夫婦는 經營의 必要性에 關聯한 資產管理行爲를 행함에 있어서 相互 委任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經營者의 配偶者가 農業經營에 協力하는 것뿐인 때라도, 그 配偶者는 當該經營者로부터 經營의 必要性에 關聯한 資產管理의 行爲를 하는데 있어서 委任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第789條의 2 前條의 規定은 夫婦의 한쪽이 없다고 推定되는 경우 또는 別居 혹은 法律上의 財產分割이 행하진 경우에는 法律上 當然히 그 適用을 停止한다. 前條에 規定하는 條件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同樣으로 한다.

第789條의 3 夫婦의 한쪽은 그 配偶者가 第789條의 1의 規定을 援用할 수 없는 뜻을 當該配偶者의 立會下에 또는 正式의 呼出을 한 위에, 宣言할 수 있다. 前項의 宣言은 公證人 앞에서 하지 않으면 效力을 갖지 않는다. 그 宣言은 當該夫婦의 婚姻證書의 欄外에 그 취지의 記載을 한후 3個月이 經過한 때부터 第三者에 대해 效力을 갖는다. 當該記載가 없

는 경우에는 當該宣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立證된 第三者에 대해서만 對抗力을 갖는다.

②夫婦가 會社形態를 갖추고 있지 않은 農業經營에 協同해서 또한 通常의 方法으로 參加하고 있을 때는 夫婦의 어느 한쪽도 協同組合, 共濟組合 또는 農業信用組合의 總會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組織執行部, 理事會 또는 監査會의 構成員이 되는 資格을 갖는다. 이들 組織의 定款에 있어서 이것에 反對하는 모든 條項은 存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農事法典에 第 846 條의 1 로서 다음 1 條를 추가한다.

「第 846 條의 1 夫婦가 協同해서 또한 通常方法으로 農業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경우, 民法典 第 217 條의 適用을 방해함이 없이 當該經營에 관한 賃借契約의 名義人인 夫婦의 한쪽은 그 配偶者의 明白한 同意가 없으면, 當該契約의 解除를 받아들여, 當該賃借權을 讓渡하고, 또는 當該契約의 更新을 要求하지 않는 것을 約束할 수 없다. 이것에 反하는 모든 約定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같은 行爲에 同意를 하지 않은 配偶者는 當該行爲의 取消을 要求할 수 있다. 그 者는 當該行爲가 있었던 것을 알은 日부터 起算해서 1 年間은, 그 取消의 訴權을 갖는다.

第 23 條 經營者의 配偶者가 別個의 農業資産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當該配偶者는 法律에 의해서 農業經營者에 주어지는 權利 및 利益을 享受하기 위해서는 實際로 各各의 經營者로서의 活動을 하고 있는 뜻을 證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夫婦 各者가 別個의 農業資産을 經營하는 것에 의해서, 當該夫婦가 經濟的, 社會的 및 稅制上의 取扱에 대해서 그 둘의 經營을 合併한 것 相當하는 資産을 協同해서 經營하는 경우에 비해서 有利한 立場에 놓여져서는 안된다.

第 4 章 土地條項

第 24 條(不動産交換에 따른 登記節次) 農業法典 第 37 條中, 最後의 項을 削除한다.

第 25 條(農地評價制度의 創設) 農地市場의 情報改善을 위해 農地市場價格, 賃貸價格 및 收益價格에 관한 農地評價簿가, 1985 年 1 月 1 日 까지로, 農事法典 第 1 編 第 1 章 第 1 節의 2 第 5 條에 規定하는 縣委員會에 의해 作成되어, 各 코뮨에 公示된다. 縣委員會는 自然地域別로 農地의 種類를 定하고, 그 種類別로, (1) 平均的 市場價格의 確定, (2) 平均的 賃貸價格의 確定 (3) 收益價格의 決定을 한다. 收益價格의 決定은, 코-뮨委員會 또는 코-뮨間 委員會가 實施可能한 經營方式 및 土壤의 農學的 特性을 考慮해서 코-뮨別로 提示하는 諸基準 및 農業 小地域別 農業粗收益을 바탕으로 행하여진다. 이렇게 決定되는 收益價格은, 土地政策, 社會政策 및 租稅政策에 있어서 參考를 제공한다. 農地評價簿에 記載된 情報는 農地價格 決定에 즈음해서, 裁判官의 判斷要素의 하나가 된다. 農業法典 第 5 條에 規定하는 縣委員會는 코-뮨委員會 또는 코-뮨間委員會의 作業을 監督하고, 調整한다. 그 作業에 관한 異議申請은, 關係者 또는 知事에 의해서 縣委員會에 依賴한다. 이 條에 規定하는 諸委員會는, 關係行

政機關 및 SAFER로 부터, 그 任務遂行에 必要한 範圍의 情報, 특히 過去 5年間에 행하여 졌던 農地讓渡의 諸價格에 관한 情報를 入手할 수 있다. 그 때。關係行政機關은,守秘義務規定을 援用할 수 없다. 이 條에 規定하는 農地評價簿 作成과 改正方法은,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第 26 條(過渡期間에 있어서 指標地價表) 前條에 規定하는 農地評價簿가 公示되기 까지의 期間에 대해서는 農地의 平均的 市場價格을 나타내는 指標 地價表는 農業省令에 의해 公示된다. 이 地價表는, 各縣의 自然地域 및 耕作性格別로 作成된다. 이 地價表는, 農地價格의 決定에 있어서 裁判官의 判斷要素의 하나가 된다.

第 27 條(SAFER의 土地 購入價格) ①前揭의 1962年 8月 8日의 法律 第 62-933號 第 7條 ④ 第17項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SAFER (農村建設土地整備會社)는, 先買權을 行使할 意圖를 表明하고, 또한 當該讓渡의 價格 및 條件이, 특히 그 地域에 있어서 同等級의 不動產 實際價格에 비해 過大하다고 認定될 때는, 政府委員의 同意를 얻어서, 스스로 適正하다고 생각하는 條件을 근거로 購入申請을 賣渡人에 한다. 賣渡人은, SAFER의 購入申請을 受諾하지 않을 경우에는 當該資產의 賣却을 撤回하며, 또한 SAFER의 提案한 價格改訂을 大審裁判所에 請求할 수 있다. 當該改訂請求를 받은 大審裁判所는 農事法典 第795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判決을 내린다. SAFER에 의한 購入申請의 通知로 부터 6個月 以內에, 賣渡人이 申請의 受諾通知, 賣却撤回 또는 裁判所에의 訴訟의 어느쪽의 行爲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當該 賣渡人은, SAFER의 申請을 受諾한 것으로 간주하며, SAFER는 提案한 價格으로 當該資產을 取得한다. 단지 當該期間의 滿了前에 賣渡人이 死亡하였을 때는, 申請受諾에 관한 이 推定的 認定은 그 權利承繼者에는 付抗力을 가지않고, SAFER은 先買權의 行使를 위해서는 다시 後者에 대한 購入申請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賣渡人의 訴訟을 근거로 裁判所가 價格을 決定하였을 때는 當事者의 어느 한쪽도 賣買를 斷念할 수 있다. 단지, 賣渡人이 判決 確定日로 부터 起算하여 3個月 以內에 要求한 경우에는, SAFER는 裁判所가 決定한 價格으로 當該資產을 取得함에 拒否할 수 없다. 當該賣却이 當該期間의 2年째 또는 3年째에 행하여 질 때는, 裁判所가 먼저 決定한 價格은 改定될 수 있다.

②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第 62-33號 第7條④ 第18項을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前項의 規定은, 公賣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단, 어느 地區 또는 어느 種의 資產에 관해서, SAFER의 先買權의 對象이 될 수 있는 資產의 所有者로, 任意의 競賣에 의해서 그 資產을 賣却하려고 하는 者에 對해서 그 者가 競賣節次를 취하는 것을 法令規定에 의해 義務부여가 없을 경우에 한해, 賣却 豫定日보다 적어도 2個月前에 當該資產을 SAFER에 相對形式으로 賣渡申請을 하도록 義務부여를 위한 規定을, 이條②에 規定하는 政令으로 定할 수 있다. 이 規定이 適用되는 경우에 있어서, SAFER이 相對形式로의 賣渡申請을 받은 후 2個

月 以內에 回答하지 않았을 때는 여하한 事情이 있어도, SAFER이 그 申請의 受諾을 拒否한 것으로 간주한다. 前項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價格이 決定된 場合에는 賣渡人은 그 資産의 賣渡를 撤回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 賣渡人은 그後 3年間은 任意競賣로 그 賣却을 행할 수 없다. 當該 賣渡人이 계속해서 賣却의 意思를 갖는 경우에는, SAFER은, 이 3年期間, 裁判所가 決定한 價格으로 當該資産을 取得하는 것을 拒否할 수 없다. 단, 當該賣却이 當該期間의 2年째 또는 3年째에 행하여 질 때는 裁判所가 먼저 決定한 價格은 改訂될 수 있다. 어떠한 事情이 있어도, SAFER에의 賣却은, SAFER에 優先하는 先買權者에 對해서 그 權利行使를 可能하도록 하는 節次가 完了한 後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③前揭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933號 第7條③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SAFER의 先買權은, 現存의 賃借人 또는 農事法典 第793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正式으로 代位하고 있는 그 直系卑屬에 對해서는 當該賃借人이 當該資産의 經營을 행하는 期間이 3年未滿인 경우에 限해서 行使할 수 있다. 이 項의 適用에 있어서 賃借人에 要請되는 經營期間의 條件에 관해서는 當該賃借人의 配偶者 또는 當該賃借人 혹은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의한 經營期間을 合算할 수 있다.

第28條(土地整備委員會 및 區劃整理) ①農事法典 第1編 第1章 第1節의2에 規定하는 코-뮨土地再編區劃整理委員會, 縣土地再編區劃整理委員會는 각각 코-뮨土地整備委員會, 縣土地整備委員會라고 名稱을 變更한다.

②農業法典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縣土地整備委員會는 다음에 드는 者에 의해 構成된다.

1. 控訴院院長이 指名하는 司法裁判所의 裁判官(委員長이라 한다).
2. 縣會가 指名하는 縣會議員 1人 및 農村코-뮨의 長 2人
3. 知事가 指名하는 行政官 6人
4. 農業委員會會長 또는 農業會議所 會員中으로 부터 指名되는 그 代理
5. 全國 段階에서 가장 代表的인 農業經營者 組合組織의 縣連合會會長 또는 當該連合會의 構成員中에서 指名되는 그 代理
6. 縣公證人會會長 또는 그 代理
7. 賃貸所有者 2人, 所有經營者 2人, 賃借經營者 2人. (農業會議所가 作成하는 각각 6名 連記의 셋의 名簿中에서 知事가 指名한다.)

또한 知事는 이들의 名簿에서 正規委員 各各에 1人의 比率로 6人의 補充員을 選定한다. 이들 補充員은 正規委員이 缺한 경우, 또는 正規委員이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區域에 관한 案件을 縣委員會가 審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縣委員會에 出席한다.

縣會議員 및 코-뮨의 長의 代表者 指名은 縣會 및 코-뮨議會가 각각 改選되는 것으로한다. 農業職能組織의 代表者 指名은 農業會議所 會員이 選擧에 의해 部分的으로 更新되는 것으

로 한다.

縣農業局職員 1人이 縣土地整備委員會의 書記로 근무한다. 委員會는 意見聽取가 有用하다고 認定된 경우에 參考人 資格으로 어떠한 사람도 呼出할 수 있다.

③第25條에 規定하는 코-뮨委員會는 知事의 命令에 의해 設置되며, 다음에 드는 者로 構成된다.

가. 코-뮨議會가 指名하는 賃貸人 2人, 賃借人 二人, 當該코-뮨의 農業經營者(土地所有者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는다) 2人, 知事의 코-뮨議會에 對한 指名請求 後 3個月 以內에 當該指名이 행하여 지지 않을때는 農業議會所가 委員으로서 必要한 資格을 가진 12名으로 된 名簿를 知事에 提出하며, 知事가 그 중에서 指名한다.

나. 코-뮨의 長 또는 그것이 缺한 때는 코-뮨議會에 의해 선정되는 그 代理

다. 知事가 指名하는 者 3人

複數의 코-뮨에서 要求가 있는 경우, 知事는 코-뮨別로 上記 가항에 規定하는 세 범주의 代表者 各1人, 各코-뮨의 議會에서 선정된 代表者 各1人 및 知事가 指名하는 者 3人으로 構成되는 코-뮨間 委員會를 設置한다.

④農業法典에 第30條의 2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30條의 2 縣土地整備委員會가 그 決定이 行政裁判所에 의해 取消되었기 때문에 再度審議에 着手한 경우, 第30-1條에 規定하는 1年內에 새로운 決定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同一案件에 관한 縣委員會의 두번 決定이 同一 理由로 行政裁判所에 의해 取消되었을 때는 當該案件은 縣委員會에 대신해서 決定을 내릴 별도의 委員會에 付託한다. 이 委員會는 1人의 國務院 評定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다음에 드는 者로 構成되며 그 構成員의 指名 및 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은 國務院 政令으로 定한다.

1. 行政裁判所의 裁判官 2人
2. 司法裁判官 2人
3. 農業省의 代表者 2人
4. 豫算省의 代表者 1人
5. 農業 및 土地整備에 관한 學識經驗者 1人

이들 名委員에 1人의 補充員을 指名한다.」

⑤農業法典 第2條中 7項의 다음에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指名請求가 있은 뒤 3個月 以內에 農業會議所가 農業經營者의 指名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코-뮨議會가 土地所有者의 選出을 하지 않을 때는 知事는 縣農業局長의 提案을 근거로 當該經營者 및 土地 所有者를 指名한다.」

⑥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33號 第10條中, 最終項前에 다음의 3項을 추가한다.

「이 條의 適用에 의해서 區劃整理가 實施될 때는, 農事法典 第1編 第1章 第3節의 規定이

適用된다.

다만, 工作物의 設置 및 그것과 함께 建設되는 道路의 特性까닭에 農事法典 第19條의 規定에 抵觸되는 것이 不可避한 경우, 當該抵觸은 인정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一定의 土地所有者가 입는 損害로 區劃整理事業의 完了時에 確認된 것은 公共事業에 의한 損害라고 간주된다. 區劃整理의 實施區域內에서 工作物의 收用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當該 工作物이 占하고 있는 土地性格 까닭에 農事法典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抵觸하는 것이 不可避일 때는 當該抵觸도 認定된다. 이 경우 耕作 性格別로 土地 割當上의 均衡을 確保할 수 없는 部分은 하나 또는 複數別 種類의 耕作 割當에 의해서 補償되는 것으로 한다.

第29條(過大한 地價에 對한 融資制限) 土地讓渡價格이 第25條 및 第26條 規定을 바탕으로 確定되는 同等級의 土地 市場價格(경우에 따라서는 政令으로 定하는 割當係數를 이것에 適用해서 얻어지는 價格)에 비해 분명하게 過大한 경우에는, 當該 土地取得에 利子補給에 의한 低利資金의 貸付를 認定할 수 없다.

第30條(GFA 設立을 目的으로 하는 優先的 承繼) 民法典 第83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32條의 2 第815條 第2項 및 第815條의 1의 適用에 의한 共有의 繼續에 命令되지 않고, 또한 第832條 第3項 또는 第832條의 1에 規定하는 所有權에 의한 優先的 承繼가 행하여 지지 않는 경우는 共同 所有者인 生存 配偶者 또는 모든 相續人은 1人 또는 數人의 共同相續人 및 경우에 따라서는 1人 또는 數人의 第3者와 함께 農業 土地集團을 設立하는 目的으로서 相續財産에 屬하는 農業用 資産 및 不動産的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의 優先的 承繼를 請求할 수 있다.

第832條 第3項에 規定하는 人的 條件을 채우고 있는 生存 配偶者 또는 1人 혹은 數人의 共同 相續人이 當該 農業土地 集團資産의 全部 또는 一部에 따라서 農業法典 第6編 第1章 第7節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 이 賃借를 要求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優先的 承繼는 法律上 當然히 認定된다.

前項의 規定에 의해 複數의 者가 賃借要求를 한 경우에는, 當該農業 土地集團의 資産은 그 面積規模에서 보고 可能하면 相異한 共同 相續人을 賃借人으로 하는 複數의 賃貸借契約의 對象으로 할 수 있다. 그 以外의 경우로 또한 合意가 成立하지 않을 때는 裁判所가 當該資産을 管理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生計를 세우는 各 志望者의 能力을 考慮해서 賃借人을 指名한다. 當該 賃貸借契約의 條項 및 條件에 관해 合意가 成立하지 않는 경우에는 裁判所가 그것을 定한다.

第1項의 優先的 承繼 請求者가 農業土地 集團에의 出資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資産 및 不動産的 權利 및 그外의 相續資産은 農業土地 集團의 設立에 同意하지 않았던 共同 相續人에 對해서 各各의 相續權의 範圍內에서 優先的으로 割當된다. 이들의 共同 相續人이 이와같은 割

當에 의해서 그 相續權을 完全히 充足하지 않는 경우, 淸算金이 이들에게 支拂되지 않으면안된다. 共同 分割人間에 合意가 成立한 경우를 제외하고 支拂되어야 할 淸算金은 遺産分割後 1年 以內에 支拂한다. 이 淸算金의 支拂은 當該 農業土地 集團의 持分에 의해 代物 辨濟할 수 있다. 단, 利害關係者가 代物辨濟의 申請後 1個月 以內에 이와같은 淸算方法에 異議의 뜻을 通知한 때는 여기에 限하지 않는다.

遺産分割은 農業土地集團의 設立證書 및 場合에 따라서는 하나 또는 複數의 長期賃貸借 契約의 署名後가 아니면 完了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第 31 條(優先的 承繼의 對象範圍) 民法典 第 832 條의 3 의 다음에 第 832 條의 4 로서 다음의 1 條를 추가한다.

「第 832 條의 4 第 832 條, 第 832 條의 1 , 第 832 條의 2 및 第 832 條의 3 의 規定은 配偶者 또는 모든 相續人이 完全한 所有權의 共同 所有者일까, 虛有權의 共同 所有者인가 관계없이 이들에 適用된다.

第 832 條, 第 832 條의 2 및 第 832 條의 3 의 規定은 遺言 또는 契約上의 相續人 設定에 의해서 相續에 包括되는 包括名義의 資格을 가진 受惠者에 대해서도 適用된다.

第 32 條(會社形態로 經營되는 資産의 優先的 承繼) 相續財産에 속하는 農業用 資産 및 不動産的 權利에 있어서 農業的 目的만을 가진 會社에의 收益權의 出資 또는 利用權 提供이 되어 있는 경우, 民法典 第 832 條 以下의 規定은 이것에 反하는 모든 規定에도 불구하고 當該相續에 관계하는 共同 所有者인 生存 配偶者 또는 共同 相續人으로 第 832 條(第 3 項)에 規定하는 人的條件을 채우고 있는 모든 者에 適用된다. 단 上記會社는 當該資産經營을 위해 地域慣習에 따르고, 동시에 經營規模에 응해서 實際로 또한 恒常的으로 農作業에 從事하는 自然人인 農業者間에 設立되며, 또한 法人格을 가진 것, 또는 匿名組合의 경우에는 確定日付를 가진 文書에 정해진 定款에 의해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第 33 條(長期賃貸借에 의한 農業經營의 優先的 承繼) ①民法典中 第 832 條의 2 를 第 832條의 3 으로 한다.

②民法典 第 832 條의 3 最初 5 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一個의 經濟單位를 形成하고 있고, 또한 會社形態로 經營되고 있지 않은 農業經營資産이 第 815 條 第 2 項 및 第 815 條의 1 의 適用에 의한 共有狀態로 維持되지 않고, 동시에 第 832條, 第 832 條의 1 또는 第 832 條의 2 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優先的 承繼의 對象에도 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 當該資産에 관계있는 共同所有者인 生存配偶者 또는 共同相續人에 있어서, 스스로 實際로 參加하고, 또한 參加하고 있던 經營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者는, 여하한 共有財産의 競賣請求에도 불구하고, 그 共同分割人이 當該經營資産中 各人에 歸屬하는 土地에 관해, 農事法典 第 6 編 第 1 章 第 7 節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長期賃貸契約을 當該者와의 사이에서 締結하는 것과의 條件下에서, 當該資産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當事者間에 合意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規定의 適用을 받도록 請求하는 者는, 優先的으로 自己取得分으로서 經營用 및 居住用의 建物을 受取하는 것으로 한다.

前項의 規定은 農業經營의 一部分으로, 經濟的 單一性을 構成할 수 있는 것에도 適用할 수 있다.

相續資產의 各各의 分割部分에 포함되는 土地評價에 있어서는 賃貸借契約의 存在에 있어서 생기는 價値減少分은 必要한 경우 考慮에 넣는다.

農業法典 第807條 및 第808條가 이 條 第1項에 規定하는 賃貸借契約의 特別規定을 定한다.

第1項에 規定하는 請求를 행하는 者가 復數의 경우, 大審裁判所는 現存하는 利害關係 및 經營資產의 全部 또는 一部를 管理하고 그것에 따라서 生計를 維持하는 各 志望者의 能力에 따라서, 1人 또는 數人의 受益者를 指名한다.

經營資產의 全部 또는 一部를 管理하고자 하는 1人 또는 數人의 請求者가 분명히 無能力하여, 共同相續人의 利益에 損害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裁判所는 이 條 最初의 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이 不適當하다는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第34條(共同 相續人間의 賃貸借) 農業法典 第6編 第1章 第1節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節의 2 民法典 第832條의 3의 適用에 의해 農業經營資產의 共同分割人 사이에서 締結되는 賃貸借에 관한 規定 第807條 民法典 第832條의 3의 適用에 의해 農業經營資產의 共同分割人 사이에서 締結되는 賃貸借契約은 後述의 留保를 붙여서, 이 章의 規定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當該賃貸借契約이 期限이 될때 까지는 農業經營의 中核部分 또는 主要部分을 形成하는 地片以外의 地片에 관한 第809條의 最終項의 例外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第790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當該資產의 取得 豫定者와 所有者와의 사이에 三親等 以內의 血族 또는 姻族關係가 있는 경우에도 先買權이 當該賃借人에 對해서 認定되어진다. 同樣으로 第793條의 制限도 適用이 除外된다.

第808條 合意가 成立하지 않을 때는 農事賃貸借同數裁判所는 賃貸借契約의 條項을 定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賃貸價格을 決定한다.」

第35條(所有權에 의한 優先的 承繼) ①民法典 第832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共同所有者인 生存配偶者 또는 모든 相續人은 必要한 경우에는 淸算金을 負擔해서 會社形態로 經營되지 않으며, 또한 1個의 經濟單位를 形成하는 農業經營資產의 全部 혹은 一部 또는 農業經營資產의 共有持分에 있어서, 當該 被相續人의 死亡前에 이미 當該經營資產의 一部를 所有하고 또는 共同所有하고 있던 경우에도 그 經營에 實際로 參加하며 또는 參加한 적이 있는 때는, 分割에 의한 優先的 承繼를 請求할 수 있다. 相續人의 경우에는 經營에의 參加條件은 그者의 配偶者에 의해 만족되며 그리고 만족해 있던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民法典 第832條中, 第4項과 第5項 사이에 다음의 1項을 挿入한다.

「共同所有者인 生存配偶者 및 相續人中 어떠한 者도 이條의 第3項, 第832-1條 또는 第832-1條의 規定適用을 請求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共同分害人에 대해서 그者가, 6個月 以內에 農事法典 第6編 第1章 第7節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이條의 第3項에 規定하는 人的條件을 만족하고 있는 1人 혹은 數人의 共同相續人 또는 共同相續人의 1人 혹은 數人의 直系卑屬으로 同一의 人的條件을 충족하고 있는 者로 當該資產을 賃貸하는 것을 약속 條件으로서 優先的 承繼를 認定할 수 있다.

第36條(分割의 延期命令) 民法典 第815條 第2項中, 「이것을 즉시 實施하는 것이 共有財產의 價値에 惡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것을 즉시 實施하는 것이 共有財產價値로 惡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共有權者의 一人이 이 猶豫期間의 滿了後가 아니면 當該 相續財產에 속하는 農業經營에 經營主로서 就農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한다.

第37條(所有權에 의한 當然의 優先的 承繼) 民法典 第832條의1中 第1項 및 第2項은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832條 第11項 및 第1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815條 第2項 및 第815條의1의 適用에 의해서 共有의 繼續이 請求되지 않는 경우에는, 第832條 第3項에 規定하는 優先的 承繼는, 國務院 政令으로 定하는 限度面積을 넘지않는 모든 農業經營에 있어서 法律上 當然히 認定되는 것으로 한다. 當該 優先的承繼의 請求者가 複數인 경우, 裁判所는 現存하는 利害關係 및 當該經營을 管理하며, 또한 그것에 의해서 生計를 維持하는 各 請求者의 能力에 따라서 承繼人 또는 共同承繼人을 指名한다.

前項에 規定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優先的 承繼가 司法的 節次에 의해서 認定될 때에도 承繼人은 共同分割人에 對해서, 淸算金의 1/2以下의 部分支拂에 관하여, 10年 以內의 支拂猶豫를 要求할 수 있다. 反對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는, 殘額은 法定利子를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第38條(遺產分割에 있어서 延拂賃金) ①프랑스의 家族 및 出生에 관한 1939年7月29日의 法律同等政令 第63條中 第1項의 末尾에, 「단, 相續의 할당을 決定을 할 때, 이 延拂賃金을 考慮하기 위해서, 共同相續人에 의해서 負擔되는 淸算金 支拂을 發生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을 추가한다.

②前揭의 1939年7月29日의 法律同等 政令 第63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延拂賃金의 年率은, 經營에의 參加가 行하여진 各年에 있어서 經營者의 死亡에 따르는 遺產分割日, 또는 그 債權의 淸算이 經營者의 存命中에 행하여지는 경우는 늦어도 그 淸算日에 有效한 最低賃金率의 2,080倍로 相當한 額의 2/3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③前揭의 1939年7月29日의 法律同等政令 第6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當該直系卑屬이 婚姻하며, 또한 그 者의 配偶者가 第63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同樣

으로 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夫婦 各各은, 法律上 第63條 第2項에 定하는 賃金率에 근거한 延拂賃金에 의한 勞動契約의 受益者라고 간주된다.

④ 1960年8月5日의 法律第60-808號에 의해 修正된 1939年7月29日의 法律同等政令 第68條 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第3項中 「同樣으로」을 삭제한다.

第39條(GFA에의 外部資本의 導入) ①農業土地集團에 關한 1970年12月31日의 法律第70-1299號 第1條中 最後의 2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同樣으로, 1970年12月31日의 法律第70-1300號의 適用에 의해 一般貯金業務를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으며, 또한 經濟省 및 農業省의 共同省令에 의해서 農業土地集團에의 參加를 唯一의 目的으로 하는 內容의 認可를 받은 民事會社 및 保險法典에 의해 規制되는 保險·投資企業 또는 當該 目的을 위해 設立되는 이들 企業의 그-룹은 農業土地集團이 그 不動產 全體를 當該集團의 1人 또는 數人의 構成員에 대해 長期賃貸借契約에 의해서 賃貸하는 경우에 限해서, 農業土地集團의 構成員이 될 수 있다. 그들 法人은 全體로서 當該集團의 資本金 65%을 上廻하는 部分을 保有할 수 없으며, 또한 當該集團의 管理, 執行또는 指揮에 관한 一切의 機能을 행할 수 없다.

民法典第1861條 부터 第1865條까지의 規定의 農業土地集團에의 適用에 관해서는, 當該集團의 法人 以外의 構成員에 對해서 賣却에 따른 持分의 取得에 대해 優先權을 付與하는 內容을 그 定款으로 規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20年을 넘지않는 範圍에서 定款이 定하는 期間의 經過後에 있어서, 法人 以外의 構成員은 法人이 保有하는 持分의 取得을 求할 수 있다. 또한, 특히 賃借權을 근거로 하여 當該集團의 土地資產의 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構成員에 대해, 優先權을 주는 內容의 規定을 定款에 둘 수 있다. 또, 特別約定에 의해 當該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構成員이 上記 期間 滿了前에 法人保有의 持分取得을 求할 수 있는 內容을 定할 수 있다.

②前揭의 1970年12月31日의 法律第70-1299號 第5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條 農業土地集團이 締結하고 있는 하나 또는 複數의 賃貸借契約이 當該集團의 設立期間의 滿了時에 다시 存續하고 있을 때는 그 構成員에 反對者가 없는 限, 當該賃貸借契約中 最後로 契約期間이 滿了하나 契約期間中 當該集團의 設立期間은 法律上 當然히 延長되는 것으로 한다.

定款에서는 어느쪽의 構成員에 대해서도 前項의 延長에 反對하는 權利를 빼는 規定을 둘 수 없다.」

③前揭의 1970年12月31日의 法律 第70-1299號로 第5條의 2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5條의 2 農業土地集團의 定款이 當該集團의 不動產的 資產의 全部를 賃貸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을 때는 持分에 付隨하는 投票權은 이것에 反對하는 어떠한 條項에도 불구하고 持分이 代表하는 資本의 比率에 比例하는 것으로, 각각의 持分은 적어도 一票의 投票權을 갖는다.

단, 農業土地集團의 構成員中 第一條에 規定하는 法人이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 法人이 保有하는 持分에 주어진 投票權의 2倍에 相當하는 投票權이 法律上 當然히 自然人인 構成員이 保有하는 持分에 割當되는 것으로 한다.

④前揭의 1970年12月31日의 法律第70-1299號 第9條中, 最終項으로서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1970年12月31日의 法律第70-1300號에 의해서 規制되는 民事會社 또는 保險·投資企業이 保有하며 또는 保有하고 있는 農業土地集團의 持分은 이條의 規定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前揭의 1970年12月31日의 法律 第70-1299號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2條 農業土地集團의 持分은 職能上의 또는 家族的인 모든 目的을 위해 貸付를 얻기 위해 質權의 對象이 될 수 있다.

當該集團은 當該行爲를 위하여 抵當權에 의한 保證을 제공할 수 있다.

第40條(GAEC) GAEC(農業經營集團)에 관한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917號 第1條中 第1項의 末尾에 다음의 一文을 추가한다.

「GAEC는, 成年에 達한 自然人 사이에 形成된다.

第41條 ①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917號 第1條中 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GAEC의 構成員은 10人을 넘을 수 없다. GAEC는 夫婦인 2人만을 構成員으로서 設立할 수 없다.

②同條 第8項中 冒頭部分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定款의 이것에 反對하는 모든 規定에 불구하고, 그 構成員은 ……」(以下, 不變)

③同條 第8項中, 末尾에 다음의 一文을 추가한다.

「이 무렵의 規定은 死亡한 構成員의 權利를 承繼하는 者에게도 適用된다.」

第42條 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917號 第6條 第3項中, 末尾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및 그 構成員이 GAEC에 關한 法令規定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證明한다(일…).」

第43條 前揭의 1962年8月8日의 法律第62-917號 第2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構成員은 實際로 共同勞動에 參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當該 GAEC의 存續期間中에 構成員에 의한 共同決定을 근거로 一時的인 것으로서 政令에서 定하는 理由에 의해 勞動免除를 행할 수 있다. 이 決定을 행하였을 때는 縣認可 委員會에 通知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通知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當該決定이 上記의 政令에 適合하지 않는 경우에는 認可의 取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44條(포도酒法典의 一部改正) 포도酒法典 第49條부터 第52條까지를 削除한다.

第 45 條（章名의 變更） 農業法典 第 1 編 7 章의 章名을 「第 7 章 農業經營構造의 規制」라고 개정한다.

第 46 條（規制目的과 縣農業構造基本計劃） 農事法典中 第 188 條의 1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 188 條의 1① 農業經營構造의 規制는 資產의 경영에만 關連한다.

이規制는 1980 年 7 月 4 日의 法律第 80-502 號 및 縣農業構造基本計劃의 諸目標에 따라서 다음에 드는 事項을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1) 職業上의 訓練 또는 經驗에 있어서 政令으로 定하는 條件을 충족하고 있는 農業者의 經營主로서의 就農을 促進하는 것.

(2) 個人責任을 바탕으로 家族經營의 設立 및 維持에 寄與하며, 또한 不充分한 規模의 經營에 있어서 規模擴大를 促進하는 것.

(3) 各縣에 있어서 多就業狀態에 關連하는 經濟的, 社會的 및 人口動態上의 利割를 考慮해서 農業部門 以外의 社會的 또는 職能的 諸階層의 出身者가 農業部門에 參入하기 위한 條件 및 農村의 非農業 就業者가 兼業形으로 農業에 從事하기 위한 條件을 決定하는 것.

②各縣에 있어서 農業構造基本計劃에 의해, 經營構造 整備政策의 重點事項을 決定하며, 또한 이章의 規定을 實施하는 條件을 定하는 것으로 한다.

이 基本計劃은 知事가 農業會議所 및 縣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그 案을 作成하며 이어서 全國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들은 後, 農業省令에 의해서 制定된다.

第 47 條（經營의 承認） 農事法典中 第 188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 188 條의 2 ①다음에 드는 事項에 대해서는 事前에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그 面積의 여하를 묻지않고, 다음에 드는 者에 의해 행해지는 經營主로서의 就農, 經營面積의 擴大 및 農業經營의 合併

가.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에 관해 政令으로 定하는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는 自然人, 이 경우에 있어서 職業上의 經驗에 관한 基準評價에 즈음해서는 第 188 條의 4 에 規定하는 最低就農面積의 1/2 以上의 面積을 經營하는 經營者, 家族補助者, 經營協力者 또는 農業賃勞動者로서의 經驗만이 考慮된다.

나. 夫婦의 1 人이 農業經營主일때, 그 配偶者

다. 會社 또는 共有. 더우기 當該經營에 參力하고 있는 會社構成員 또는 共有權者의 數 또는 身元에 變更이 있을 때는 항상 承認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最低就農面積의 2 倍와 4 倍와의 사이에서 定해지는 上限面積을 넘는 經營의 經營主로서 就農하는 것(이 경우, 上限面積을 넘는 部分에 대해서 承認이 必要).

(3) 經營面積의 擴大 또는 經營合併의 結果로서, 當該經營의 合計面積이 前項에 規定하는 上限面積을 上廻할 때. 단, 県의 全部 또는 一部에, 農業經營의 平均面積이 最低就農面積을 下廻할 때는 當該上限面積은 最低就農面積까지 引下시킬 수 있다.

②그 面積의 여하를 不問하고, 다음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에 관해서는 県農業構造基本計劃에 의해 事前承認을 얻을 義務를 부과할 수 있다.

(1) 經營主로서의 就農, 經營面積의 擴大 또는 農業經營의 合併으로 現存의 賃借人의 同意없이 다음에 드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

가. 最低就農面積以上의 面積을 갖는 農業經營을 消滅시키는 것.

나. 農業經營의 面積을 縮小시켜 最低就農面積을 下回시키는 것.

다. 1回 또는 이어서 數回에 걸친 縮小에 의해, 農業經營의 面積을 最後의 面積擴大時보다 30%以上 減少시켜 이렇게 減少한 經營面積이 上記의 ①의(2)의 規定의 適用에 의해 定해진 上限面積을 下回하게 될때 또는 當該經營面積이 當該上限面積을 이미 下回하고 있을 때.

라. 그 經營을 하기에 不可缺한 建物을 除去하는 것. 단, 그것이 改築 또는 移轉 때문일 경우는 제외한다.

(2) 上記의 ①의(3)의 規定에 관계없이, 經營의 本據地로부터 距離가 県農業構造基本計劃 定하는 最長距離를 넘는 場所에 있는 하나 또는 複數의 地方을 追加하는 것에 의해 行하여지는 經營面積의 擴大 단, 県農業構造基本計劃에서 定한 最長距離는 5㎞을 下回해서는 안된다.

③다음에 드는 경우에는 經營의 承認은 法律上 當然히 주어진다.

(1) 承認請求者가 이 條에서 規定하는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의 條件을 충족시키며 또한 所有者 혹은 그 直系卑屬의 一人에 의해 請求된 經營의 承認對象인 資產이 第3親等 以內의 血族 또는 姻族으로부터의 相續, 贈與에 의해 取得한 것이나 또는 스스로가 그것을 相續 혹은 贈與에 의해 取得한 共同相續人 또는 第三親等 以內의 血族 혹은 姻族으로부터 再取得한 것인 경우. 이 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共有狀態를 終了시키기 위해서 同一家族의 構成員 사이에 形成된 會社의 持分은 그것이 代表하는 資產과 同一視된다. 단, 前項의 規定은 다음에 드는 留保條件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즉,

가. 承認의 請求者가, 그 經營面積을 擴大하기 위하여 前項의 規定을 援用할 수 있는 것은 當該資產이 請求日에 賃貸되지 않고, 또한 當該請求者가 上記 ①의(2)에 規定한 上限面積을 넘는 面積을 經營하기 위하여 過去의 當該規定에 의한 利益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限한다.

나. 當該規定은, 請求者가 贈與에 의해 取得하는 資產으로 그 贈與者가 그 以前에 有償으로 取得한 것에 대해서는 當該贈與者가 9年以上 이것을 所有 또는 經營하고 있던 경우에 限해 適用된다.

다. 相續의 경우 承認請求가 相續開始日로부터 또는 請求者가 被相續人의 死亡時에 未

成年일때는 成年에 達한 日부터, 3年以內에 提出된 때는,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의 條件을 채울 必要가 없다.

(2) 承認請求者가 이 條에 規定한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의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고, 동시에 上記의 ②의 規定을 留保하여 다음에 드는 경우에 該當할때.

가. 經營主로서 就農하려고 하는 經營面積이 上記 ①의(2)에 規定한 上限面積을 넘지 않으며, 또한 當該請求者가 6個月 以內에 從來의 職業換動을 그만두는 것. 이 法典 第845條에 規定한 條件에 따라서 恒常的으로 그 土地經營에 스스로 從事하는 것, 및 政令으로 定한 條件에 따라서 職業者의 訓練을 위해 研修를 받을 것을 約束하고 또한 當該資產이 請求日에 賃貸되지 않는 경우.

나. 承認請求者가 다른 職業活動과 함께 當該資產의 經營에 從事하는 意圖를 가지며, 또한 設立 또는 擴大되는 當該經營의 面積 및 當該請求者의 所得이 県農業構造基本計劃에서 定하는 限度를 넘지 않는 경우. 단, 이 面積의 限度는 最低就農面積의 2분의 1을, 所得의 限度는 時間當 最低賃金額의 3,120倍를 각각 下回해서는 안된다.

다. 承認請求者가 工業者 또는 商業者인 경우 設立 또는 擴大되는 當該農業이 이들의 主要한 職業活動 遂行에 不可缺하며, 또한 그 面積이 最低就農面積의 1/2을 넘지 않을 때. 단, 県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서 農業經營의 平均面積이 最低就農面積以下일 때는, 그 限度面積은 最低就農面積의 4분의 1까지 引下할 수 있다.

(3) 그 構成員이 모든 農業經營者인 會社設立에 있어서 그들이 경영하고 있던 農業經營의 資產構成에 變更이 점가되지 않고, 또한 會社의 各 構成員이 當該 會社의 資產經營에 參加하는 內容을 約束할때, 또는 當該會社가 相續財產의 共有를 終了시키기 위하여 設立되었을때 會社에 의해 또는 共有狀態로 經營되고 있는 總面積을 이 農事法典 第845條에 規定하는 意味에서 有效하게 經營에 參加하며, 동시에 上記의 ②의(1)에 規定한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의 條件을 채우는 會社構成員 또는 共有權者의 數로 除하고 얻어지는 面積이 上記의 ①의(2)에 規定한 上限面積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當該承認은 同樣으로 法律上 當然히 주워진다. 이 경우 會社構成員 또는 共有權者의 各各이 經營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面積은, 當該者가 個人的으로 經營하고 資產이 있을 때는 이 面積을 추가해서 算定되는 것으로 한다.

(4) 農業經營主의 配偶者가 承認請求를 한때는 夫婦 各各이, 當該請求에 관계되는 行爲의 終了後에 있어서 다른것과는 明確히 區別해서 管理되는 1個의 經濟單位를 形成하는 個別經營을 가지며, 또한 各各의 經營面積이 當該行爲의 性質에 응해서, 이條의 ①의(2) 또는 ①의(3)에 規定하는 上限面積을 넘지 않는 경우. 더우기, 當該承認의 請求者는 이 條에 規定하는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의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5) 夫婦 各各이 婚姻前에 經營하고 있는 資產을 그 一方의 手中에 合併하는 結果로서 農業經營이 合併되는 경우.

(6) 承認請求者의 1人 또는 數人의 直系卑屬을, 3年 또는 경우에 따라 이것에 兵役期間을 더한 期間以內에 經營主로서 就農시키기 위해, 經營面積擴大 또는 合併이 행하여지며, 또한 全體의 合計面積이 이 條의 ①의(3)에 規定하는 上限面積에 就農豫定者 各各에 의해서 그것과 同等의 面積을 累次 追加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面積을 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當該就農豫定者는 請求對象이 된 資產에도 請求者가 이미 經營하고 있는 資產에라도 就農할 수 있다. 단, 就農時에 이들 各人은, 成年에 達하고 있으나, 또는 未成年의 경우에는 親權을 解除되어 있으며, 또한 이條에서 規定하는 職業上의 能力 또는 經驗에 關한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④經營에 있어서 農業活動의 補完部分을 構成하는 土地내지 生產의 生產施設은 이條에 規定하는 面積算出時에 第188條의 4에 規定하는 換算係數에 의한 補整後의 그 面積中 最低就農面積을 넘는 部分만이 考慮되는 것으로 한다. 森林, 原野, 雜木林, 荒地 및 池沼(養漁用을 除外한다)는 그後 農耕地로 轉換되는 경우에도 當該面積의 計算에서 除外된다.

第48條(農業構造委員會) ①農業法典中 第188條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8條의 3 各縣에 縣農業構造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構成은 政令으로 定한다. 當該委員會는 第188條의 2條의 適用에 있어서 請求되는 承認 및 第188－1條 및 第188－4條에 規定하는 基本計劃 및 諸面積에 관해 意見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②農業法典中 第188條의 3 다음에 第188條 3의 1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188條.3의 1 全國農業構造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構成은 政令으로 定한다. 當該委員會는 知事가 作成하는 縣農業構造基本計劃案을 審議하고 이 章에 定하는 農業經營構造規制에 관한 一般的 目標와의 整合性에 관하여 判定한다. 全國農業構造委員會는 付託을 받아서 提案을 直接 행할 수 있다. 當該 委員會는 同樣으로 이 章의 規定 適用에 따르는 諸困難에 관해 審議를 依賴할 수 있다.

第49條(最低就農面積 等의 決定方法) 農業法典中 第188條의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8條의 4 最低就農面積 및 第188－2條에 規定하는 諸面積은 縣의 自然地域 및 耕作性格別로, 縣農業構造基本計劃에서 定한다. 이들 面積은 定期的으로 改訂된다. 最低就農面積은 全國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農業省令으로 5年마다 定하는 全國最低就農面積을 30%以上 下廻해서는 안된다.

土地 내지 生產에 있어서는 全國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農業省令에 의해서 前項에 規定하는 全國最低就農面積을 基礎로 해서 全國 均一하게 適用되는 換算係數를 定한다.

第 50 條（經營의 承認에 관한 節次） 農事法典中 第188條의 5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8條의 5，第 188條의 2에 規定하는 經營의 承認은 그 對象인 土地가 位置하는 縣의 擔當行政當局 또는 複數의 縣에 걸친 經營에의 就農의 경우에는 請求者의 經營本據地가 位置하는 縣의 擔當行政當局이 縣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이것을 행한다. 當該承認의 請求는 政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서 行하는 것으로 한다. 請求者의 所有에 속하지 않는 土地에 대한 請求의 경우에는 請求者는 土地所有者가 그 資產을 請求者에 賃貸하는 意思의 內容을 나타내는 證明書를 添付해서 請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土地所有者의 同意가 없을 때는 承認은 주어지지 않는다. 縣農業構造委員會는 承認請求를 審査할때 다음에 드는 사항을 遵守하지 않으면 안된다.

1. 請求者의 經營本據地가 位置하는 縣의 縣農業構造基本計劃에서 定해져 있는 方向 設定 특히, 靑年農業者의 新規就農과 旣存經營의 面積擴大와의 사이에 優先順位에 관한 方向 設定에 따르는 것.
2. 請求者 및 경우에 따라서는 土地所有者 및 賃借人에 出席을 구하며, 그들로부터 要求가 있으면, 적어도 一週間前에 關係書類를 提示하고 또한 그들의 意見을 듣는 것. 그 경우 그들은 委員會에서 여하한 사람에 의해서도 助言되며, 또는 代辯시킬 수 있다.
3. 經營의 面積擴大 또는 合併의 경우에는 請求者의 經營本據地와의 關建에 있어서 當該土地의 位置關係 및 경우에 의해서는 請求者가 다른 縣內에 이미 經營하고 있는 經營面積을 考慮할 것.
4. 請求者의 職業上의 能力 및 必要한 경우에는 農業經營構造의 規制에 관한 法律規定과의 關係에 있어서 現存의 賃借人의 個人的 事情을 考慮에 넣을 것.
5. 收益權에 의한 移轉이 公的資金으로 행하여 진 土地整備事業의 效果를 해치지 않도록 當該農業經營의 地片構造를 考慮할 것.
6. 委員會는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起算해서 2個月 以內에 擔當行政當局에 대해서 理由를 붙여서 그 意見을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擔當行政當局은 이 2個月의 期間滿了後 15日 以內에 承認請求에 理由를 붙여 決定을 행한다. 이 決定은 그 理由와 함께 請求者 및 土地所有者가 請求者와 別人인 경우에는 土地所有者 및 現存의 賃借人에 대해서 通知되는 것으로 한다.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起算해서 2個月과 15日 期間內에 請求者에 決定이 通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當該承認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條의 適用에 의해 行하여진 決定에 對한 不服의 訴訟을 提起된 行政裁判所는 完全裁判訴訟으로서 判決을 내린다. 이 경우 當事者는 辯護士의 關與를 强制되지 않는다. 行政裁判所 및 경우에 따라서는 國務院은 緊急히 判決을 내린다. 이條 適用에 의해 行하여진 決定은 이것에 對한 不服訴訟의 提起에 의해 效力을 停止한다. 經營의 承認을 얻은 者가 承認通知를 받은 時點以後에 始作되는 耕作年度의 終了까지 또는 當該土地가 賃貸되고 있는 경

우에는 當該承認 請求後에 있어서 3번째의 耕作年度 終了以前에 當該土地를 耕作하지 않았을 때는 當該經營의 承認은 效力을 잃는다. 단, 이 章의 規定과의 關係에서 當該請求者의 個人的 事情이 變化한 때는 그 範圍에 들지 않는다.」

第51條(經營의 承認과 賃貸借契約과의 關係) 農事法典中 第188條의 6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8條의 6 賃貸借契約의 締結時 모든 賃借人은 經營하는 土地資産의 面積 및 性質을 賃貸人에 알리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을 契約書에 明記한다. 賃借人이 이 法典 第188條의 2의 適用에 있어서 經營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賃貸借契約은 當該 承認을 條件으로서 締結된다. 承認이 最終的으로 拒否된때, 또는 第188條의 2의 適用에 의해 必要로 되는 承認請求가 第188條의 7의 規定에 따라서 知事가 定하는 期間內에 提出되지 않았을 때는 그 契約은 無效가 되며 知事, 賃貸人 또는 先買權을 行使할 경우의 SAFER은 農事賃貸借同數裁判所에 對해 그 契約의 無效를 宣言시킬 수 있다.

第52條(規制의 違反者에 對한 催告와 書類送檢) 農業法典中 第188條의 7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第188條의 7 知事는 第188條의 2의 適用에 의해서 必要로 되는 承認의 請求를 하지 않고 土地가 經營되고 있다고 認定할 때는 그 關係者에 對해서 必要한 承認의 請求를 하도록 催告하는 것으로 한다. 이 催告에 定하여진 期間內에 當該 關係者가 請求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知事는 第188條의 9의 規定適用을 위해 書類를 地方檢察 當局에 送付한다.

知事는 經營의 承認이 最終的으로 拒否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土地가 經營되고 있다고 認定할 때는, 그 違反者에 대해서 期限을 定해서 그 土地의 經營을 停止하도록 催告하는 것으로 한다. 그 期限이 到來했을 때, 當該違反者가 催告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知事는 第188條의 9의 規定 適用을 위해 書類를 地方檢察 當局에 送付한다.

第53條(規制違反者에 對한 公的援助의 禁止) 農業法典中 第188條의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8條의 8 經營의 承認請求에 對한 拒否가 第188條의 5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最終的으로 確定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當該土地를 經營하는 者는 農業에 關聯해서 交付되는 經濟的 性格의 公的 援助를 一切 받을 수 없다.」

第54條(經營構造規制에 關한 罰則) 農業法典中 第188條의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8條의 9 ①가. 第188條의 2에 規定하는 經營의 承認의 請求를 게을리 한 모든 者는 1,000프랑에서 1萬프랑까지의 罰金에 處해진다.

나. 經營의 承認을 請求할 때에 擔當行政當局에 對해 故意로 不正確한 情報를 提供한 모든 者는 2,000프랑에서 10萬프랑까지의 罰金에 處해진다.

②經營의 承認이 最終的으로 拒否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經營을 행하는 者는 2,000프랑에서

10 萬프랑까지의 罰金에 處해진다.

③輕罪裁判所는 이 章의 規定에 違反하고 있는 모든 者에 對해 그 禁止된 行爲 또는 不正行爲를 끝내기 위한 一定의 猶豫期間을 認定하는 判決을 할 수 있다. 同裁判所는 이 決定과 합하여 그 履行의 遲延의 경우에 있어서 一日 遲延에 따라 50 프랑에서 500 프랑까지의 科料를 부과하는 내용의 判決을 할 수 있다. 當該 猶豫期間의 滿了에서 1年以內에 法秩序가 履行되지 않는 경우는 裁判所는 檢察官의 主張을 근거로 1回 또는 數回에 걸쳐 科料의 額을 引上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 條③第1項에 規定하는 上限額을 넘어서 定할 수 있다. 禁止된 또는 不正한 經營이 停止되며, 또한 科料의 支拂義務者가, 本人의 意思에서 獨立한 事由에 의해 定하여진 猶豫期限을 遵守할 수 없었던 內容을 證明한 때는 裁判所는 當該科料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認定할 수 있다. 科料는 國庫收入의 徵收에 關한 規定에 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徵收된다.」

第 55 條(經營構造의 規制에 있어서 時效) 農業法典 第188條의 9의 다음에 第188條 9의 1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188條 9의 1 ①이 章의 規定適用에 의해 行使되는 모든 訴權은 公訴權도 포함해서 3年이 時效가 된다. 여하한 경우도 時效는 不正한 또는 禁止된 經營이 開始된 日부터 起算된다.

②1980年 7月 4日의 法律 第80－502號에 의한 改正前의 農事法典 第188條의 1부터 第188條의 9까지의 規定 適用에 의해서 行使되는 모든 訴權은 公訴權도 包含하여 이 章의 發效日부터 起算해서 6個月의 期間滿了와 함께, 時效에 達하는 것으로 한다.

第 56 條(經營構造의 規制施行日) 이 法律의 公布日부터 18個月以內에 知事의 提案이 없었을 때, 農業長官은 全國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當該県의 農業構造基本計劃을 制定한다. 上記의 第45條부터 第55條까지의 規定은 이 法律에 規定하는 県農業構造 基本計劃의 公示後 30日을 지난 日부터, 各県에 있어 適用된다.」

第 57 條(小作規制의 對象) 農業法典 第6編 第2節 第1號中 第809條의 1로서 다음 1條를 추가한다.

「第809條의 1 特別 法律上의 規定適用에 의해서 締結되는 約定, 特別利用權設定(concessions) 및 林野, 林野制度에 屬하는 土地資產(農業 및 牧畜에 利用되는 部分을 포함한다)의 利用에 있어서의 約定을 제외하고, 經營을 目的으로 行하여지는 農業用不動產의 利用權의 有償提供은 모두, 이 章의 規定에 따른다. 經營果實의 모든 排他的인 讓渡에 있어서도 그 果實을 收取하고, 또는 收取시키는 役割이 讓受人에 屬하는 경우에는 同樣으로 한다.

단, 이 契約이 當該土地資產의 恒常的 利用을 위해 締結되지 않은 것을 當該讓渡人이 證明할 때는 이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住在用不動產의 近隣에 位置하고, 또한 그 附屬物을 이루는 土地의 維持管理를 確保하기 위해서 締結된 約定은 이 條의 規定適用을 받지 않는다.

이 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드는 一時的 占有의 約定에도 適用되지 않는다.

(1) 裁判所에서 相續에 관해 訴訟節次가 進行中이기 때문에 또는 共有狀態의 暫定的인 繼續이 民法典 第815條 및 第815-1條의 適用에 의한 司法上의 決定에 의해서 생겼으며, 相續財産에 包含되는 土地資産의 經營을 目的으로서 締結되는 一時的占有의 約定

(2) 賃貸借契約이 滿期가 되며, 또한 解除되어 동시에 更新對象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賃借人 또는 그 配偶者에 대해서 賃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머무는 것을 認定하는 一時的占有의 約定

(3) 主된 用途가 農業的利用이 아닌 土地資産 또는 農業的利用을 變更하지 않으면 안되는 土地資産의 暫定的 經營을 目的으로 하는 一時的占有의 約定

이 條의 規定은 會社속에서 實際로 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者가 當該會社에 그 利用權을 提供한 土地資産에 있어서는 適用하지 않는다.

第58條(地片에 關한 適用除外의 解釋規定) ①農業法典 第809條中 最終項의 末尾에 다음의 一文을 추가한다.

「當該知事의 命令(아레테)가 修正된 경우, 考慮되어야 할 面積은 賃貸借契約이 締結된 日에 適用되는 面積으로 한다.」

②이 條의 規定은 解釋的 性格을 가진 것이다.

第59條(更新可能한 年次賃貸借契約) ①農業法典 第811條中 第1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09條(最終項)의 規定을 留保하며, 또한 第811條의1의 適用을 받는 賃貸」 경우를 除外하고, 賃貸借期間은 反對의 모든 條項 및 모든 約定에 관계없이 9年을 下回할 수 없다.」

②農業法典中 第811條의 다음에 第811條의1로서 다음의 1條를 추가한다.

「第811條의1 農業經營構造의 規制에 關한 農事法典 第1編 第7章의 規定適用을 留保해서 賃貸人은 契約書에 그 이름이 記載되며, 또한 就農時에 成年에 達하는 그 直系卑屬의 1人 또는 數人을 어느 해의 契約更新時에 經營者로서 就農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就農에 豫定되어 있는 土地資産에 있어서 적어도 最低就農面積에 같은 다른 經營을 이미 경영하고 있는 農業經營者와의 사이에서 6年의 最長期間을 限度로서 更新可能한 年次賃貸借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當該賃貸借에 있어서 賃料는 경우에 應해서, 第812條 또는 第821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定해진다. 賃貸人은 賃貸借契約書에 指名한 1人 또는 數人의 直系卑屬을 經營者로서 就農시키는 目的으로 當該賃貸借를 同樣의 條件에 따라서 終了시킬 수 있다. 6年째의 賃貸借期間이 滿了한 때, 賃貸人이 그 直系卑屬을 經營者로서 就農시키지 않았던 경우에는 當該賃貸借는 法律上 當然히 通常의 賃貸借로 轉換되는 것으로 한다. 合意가 成立하지 않을 때는 農事賃貸借同數裁判所가 그 賃料를 定한다.

當該土地資產의 有償에 의한 讓渡가 이루어진 경우도 同樣으로 한다. 이 賃貸借契約은 第1回째의 賃貸借契約으로 간주되며, 그 轉換이 行하여진 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經營者로서 就農하는 1人 또는 數人의 第845條의 適用에 의해서 義務가 부여되는 條件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第846條의 規定에 適用된다. 이렇게 해서 當該土地資產의 經營에 復歸한 賃借人은 그 復歸日부터 前項의 規定適用을 받을 수 있다. 當該賃貸借가 이 編의 規定適用을 받는 農事賃貸借에 轉換된 경우를 제외하고, 當該賃借人은 賃貸借의 讓渡, 地片의 交換 또는 賃貸 및 離作賃借人에 對한 補償에 關한 規定을 援用할 수 없다.

賃貸人이 3親等以內의 同一家族構成員 사이에서 形成된 共有 또는 會社에 있을 때, 當該賃貸借가 共有權者 또는 會社構成員인 者의 直系卑屬의 1人을 經營者로서 就農시키는 것에 의해서, 終了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條의 規定은 適用된다.

第60條(同數裁判所에의 直接主張) 農業法典 第845條中 第2項의 末尾에 「또는 解約告知로 異議을 陳述하기 위해, 農事賃貸借同數裁判所에 直接 主張하는 것에 의해」를 추가한다.

第61條(回復權 規定의 整備) ①農事法典 第845條中 第6項 다음에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回復의 利益을 얻는 者가 이 法典 第838條의 規定에 따라 되는 解約告知의 期間滿了日에 兵役義務를 履行中에 있는 경우에는 그 解約告知의 效力發生은 當該者가 兵役義務을 終了한 耕作年度末까지 延期된다.」

②農業法典 第845條中 第6項의 冒頭部分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當該行爲가 이 法典 第1編 第7章의 規定適用에 의해 承認을 얻을 必要가 있을 때는 回復은 當該承認이 주어진 경우만을 행할 수 있다. 이 承認의 決定이 解約告知의 通常의 效力發生日에 確定하지 않은 경우에는 農事賃貸借同數裁判所는 判決의 言渡을 延期하고, 現存의 賃貸借契約은 그 決定이 確定하는 耕作年度末까지 法律上 當然히 延長되는 것으로 한다.(以下 不變)」

③農業法典 第845條의 末尾부터 第3번째의 項中, 「1960年8月5日의 法律 第60-808號 第7條에 規定하는 面積에 그 3분의1을 추가한 面積」을 「第188條의2①항(2)의 適用에 의해서 定해진 上限面積」으로 개정한다.

④農業法典 第846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前項에 規定하는 當該土地資產에의 復歸에 관해서는 이것에 의해서 當該賃借人이 따로 經營하는 土地資產을 考慮에 넣으면 第188條의2①항(2)의 適用에 의해 定해진 上限面積을 넘는 面積을 經營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하는 判決을 言渡할 수 있다.

第62條(長期賃貸借에의 轉換) ①農業法典 第870條의25中 第4項의 다음에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農事賃貸借는 何時라도 當事者間의 合意을 바탕으로 當初의 賃貸借變更 또는 새로운 賃

貸借契約의 締結에 의해 長期賃貸借로 轉換될 수 있다. 이 轉換에 있어서, 期間延長以外에는 어떠한 賃貸借條件의 變更도 안되며, 또한 賃貸人이 期間延長에 응해서 賃貸價格의 引上을 要求하지 않는 것을 約束할 때는, 長期賃貸借에의 轉換을 拒否하는 賃借人은 第832條 및 第837條의 規定適用을 받을 수 없다. 第812條 第8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賃貸價格의 여하한 引上도 要求하지 않는 賃貸人은 同條 第6項의 規定適用을 받을 수 없다.」

②이 條의 第1項의 規定은 現在 進行中의 賃貸借에도 適用된다.

③農事法典 第870條의 25中 末尾에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引退年齡에 達하기 까지, 9年以上, 18年未滿의 期間을 남기고 있는 賃借人은 이 節의 規定適用을 받으며, 또한 引退年齡에 達할 때까지의 期間과 同等한 契約期間을 갖는 長期賃貸借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④農業法典中 第802條부터 第806條까지를 削除한다.

第63條(地上物再購入條件의 賃貸借) ①地上物 再購入條件 賃貸借에 關한 農事法典 第907條 및 第911條에 있어서 第907條中 「建物 및 地上物件」의 다음에 「포도, 果樹等의 永年樹木」을 추가하고, 第911條中 第2項의 다음에 第3項으로서 다음의 1項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記述形式의 見積에 의한 現狀明細書가 當事者 雙方의 立會下에 作成되며, 賃貸借契約에 添附된다.」

②農業法典中 第918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918條 賃借人은 土地所有權者의 同意없이 居住用 혹은 經營用의 새로운 建物을 建設하며, 또는 포도, 果樹等의 永年樹木을 심을 수 없다.

단, 하나 또는 複數의 當該行爲가 農場의 合理的인 經營을 위해, 또는 經營者 혹은 賃借人의 居住를 위해 必要한 것이 분명할 경우에 있어서 當該土地所有權者가 이것에 反對할 때는, 賃借人은 그 要求를 同數裁判所에 提起할 수 있으며, 同數裁判所가 그 係爭에 대해서 裁定을 내린다. 賃借人에 있어 보다 有利한 約定이 없는 경우 賃借人은 土地所有權者의 同意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는 裁判所의 同意를 얻어 행해지는 이들 行爲에 관해서, 第6編 第1章 第2節 第5款에 規定하는 離作賃借人에의 補償金을 要求할 수 있다.

第64條(終身賃貸借) 農事法典中 第870條의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70條의 26 長期賃貸借는 1個의 經濟單位를 形成하는 農業經營 또는 最低就農面積을 上回하는 面積의 土地를 對象으로서 25年以上의 期間이 契約되며, 또한, 賃借人이 老齡農業者保障制度로 適用되는 引退年齡에 達하는 耕作年度의 終了日에 그 契約期間이 滿了될 때는, 生涯賃貸借라고 불리운다. 生涯賃貸借의 賃貸價格은 9年間의 賃貸借의 그것과 同一하다. 그것이 定額小作에 의한 賃貸借일 때는 當事者間에 賃貸借의 有效期間에 관해 年1%로 같은 係數를 넘지않는 比率의 範圍로 그 賃貸價格을 引上할 수 있다. 縣農事賃貸借同數諮問委員會의 提案을 근거로, 擔當行政當局은 生涯賃貸借의 賃貸價格이 自由인 內容의 決定

을 할수 있다.」

第 65 條(SAFER의 先買權) ①前揭의 1962年 8月 8日의 法律 第 62-933 號 第 7 條 ①項中, 第 1 項의 末尾에 다음의 一文을 추가한다.

「이 先買權은, 農業經營의 一部를 이루는 居住用建物 또는 農業的 利用이 可能한 經營用建物의 有償讓渡의 경우에도 같은 모양으로 行使할 수 있다.」

②前揭의 1962年 8月 8日의 法律 第 62-933 條 第 7 條 ①항중, (6)으로서 다음의 1 號를 추가한다.

「(6) 土地와 居住用 또는 經營用의 建物등이 分離해서 讓渡되는 것에 의해 危險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있어서 現存의 自立可能한 經營을 維持하는 것.

③同條 ④항中, (4)의 冒頭部分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當該節次에 의해 最終的으로 設立되는 經營面積이 農事法典 第 188 條의 2 ①항의 (2)에 規定하는 面積을 下回하는 것을 條件으로서」

④同條 ④의 (4)가항中, 「農事法典 第 188 條의 1 第 3 項부터 第 6 項까지 다룬다」을 「農業法典 第 188 條의 2 ②항 (1)에 言及한다」로 고친다.

⑤同條 ④항中, 第 15 項을 削除한다.

第 66 條(SAFER의 土地讓渡等) ①前揭의 改正後 1960年 8月 5日의 法律 第 60-808 號 第 15 條中 第 1 項의 다음에 다음의 1 項을 추가한다.

「農村整備 및 留保地의 設定을 圓滑히 하기 위해 SAFER은 그 해에 取得하는 面積의 5 %의 範圍內에서, 土地資產을 公的機關, 地方公共團體, 土地所有者組合, 各種의 職能組合 또는 公益性이 認定되는 施設에 讓渡할 수 있다.」

②前揭의 1960年 8月 5日의 法律 第 60-808 號 第 15 條中 第 2 項의 末尾에 다음의 一文을 추가한다.

「그(SAFER) 規約에서는 活動區域內에 包含되는 県의 県會의 代表者가 그 理事會에 出席하는 內容을 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 67 條(低利融資에 의한 土地取得者의 補助金 返還) 不可抗力에 의한 경우를 除外하고, 農業用土地資產의 取得에 대해서 利子補給에 의한 低利融資를 받은 土地所有者는 그 融資의 最後의 實施期日부터 10年以內에 當該土地資產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는, 그 受領한 補助金 相當額을 國庫에 返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返還額은 取得에 必要한 費用에 대한 國家의 補助額의 比率에 응해서 定하여 진다. 이 規定은 農業共同經營集團, 農業經營民事會社(當該土地所有者가 農事法典 第 845 條에 規定하는 意味에 있어서 有效히 그 經營에 參加하고 있는 경우에 限한다) 또는 農業土地集團(農業法典 第 6 編 第 1 章 第 7 節의 規定에 따라서 賃貸을 행하고 있는 것에 限한다)에 對한 出資에 관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當該規定은 第 1 項에 規定하는 讓渡에 의한 收益이 다른 農業用土地資產의 取得에 돌릴때

도 適用되지 않는다.

第 68 條(賃借人의 先買權에 대한 制限) 農業法典 第 793 條中 第 6 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先買權은 그 受益者 또는 第 3 項에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 代位者인 直系卑屬이 이 權利를 行使하는 內容의 決定을 通知한 日에 있어서 農業法典 第 188 條의 4 에 規定하는 最低就農面積의 3 倍를 넘는 面積의 土地所有者인 경우에는 行使할 수 없다.」

第 69 條(FASASA의 延長) 前揭 1962 年 8 月 8 日의 法律 第 62-993 號 第 62 條에 의해 設置된 FASASA (農業構造整備社會活動基金)은 1985 年 12 月 31 日까지 設置期間을 延長한다.

第 70 條(離農年次補償金과 離農終身補償金) 前揭의 1962 年 8 月 8 日의 法律 第 62-933 號中 第 27 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 27 條 FASASA는 主業으로서 農業에 從事하며, 또한 所定의 年齡으로 老齡農業者給付金을 受給할 수 있는 60～65 才의 農業者이고, 農業經營主로서의 活動을 그만 두고 面積에 관한 條件을 채우는 土地를 처분하는 者에 對해, 擔當行政當局이 定하는 額의 離農年次補償金을 支給하는 것으로 한다. 前項에 規定하는 60 才의 下限年齡은 50%를 넘는 身體障害率을 갖는 農業經營者, 또는 配偶者의 死亡에 따라 經營主가 된 者에 관해서는 55 才로 引下된다. 當該農業者의 處分土地는 政令으로 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新主(主業으로서 經營主의 活動을 하는 者에 限한다)에 讓渡될 수 있다. 이들의 土地는 農業經營構造의 規制에 關한 規定을 遵守해서 完全한 所有權의 移動에 의해 또는 農事法典 第 6 編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讓渡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의 土地는 그外 植林 또는 一般的 利益에 적합한 非農業 用途에 충당할 수 있다. 離農終身補償金의 支給에 適用되는 規則은 그 申請書을 提出한 日에 有效한 規則으로 한다.

FASASA는 다음에 드는 者에 대해서 引退年金의 補足으로서의 性格을 갖는 離農終身補償金을 支給한다.

1. 離農年次補償金의 受給資格者(老齡農業者給付金을 受給할 수 있는 時點以後에 限한다)
2. 65 才의 誕生日 以前에 經營을 그만 두고 老齡農業者給付金을 受給하는 農業者(主業으로서 農業에 從事하고 있던 者에 限한다)
3. 擔當行政當局이 定하는 一定期間에 65 才의 誕生日以後에 老齡農業者給付金의 受給資格을 얻고, 또한 經營을 그만 둔 農業者(主業으로서 農業에 從事하고 있던 者에 限한다)

離農從身補償金은 當該農業者가 그 經營하는 土地를 이 案의 第 3 項에 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讓渡할 경우에 그 支給이 認定된다. 그 額은 當該者가 그 活動을 그만 둔 年齡에 응해서 擔當行政當局에 의해 定해진다. 當該土地의 有償에 의한 讓渡金額은 國民連帶에서 追加手當의 受給資格에 關한 收入의 計算에는 算入하지 않는다.

FASASA는 새로운 經營에의 再就農을 위해 補償金을 支給하고 …… . 」(以下 不變)

第 71 條(離農補償金受給을 위한 賃貸借의 解除) ①農事法典 第 845 條의 2 中 第 1 項의 冒頭部分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 845 條의 2 FASASA의 任務遂行의 期間中에 1962 年 8 月 8 日의 法律 第 62-933 號 第 27 條에 規定하는 離農年次補償金 및 離農終身補償金의 受給을 위해 必要한 人的條件을 충족하고 있는 賃借人은 …… 」(以下, 不變)

②同條의 最終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條에 規定하는 條件에 따라서 賃貸借를 終了시켜, 또한 農業經營者로서 再就農하지 않는 賃借人은 上記의 第 1 項에 規定하는 利益을 享受하는 條件을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第 5 章 農 村 整 備

第 72 條(重點施策) 農村空間의 整備 및 經濟發展은 國土整備의 不可缺한 優先事項으로 한다. 이 分野에 있어서 이 法律에서 定하는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農村整備政策은 特히 다음에 내거는 事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1. 農村部의 모든 *潛在的* 能力의 開發을 促進하는 것.
2. 都市部와 農村部와의 사이의 人口構造上의 均衡을 改善하는 것.
3. 非農業活動과의 共存을 꾀하며, 農業生產을 維持 發展시키는 것.
4. 農村部의 發展에 有益한 多樣한 諸活動의 均衡있는 配分을 確保하는 것.
5. 雇傭에 관한 諸要請에 配慮하는 것
6. 兼業이 經濟活動의 維持에 不可缺한 地域에 있어서, 必要한 範圍內에서 兼業 從事를 奬勵하는 것
7. 人口密度가 낮은 地域에 있어서 公共서비스의 維持와 適應과를 도모하는 것

이를 위해 都市計劃書의 作成時 및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全國都市計劃規則의 農村 코-뮨에의 適用에 있어서 人口動態, 居住形態, 住宅需要 및 種種의 經濟的 社會的 諸活動間의 土地配分을 考慮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方向設定을 適用하는 條件은 農村整備의 全國的 指針을 나타내는 國務院政令에 의해서 定하여진다.

第 73 條(農地圖의 作成) 各県에 있어서 農地圖를 作成하며, 行政當局의 承認을 얻은 後, 県內 各코-뮨에서 縱覽에 제공한다. 當該農地圖는 都市計劃書의 作成時 農業空間의 顯著한 減少를 惹起하고, 또는 當該地區의 農業經濟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염려가 있는 事業에 앞서 행하여지는 調査時 및 특히 鑛業法典 第 109 條의 1 에 規定하는 採石場의 協同開發計劃의 作成時에 參考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空間의 保全을 確保하기 위해 都市計劃 또는 인후란스트락춰의 整備施行에 관한 文書 및 農地의 현저한 減少을 정하고 있는 採石場協同

開發計劃에 關한 文書는 農業會議所 및 県農業構造委員會의 意見을 들은 後가 아니면, 公示할 수 없다. 이 規定은 當該文書의 修正 및 改正의 경우 및 前項에 規定한 結果의 하나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土地整備 事業으로 그 公的調査가 아직 命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適用되는 것으로 한다.

第 74 條(農業擔當行政機關의 都市計劃에의 關與) 都市計劃法典 第L 122 條의 2 中 「國家機關」의 다음에 「특히 農業, 工業 및 都市計劃을 擔當하는 것」을 추가한다.

第 75 條(農業에 歸因하는 公割) ①建設, 住居法典 第 1 編 第 1 章 第 2 節에 第 8 號로서 다음의 1號를 추가한다.

「第 8 號 特定活動에 歸因하는 公害 第L 112 條의 16 農業, 工業, 手工業 또는 商業活動에 歸因하는 公害에 의해서 어느 建物의 居住者에 생긴 損害에 대해서는 當該公害에 노출되고 있는 建物에 관계되는 建築許可의 請求 또는 그 建物의 讓渡 혹은 賃借에 관계되는 公正證書의 作成이 當該公害를 發生시키는 活動의 存在보다 後에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 當該活動이 有效한 法令의 規定에 適合하여 행하여지며, 또한 同一條件의 아래에서 繼續되었을 때는 그 原狀回復의 權利를 주어지지 않는다.」

②都市計劃法典中 第L 412 條의 9를 削除한다.

第 76 條(農村整備·區劃整理併進事業) ①農業法典에 第 19 條의 1 로서 다음의 1 條를 추가한다.

「第 19 條의 1 ① 都市計劃의 作成 및 農地區劃整理의 雙方에 着手하는 것이 決定되었을 때는 行政當局은 코ー뮨土地整備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또한 코ー뮨議會의 同意를 得한 後, 農村整備·區劃整理併進事業의 節次를 취할 內容을 命할 수 있다.

②農村整備·區劃整理併進事業의 境界內에 있어서는 農地面積中에서 都市的 利用 및 公共施設 및 産業活動區域을 위한 留保地의 設定에 지명되는 部分이 占하는 比率에 근거하여 各各의 土地所有者에 對해서 그 權利에 比例해서 割當되는 都市化用地와 農業用地와의 面積比率을 決定하는 것으로 한다.

③農村整備·區劃整理併進事業實施時에 都市化用地에 적합한 土地의 選定은 土地의 農業的價値, 農業構造, 商品質産品을 生産하며, 또는 大規模의 特別한 施設을 갖는 土地區劃의 存在等을 考慮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農業法典 第 20 條中 末尾에 다음의 1 項을 추가한다.

「上記의 (4)의 規定은 農村整備·區劃整理併進事業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第 77 條(SAFER의 土地所有期間의 例外) 前揭의 1960 年 8 月 5 日의 法律 第 60-808 號 第 17 條中 末尾에 (3)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農村整備 또는 都市計劃案에 있어서 農業經營構造에 惡影響을 줄 염려가 있는 內容의 認定이 擔當行政當局에 의해서 된 區域境界內에 位置하는 土地資産에 관한 때」

第 78 條（農業經營構造에 惡影響을 주는 收用） ①前揭의 1962年 8月 8日의 法律 第 62-933 號 第 10 條中, 冒頭部分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自然保護에 關한 1967年 7月 10日의 法律 第 76-629 號 第 2 條에 規定하는 整備 또는 土木事業의 實現을 目的으로 한 收用이 …… 」(以下, 不變)

②前揭의 1962年 8月 8日의 法律 第 62-933 號 第 10 條中, 第 1 項의 末尾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들의 農業者는 그것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國土 全體에 있어서 SAFER에 의한 土地讓渡에 關해서 優先的 取得權을 享受하는 것으로 한다. 단, 當該農業者가 從前의 經營과 完全히 다른 經營을 取得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1960年 8月 5日의 法律 第 60-808 號 第 17 條(3)의 規定에 의한 認定이 되었던 區域內에 所有하는 土地를, 當該工事의 施行者 또는 SAFER에 讓渡하는 것을 拒否하는 경우에는 이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③같은 法律의 第 10 條中 第 6 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關係土地所有者組合 및 同組合의 同意를 얻은 위에서 경우에 의해서 SAFER이 …… 」(以下, 不變).

第 79 條 收用法典 第 L13 條의 10 中 第 3 項의 다음에 다음의 1 項을 추가한다.

「어느 地片의 一部分의 收用이 當該地片의 殘存部分에 관해서 正常한 條件을 바탕으로 農業經營을 행하는 것을 그 크기, 形狀, 接近條件等의 理由에서 妨害될 때도 같은 모양으로 한다. 이 경우 被收用者는 當該地片 全體의 收用, 또는 그 殘存部分中에서 事實上 經營이 不可能케 되었던 部分의 收用을 要求할 수 있다.

第 6 章 雜 則

第 80 條（豫算措置） 豫算法에서 이 法律 適用을 위해 必要한 豫算措置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第 81 條（3年마다의 報告書） 政府는 3年마다로 이 法律의 實施狀況 및 EEC의 農業政策 및 地域的 施策에 있어서 이 法律의 目的이 어떻게 考慮되었는가에 대해서 報告書를 提出한다. 이 報告書에서는 國家 및 關係 公的機關이 各種의 施策에 充當한 經費 및 얻어진 成果를 可能한 限 県 및 地域別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山岳地域 및 生產條件의 不利한 地域에 관해 이 報告書는 自然的 惡條件에 의한 超過生產費와 그 補償을 위한 支出額에 관한 評價, 全國的 規制를 地域에 適應시키기 위해 分權化의 措置 및 이러한 適應의 成果 및 이들 措置에 充當된 施設, 試驗研究 및 開發에 관계되는 經費의 動向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한다.

第 82 條（法律의 適用方法에 關한 政令） 이 法律의 適用方法은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第 83 條 海外県에 있어서 이 法律의 適用方法은 必要한 範圍에 있어서 國務院政令으로 定한다. 이 政令의 公布는 前條에 規定하는 政令의 公布日부터 6個月以內에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D-51-3 : 外國農地制度資料集 (第3輯)

프랑스의 農業基本法과 農業講造政策

1988. 10 월

發行人 金 榮 鎭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